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6-3
ISBN 978-89-98568-34-4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송지현, 이아름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6-3
ISBN 978-89-98568-34-4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송지현, 이아름

- **책임연구원**
  송지현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이아름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위촉연구원)
- **자문위원**
  김경준 (성바우로의집 시설장)
  김의곤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안을순 (자강의집 시설장)
  원용철 (울안공동체 시설장)
  윤양수 (야곱의집 시설장)
- **조사수행 기관**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 차 례 ··

요 약 ····· xviii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내용 ····· 5
제3절 연구방법 ····· 6

제2장 대전시 노숙인 현황 및 실태 ····· 11
제1절 노숙인의 개념 ····· 11
제2절 노숙인 규모 ····· 13
1. 전국 노숙인 등 현황 ····· 13
2.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 현황 ····· 15
제3절 대전시 노숙인 지원정책 ····· 20
1. 노숙유입 예방 및 초기 노숙인 지원사업 ····· 21
2.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 대책 ····· 22
3. 주거지원 ····· 24
4. 의료지원 ····· 25
5. 일자리 지원 ····· 27

제3장 노숙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 31
제1절 조사개요 ····· 31
1. 조사대상 ····· 31
2. 조사방법 ····· 32
3. 자료 분석 방법 ····· 35

제2절 대전시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 ····· 36
1. 인구학적 특성 ····· 36
2. 가구 특성 ····· 41
제3절 대전시 노숙인 특성과 실태 ····· 45
1. 노숙 전 상황 ····· 45
2. 주거생활 ····· 56
3. 경제활동 ····· 58
4. 건강 및 의료 ····· 77
5.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 85
제4절 거리노숙인 ····· 94
1.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상황 ····· 94
2. 거리노숙인의 주거생활 ····· 102
3. 거리노숙인의 경제활동 ····· 109
4. 거리노숙인의 건강 및 의료 ····· 124
5. 거리노숙인의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 130
제5절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 137
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상황 ····· 137
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거생활 ····· 145
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경제활동 ····· 152
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건강 및 의료 ····· 167
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 173
제6절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 180
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상황 ····· 180
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거생활 ····· 187
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경제활동 ····· 194
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건강 및 의료 ····· 209
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 215

제4장 결론 및 제언 ····· 223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 223

1. 인구학적 특성 ····· 223
2. 가구 특성 ····· 224
3. 노숙 전 상황 ····· 225
4. 주거생활 ····· 227
5. 경제활동 ····· 229
6. 건강 및 의료 ····· 233
7.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 235

제2절 제언 ····· 237

1. 노숙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 237
2. 주거 지원 ····· 239
3. 의료지원 접근성 강화 ····· 241
4. 고용지원 ····· 244
5.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강화 ····· 247
6.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강화 ····· 251
7. 재노숙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253

참 고 문 헌 ····· 255

❍ 부록 : 설문지 ····· 257

·· 표 차례 ··

<표 1-3- 1> 자문회의 ····· 6
<표 2-2- 1>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 ····· 13
<표 2-2- 2>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2014. 12월말 기준) ····· 14
<표 2-2- 3> 노숙인 시설 현황 ····· 15
<표 2-2- 4>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 현황 ····· 16
<표 2-2- 5> 거리노숙인 발견 현황 ····· 16
<표 2-2- 6> 거리노숙인 발견 장소 현황 ····· 17
<표 2-2- 7> 자치구별 거리노숙인 발견 장소 현황 ····· 18
<표 2-2- 8> 노숙인시설 유형별 노숙인 현황 ····· 19
<표 2-3- 1> 대전광역시 노숙인시설 유형별 현황 및 기능 ····· 20
<표 2-3- 2> 2015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현황 ····· 21
<표 2-3- 3> 2015년 거리노숙인 현장 상담 현황 ····· 22
<표 2-3- 4> 대전광역시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 23
<표 2-3- 5> 2015년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실적 ····· 24
<표 2-3- 6> 2015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위기관리사업 실적 ····· 25
<표 2-3- 7> 2015년 희망무료진료소 진료 실적 ····· 26
<표 2-3- 8> 2015년 노숙인 자격증 취득 등 취업교육 지원 현황 ····· 27
<표 2-3- 9> 2015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 현황 ····· 27
<표 3-1- 1> 조사대상 ····· 32
<표 3-1- 2> 조사 영역 및 주요 내용 ····· 33
<표 3-2- 1> 인구학적 특성 ····· 38
<표 3-2- 2> 주민등록 유지 여부 및 상태 ····· 39
<표 3-2-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40
<표 3-2- 4>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이유(다중응답) ····· 41
<표 3-2- 5> 노숙 전 가족 동거 여부 ····· 41
<표 3-2- 6> 노숙 전 동거했던 가족 구성원(다중응답) ····· 42

〈표 3-2- 7〉 가족 및 친지 연락 여부 ····· 43
〈표 3-2- 8〉 가족 및 친지와 연락 정도 ····· 44
〈표 3-2- 9〉 가족 및 친지와 연락 방법 ····· 44
〈표 3-3- 1〉 노숙 원인(다중응답) ····· 45
〈표 3-3- 2〉 노숙 시작 시기 ····· 47
〈표 3-3- 3〉 노숙 기간 ····· 48
〈표 3-3- 4〉 노숙 시작 연령 ····· 49
〈표 3-3- 5〉 노숙 시작 지역 ····· 50
〈표 3-3- 6〉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 ····· 52
〈표 3-3- 7〉 노숙 전 직업 유형 ····· 52
〈표 3-3- 8〉 노숙 전 고용 형태 ····· 53
〈표 3-3- 9〉 노숙 전 월평균 소득 분포 ····· 53
〈표 3-3-10〉 노숙 전 월평균 소득 금액 ····· 54
〈표 3-3-11〉 노숙 전 건강상태 ····· 54
〈표 3-3-12〉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 ····· 54
〈표 3-3-13〉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55
〈표 3-3-14〉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다중응답) ····· 55
〈표 3-3-15〉 노숙 전 주거형태 ····· 56
〈표 3-3-16〉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 57
〈표 3-3-17〉 범죄 피해 경험(다중응답) ····· 58
〈표 3-3-18〉 현재 근로활동 여부 ····· 58
〈표 3-3-19〉 월평균 근로일 수 ····· 59
〈표 3-3-20〉 직업 유형 ····· 59
〈표 3-3-21〉 고용 형태 ····· 60
〈표 3-3-22〉 근로활동의 어려움 ····· 61
〈표 3-3-23〉 구직 여부 ····· 61
〈표 3-3-24〉 구직 정보 획득 경로 ····· 62
〈표 3-3-25〉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62
〈표 3-3-26〉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63

〈표 3-3-27〉 근로소득의 유무 ····· 64
〈표 3-3-28〉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 65
〈표 3-3-29〉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 ····· 65
〈표 3-3-30〉 기타소득의 유무 ····· 66
〈표 3-3-31〉 기타소득 분포 ····· 66
〈표 3-3-32〉 기타소득 금액 ····· 66
〈표 3-3-33〉 주 수입원 ····· 67
〈표 3-3-34〉 지출 유무 ····· 67
〈표 3-3-35〉 지출 금액 분포 ····· 68
〈표 3-3-36〉 지출 금액 ····· 68
〈표 3-3-37〉 지출 항목(다중응답) ····· 69
〈표 3-3-38〉 부채 유무 ····· 70
〈표 3-3-39〉 부채 발생 이유 ····· 70
〈표 3-3-40〉 부채 금액 분포 ····· 71
〈표 3-3-41〉 부채 금액 ····· 72
〈표 3-3-42〉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 72
〈표 3-3-43〉 저축 여부 ····· 73
〈표 3-3-44〉 월평균 저축 금액 분포 ····· 73
〈표 3-3-45〉 월평균 저축 금액 ····· 73
〈표 3-3-46〉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 ····· 74
〈표 3-3-47〉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 75
〈표 3-3-48〉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 76
〈표 3-3-49〉 건강상태 ····· 77
〈표 3-3-50〉 장애 유무 ····· 78
〈표 3-3-51〉 장애 유형 ····· 78
〈표 3-3-52〉 질병과 치료 여부(다중응답) ····· 79
〈표 3-3-53〉 질병 대처방법 ····· 79
〈표 3-3-54〉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 80
〈표 3-3-55〉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 80

〈표 3-3-56〉 우울 ····· 81
〈표 3-3-57〉 음주 경험 ····· 81
〈표 3-3-58〉 음주 성향 ····· 82
〈표 3-3-59〉 알코올 의존 정도 ····· 83
〈표 3-3-60〉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 84
〈표 3-3-61〉 자립시도 여부 ····· 85
〈표 3-3-62〉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 85
〈표 3-3-63〉 근로활동능력 - 체력 ····· 86
〈표 3-3-64〉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 87
〈표 3-3-65〉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 88
〈표 3-3-66〉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 89
〈표 3-3-67〉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 90
〈표 3-3-68〉 자립준비 여부 ····· 91
〈표 3-3-69〉 자립준비도 ····· 91
〈표 3-3-70〉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 92
〈표 3-3-71〉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93
〈표 3-4- 1〉 거리노숙인의 노숙 원인(다중응답) ····· 94
〈표 3-4- 2〉 거리노숙인의 노숙 시작 시기 ····· 95
〈표 3-4- 3〉 거리노숙인의 노숙 기간 ····· 95
〈표 3-4- 4〉 거리노숙인의 노숙 시작 연령 ····· 96
〈표 3-4- 5〉 거리노숙인의 노숙 시작 지역 ····· 97
〈표 3-4- 6〉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 ····· 97
〈표 3-4- 7〉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직업 유형 ····· 98
〈표 3-4- 8〉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고용 형태 ····· 98
〈표 3-4- 9〉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분포 ····· 99
〈표 3-4-10〉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금액 ····· 99
〈표 3-4-11〉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 ····· 100
〈표 3-4-12〉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 ····· 100
〈표 3-4-13〉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100

〈표 3-4-14〉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다중응답) ····· 101
〈표 3-4-15〉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 ····· 101
〈표 3-4-16〉 거리노숙인의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 102
〈표 3-4-17〉 거리노숙 시작 시기 ····· 103
〈표 3-4-18〉 거리노숙 기간 분포 ····· 104
〈표 3-4-19〉 거리노숙 기간 ····· 104
〈표 3-4-20〉 일시보호시설 이용 시작 시기 ····· 105
〈표 3-4-21〉 일시보호시설 이용 기간 분포 ····· 105
〈표 3-4-22〉 일시보호시설 이용 기간 ····· 105
〈표 3-4-23〉 거리노숙인의 현재 거주지 선택 이유 ····· 106
〈표 3-4-24〉 거리노숙인의 현재 거주지 관련 어려움 ····· 107
〈표 3-4-25〉 거리노숙인의 노숙인·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 108
〈표 3-4-26〉 거리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다중응답) ····· 109
〈표 3-4-27〉 거리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 ····· 110
〈표 3-4-28〉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 ····· 110
〈표 3-4-29〉 거리노숙인의 직업 유형 ····· 110
〈표 3-4-30〉 거리노숙인의 고용 형태 ····· 111
〈표 3-4-31〉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의 어려움 ····· 111
〈표 3-4-32〉 거리노숙인의 구직 여부 ····· 112
〈표 3-4-33〉 거리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 ····· 112
〈표 3-4-34〉 거리노숙인의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113
〈표 3-4-35〉 거리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113
〈표 3-4-36〉 거리노숙인의 근로소득의 유무 ····· 114
〈표 3-4-37〉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 115
〈표 3-4-38〉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 ····· 115
〈표 3-4-39〉 거리노숙인의 기타소득의 유무 ····· 115
〈표 3-4-40〉 거리노숙인의 기타소득 분포 ····· 116
〈표 3-4-41〉 거리노숙인의 기타소득 금액 ····· 116
〈표 3-4-42〉 거리노숙인의 주 수입원 ····· 117

〈표 3-4-43〉 거리노숙인의 지출 유무 ····· 117
〈표 3-4-44〉 거리노숙인의 지출 금액 분포 ····· 118
〈표 3-4-45〉 거리노숙인의 지출 금액 ····· 118
〈표 3-4-46〉 거리노숙인의 지출 항목(다중응답) ····· 119
〈표 3-4-47〉 거리노숙인의 부채 유무 ····· 119
〈표 3-4-48〉 거리노숙인의 부채 발생 이유 ····· 120
〈표 3-4-49〉 거리노숙인의 부채 금액 분포 ····· 120
〈표 3-4-50〉 거리노숙인의 부채 금액 ····· 121
〈표 3-4-51〉 거리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 121
〈표 3-4-52〉 거리노숙인의 저축 여부 ····· 121
〈표 3-4-53〉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분포 ····· 122
〈표 3-4-54〉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 122
〈표 3-4-55〉 거리노숙인의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 ····· 122
〈표 3-4-56〉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 123
〈표 3-4-57〉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 124
〈표 3-4-58〉 거리노숙인의 건강상태 ····· 124
〈표 3-3-59〉 거리노숙인의 장애 유무 ····· 125
〈표 3-3-60〉 거리노숙인의 장애 유형 ····· 125
〈표 3-4-61〉 거리노숙인의 질병과 치료 여부(다중응답) ····· 126
〈표 3-4-62〉 거리노숙인의 질병 대처방법 ····· 126
〈표 3-4-63〉 거리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 127
〈표 3-4-64〉 거리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 127
〈표 3-4-65〉 거리노숙인의 우울 ····· 128
〈표 3-4-66〉 거리노숙인의 음주 경험 ····· 128
〈표 3-4-67〉 거리노숙인의 음주 성향 ····· 129
〈표 3-4-68〉 거리노숙인의 알코올 의존 정도 ····· 129
〈표 3-4-69〉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 130
〈표 3-4-70〉 거리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 ····· 130
〈표 3-4-71〉 거리노숙인의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 131

〈표 3-4-72〉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체력 ····· 131
〈표 3-4-73〉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 132
〈표 3-4-74〉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 132
〈표 3-4-75〉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 133
〈표 3-4-76〉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 133
〈표 3-4-77〉 거리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 ····· 134
〈표 3-4-78〉 거리노숙인의 자립준비도 ····· 135
〈표 3-4-79〉 거리노숙인의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 135
〈표 3-4-80〉 거리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136
〈표 3-5- 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원인(다중응답) ····· 137
〈표 3-5- 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시기 ····· 138
〈표 3-5- 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기간 ····· 138
〈표 3-5- 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연령 ····· 139
〈표 3-5- 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지역 ····· 140
〈표 3-5- 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 ····· 140
〈표 3-5- 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직업 유형 ····· 141
〈표 3-5- 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고용 형태 ····· 141
〈표 3-5- 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분포 ····· 142
〈표 3-5-1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금액 ····· 142
〈표 3-5-1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 ····· 143
〈표 3-5-1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 ····· 143
〈표 3-5-1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144
〈표 3-5-1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다중응답) ····· 144
〈표 3-5-1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 ····· 144
〈표 3-5-1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 145
〈표 3-5-1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입소 시기 ····· 146
〈표 3-5-1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거주 기간 분포 ····· 146
〈표 3-5-1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거주 기간 ····· 147
〈표 3-5-2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 재활시설 거주 기간 분포 ····· 147

〈표 3-5-2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 재활시설 거주 기간 ····· 147
〈표 3-5-22〉 재활시설 입소 경로 ····· 148
〈표 3-5-23〉 재활시설 입소 이유 ····· 149
〈표 3-5-24〉 재활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퇴소할 의향 ····· 150
〈표 3-5-25〉 재활시설 퇴소 후 거처에 대한 계획 ····· 150
〈표 3-5-26〉 재활시설 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 ····· 151
〈표 3-5-27〉 재활시설 만족도 ····· 152
〈표 3-5-28〉 항목별 재활시설 만족도 ····· 152
〈표 3-5-2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 ····· 152
〈표 3-5-3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 ····· 153
〈표 3-5-3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직업 유형 ····· 153
〈표 3-5-3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고용 형태 ····· 154
〈표 3-5-3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의 어려움 ····· 154
〈표 3-5-3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여부 ····· 155
〈표 3-5-3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 ····· 155
〈표 3-5-3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156
〈표 3-5-3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156
〈표 3-5-3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소득의 유무 ····· 157
〈표 3-5-3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 158
〈표 3-5-4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 ····· 158
〈표 3-5-4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의 유무 ····· 158
〈표 3-5-4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 분포 ····· 159
〈표 3-5-4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 금액 ····· 159
〈표 3-5-4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 수입원 ····· 160
〈표 3-5-4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유무 ····· 160
〈표 3-5-4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금액 분포 ····· 161
〈표 3-5-4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금액 ····· 161
〈표 3-5-4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항목(다중응답) ····· 162
〈표 3-5-4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유무 ····· 162

〈표 3-5-5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발생 이유 ····· 163
〈표 3-5-5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금액 분포 ····· 163
〈표 3-5-5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금액 ····· 164
〈표 3-5-5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 164
〈표 3-5-5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 여부 ····· 164
〈표 3-5-5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분포 ····· 165
〈표 3-5-5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 165
〈표 3-5-5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 ····· 165
〈표 3-5-5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 166
〈표 3-5-5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 167
〈표 3-5-6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건강상태 ····· 167
〈표 3-5-6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무 ····· 168
〈표 3-5-6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형 ····· 168
〈표 3-5-6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과 치료 여부(다중응답) ····· 169
〈표 3-5-6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 대처방법 ····· 170
〈표 3-5-6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 170
〈표 3-5-6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 170
〈표 3-5-6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우울 ····· 171
〈표 3-5-6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경험 ····· 171
〈표 3-5-6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성향 ····· 172
〈표 3-5-7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 정도 ····· 172
〈표 3-5-7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 173
〈표 3-5-7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 ····· 173
〈표 3-5-7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 174
〈표 3-5-7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체력 ····· 175
〈표 3-5-7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 175
〈표 3-5-7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 176
〈표 3-5-7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 176
〈표 3-5-7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 177

〈표 3-5-7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 ····· 178
〈표 3-5-8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도 ····· 178
〈표 3-5-8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 179
〈표 3-5-8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179
〈표 3-6- 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원인(다중응답) ····· 180
〈표 3-6- 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시기 ····· 181
〈표 3-6- 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기간 ····· 181
〈표 3-6- 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연령 ····· 182
〈표 3-6- 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지역 ····· 182
〈표 3-6- 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 ····· 183
〈표 3-6- 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직업 유형 ····· 183
〈표 3-6- 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고용 형태 ····· 184
〈표 3-6- 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분포 ····· 184
〈표 3-6-1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금액 ····· 185
〈표 3-6-1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 ····· 185
〈표 3-6-1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 ····· 185
〈표 3-6-1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186
〈표 3-6-1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다중응답) ····· 186
〈표 3-6-1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 ····· 186
〈표 3-6-1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 187
〈표 3-6-1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입소 시기 ····· 188
〈표 3-6-1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거주 기간 분포 ····· 188
〈표 3-6-1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거주 기간 ····· 189
〈표 3-6-2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 자활시설 거주 기간 분포 ····· 189
〈표 3-6-2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 자활시설 거주 기간 ····· 189
〈표 3-6-22〉 자활시설 입소 경로 ····· 190
〈표 3-6-23〉 자활시설 입소 이유 ····· 191
〈표 3-6-24〉 자활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퇴소할 의향 ····· 192
〈표 3-6-25〉 자활시설 퇴소 후 거처에 대한 계획 ····· 192

〈표 3-6-26〉 자활시설 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 ····· 193
〈표 3-6-27〉 자활시설 만족도 ····· 194
〈표 3-6-28〉 항목별 자활시설 만족도 ····· 194
〈표 3-6-2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 ····· 194
〈표 3-6-3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 ····· 194
〈표 3-6-3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직업 유형 ····· 195
〈표 3-6-3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고용 형태 ····· 196
〈표 3-6-3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의 어려움 ····· 196
〈표 3-6-3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여부 ····· 197
〈표 3-6-3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 ····· 197
〈표 3-6-3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198
〈표 3-6-3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198
〈표 3-6-3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소득의 유무 ····· 199
〈표 3-6-3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 200
〈표 3-6-4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 ····· 200
〈표 3-6-4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의 유무 ····· 200
〈표 3-6-4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 분포 ····· 201
〈표 3-6-4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 금액 ····· 201
〈표 3-6-4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 수입원 ····· 202
〈표 3-6-4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유무 ····· 202
〈표 3-6-4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금액 분포 ····· 203
〈표 3-6-4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금액 ····· 203
〈표 3-6-4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항목(다중응답) ····· 204
〈표 3-6-4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유무 ····· 204
〈표 3-6-5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발생 이유 ····· 205
〈표 3-6-5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금액 분포 ····· 205
〈표 3-6-5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금액 ····· 206
〈표 3-6-5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 206
〈표 3-6-5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 여부 ····· 206

〈표 3-6-5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분포 ····· 207
〈표 3-6-5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 207
〈표 3-6-5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 ····· 207
〈표 3-6-5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 208
〈표 3-6-5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 209
〈표 3-6-6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건강상태 ····· 209
〈표 3-6-6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무 ····· 210
〈표 3-6-6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형 ····· 210
〈표 3-6-6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과 치료 여부(다중응답) ····· 211
〈표 3-6-6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 대처방법 ····· 211
〈표 3-6-6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 212
〈표 3-6-6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 212
〈표 3-6-6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우울 ····· 212
〈표 3-6-6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경험 ····· 213
〈표 3-6-6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성향 ····· 213
〈표 3-6-7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 정도 ····· 214
〈표 3-6-7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 214
〈표 3-6-7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 ····· 215
〈표 3-6-7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 215
〈표 3-6-7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체력 ····· 216
〈표 3-6-7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 216
〈표 3-6-7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 217
〈표 3-6-7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 217
〈표 3-6-7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 218
〈표 3-6-7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 ····· 219
〈표 3-6-8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도 ····· 219
〈표 3-6-8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 220
〈표 3-6-8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220

·· 그림 차례 ··

[그림 1-3- 1] 연구절차도 ····· 7
[그림 2-2- 1] 대전광역시 거리노숙인의 커널밀도추정 ····· 17
[그림 2-2- 2] 대전광역시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분포 ····· 19
[그림 2-3- 1] 대전광역시 노숙인 지원서비스 추진 체계 ····· 20
[그림 2-3- 2] 대전광역시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 21
[그림 2-3- 3] 대전광역시 혹서기 운영 체계 ····· 23
[그림 2-3- 4]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시행 절차 ····· 26
[그림 3-3- 1] 노숙 원인(다중응답) ····· 46
[그림 3-3- 2] 노숙 시작 시기 ····· 47
[그림 3-3- 3] 노숙 기간 ····· 48
[그림 3-3- 4] 노숙 시작 연령 ····· 49
[그림 3-3- 5] 노숙 시작 지역 ····· 51
[그림 3-3- 6]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 57
[그림 3-3- 7] 직업 유형 ····· 60
[그림 3-3- 8]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62
[그림 3-3- 9]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63
[그림 3-3-10] 근로소득의 유무 ····· 64
[그림 3-3-11] 지출 금액 분포 ····· 68
[그림 3-3-12] 지출 항목(다중응답) ····· 69
[그림 3-3-13] 부채 유무 ····· 71
[그림 3-3-14] 부채 발생 이유 ····· 71
[그림 3-3-15] 부채 금액 분포 ····· 72
[그림 3-3-16]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 75
[그림 3-3-17]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 76
[그림 3-3-18] 건강상태 ····· 77
[그림 3-3-19] 우울 ····· 81

[그림 3-3-20] 음주 경험 ····· 82
[그림 3-3-21] 음주 성향 ····· 82
[그림 3-3-22] 알코올 의존 정도 ····· 83
[그림 3-3-23]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 84
[그림 3-3-24] 자립시도 여부 ····· 86
[그림 3-3-25]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 86
[그림 3-3-26] 근로활동능력 - 체력 ····· 87
[그림 3-3-27]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 87
[그림 3-3-28]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 88
[그림 3-3-29]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 89
[그림 3-3-30]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 90
[그림 3-3-31] 자립준비도 ····· 92
[그림 3-3-32]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 93
[그림 3-4- 1] 거리노숙인의 현재 거주지 선택 이유 ····· 106
[그림 3-4- 2] 거리노숙인의 노숙인·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 108
[그림 3-5- 1] 재활시설 입소 경로 ····· 148
[그림 3-5- 2] 재활시설 입소 이유 ····· 149
[그림 3-5- 3] 재활시설 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 ····· 151
[그림 3-6- 1] 자활시설 입소 경로 ····· 190
[그림 3-6- 2] 자활시설 입소 이유 ····· 191
[그림 3-6- 3] 자활시설 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 ····· 193

요 약

Ⅰ.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 연구배경 및 목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노숙인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최근 노숙인은 만성화·고령화되고 젊은 노숙인의 등장, 노숙인 가족과 여성 노숙인의 증가 등 새로운 양상을 보임

○ 노숙의 원인은 특정한 원인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초래하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노숙을 겪게 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

○ 노숙문제를 고용이나 그로 인한 빈곤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노숙원인을 확인하고 개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정부는 노숙인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숙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권리를 누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자립의 개념을 근로활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노숙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하고 권리를 누리는 지역사회 정착의 관점에서 보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 실태 파악을 통해 노숙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노숙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자립지원 정책대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 제도와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노숙인의 개념 및 지원체계 등을 검토함

○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성, 조사대상자 범위, 연구내용에 대한 실효성, 조사표 항목 선정 등을 논의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는 연구결과 분석 및 보고서 내용 검토, 노숙인의 자립지원 정책 개발 방안을 도출함

○ 총 6개소의 노숙인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노숙인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시설별 운영, 노숙인 특성을 파악함

○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거리노숙인과 시설 거주 노숙인 21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함.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노숙인 당사자, 노숙인시설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Ⅱ. 대전시 노숙인 현황 및 실태

1. 노숙인 규모

❑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 현황

○ 대전광역시 노숙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거리노숙인과 노숙인 시설 이용 및 거주 인원은 총 350명임. 이 중 거리노숙인 45명(12.9%),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32명(9.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167명(47.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106명(30.3%)으로 조사됨. 이외에 쪽방주민이 421명으로 나타남

○ 2016년 5월 기준 확인된 거리노숙인은 45명임.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33명(73.3%)으로 가장 많음. 발견 장소는 철도역 및 주변, 지하도, 지하상가와 하천 및 교량일대 등의 순임

○ 대전광역시 노숙인시설은 일시보호시설 1개소, 자활시설 4개소, 재활시설 1개소가 있음. 이용자 및 거주자는 모두 305명임. 2016년 5월 기준 확인된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는 32명, 자활시설 거주자는 106명, 재활시설 거주자는 167명임

○ 거리노숙인과 시설노숙인 외 대상자인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주민 421명,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은 130명임. 대다수가 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2. 대전시 노숙인 지원정책

❑ 노숙유입 예방 및 초기 노숙인 지원사업

○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가구 발굴
- 노숙위기 계층에 대한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 연계

○ 상담활동 및 위기관리사업
-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한 시설입소 및 서비스 정보제공과 시설입소 유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거리노숙인 주야간 현장보호활동, 현장 출장 상담 및 서비스 지원, 병원입원, 시설입소, 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

❑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 대책

○ 혹서기 노숙인 보호대책
-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활동 강화 및 24시간 비상운영 체계유지
- 긴급의료 지원 강화 및 상설 진료소 운영, 무더위 쉼터 운영, 임시 주거비 및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

○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 거리노숙인 현지조사 및 위기지원 강화,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 상설 무료진료소 운영, 노숙인시설 및 쪽방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지원 및 물품지원 등

❑ 주거지원

○ 임시주거 지원사업
-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기본 생활용품 지원, 주민등록 복원 및 장애인 등록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사례관리 지원, 지역사회 정착 유도 등

○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 사업
- 주거취약계층 및 노숙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지원

○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 및 노숙인 지정의료시설 운영
-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숙인 시설별 의료비 지원, 지역의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자원 확보
- 시 자체사업으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설 무료진료소 운영

❑ 일자리 지원

○ 교육지원과 자활 일자리 지원 사업
-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자격증 취득 등 교육지원 사업과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연계 강화를 위한 자활 일자리 지원 사업 실시

Ⅲ. 노숙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개요

○ 본 연구는 2016년 5월 17일 ~ 6월 14일에 걸쳐 거리노숙인과 시설 거주 노숙인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통한 면대면 조사를 실시함
○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노숙 전 상황, 주거생활,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유형별 추가문항으로 구성함
○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함. 빈도, 백분율, 평균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함

2. 대전시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

❑ 일반적 특성

○ 본 조사의 응답자는 총 211명이며, 남성이 93.4%, 여성이 6.6%임
○ 연령은 50대 37.0%, 40대 21.3%, 60대 19.4%, 30대 11.8% 등의 순이며, 평균 연령은 52.9세임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44.0%,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6%, 중학교 졸업 20.0%, 대학교 졸업 이상 10.4%의 순이며, 응답자의 49.3%가 미혼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비수급자 59.2%, 시설수급자 29.9%, 일반수급자 6.2%, 차상위계층 4.3% 등의 순임

❑ 가구 특성

○ 응답자의 56.9%가 노숙 전 가족 및 친인척과 동거한 경험이 있음

○ 응답자의 64.0%가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었으며, 가족 및 친지와의 연락 방법은 직접 만남이 75.0%, 전화 22.4%, 이메일 또는 우편 2.6% 순임

3. 대전시 노숙인의 특성과 실태

❑ 노숙 전 상황

○ 노숙 원인은 실직 및 사업실패 26.6%, 이혼 및 가족해체 14.1%, 질환 및 장애 13.8% 등의 순임

○ 노숙 시작 시기는 2011년~2015년 31.0%, 2006년~2010년 25.2%, 2001년~2005년 18.1% 등의 순임

○ 노숙 기간은 6년~10년 25.4%, 3년~5년 19.1%, 11년~15년 18.2% 등의 순이며, 평균 노숙 기간은 10.3년임

○ 노숙 시작 연령은 40대 31.0%, 30대 27.1%, 50대 21.0% 등의 순이며, 평균 노숙 시작 연령은 42.6세임

○ 노숙 시작 지역은 대전 45.0%, 서울 16.6%, 충남 9.5% 등의 순임

❑ 주거생활

○ 취약거처에서 1개월 이상 거주 경험은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 16.9%, 여관, 여인숙, 모텔 등 14.0%, 거리노숙 13.3% 등의 순임

○ 거리노숙인의 현재 거주지 선택 이유는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52.8%이며, 노숙인·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몰라서 34.9%임

○ 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입소 경로를 살펴본 결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경찰이나 공공기관 등의 소개로 58.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36.8%임

○ 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입소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곳이 필요해서 41.9%,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2.3% 등의 순이며,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곳이 필요해서 56.8%,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8.9% 등의 순임

○ 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퇴소할 의향을 살펴본 결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5.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3.2%가 의향이 있음. 시설 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은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원래 살던 동네 37.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 지역 근처 43.9%임

❑ 경제활동

○ 응답자의 43.6%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근로일 수는 16일임

○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건설 41.3%, 단순노무직_제조 29.3%,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10.9% 등의 순임

○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28.6%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일정한 주소지 확보 23.5%, 건강회복 20.6% 등의 순임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59.5%, 나이가 많아서 16.7% 등의 순임

○ 월평균 근로소득 유무를 살펴본 결과, 계절(하계, 동계)에 따라 근로소득 유무에 차이를 보임

○ 지출 유무는 응답자의 77.3%가 지출이 있으며, 지출 금액 분포는 10만 원 이하 29.6%, 11만 원~20만 원 22.6%, 21만 원~30만 원 15.1% 등의 순임. 지출 항목은 담배 27.0%, 식비 23.0% 등의 순임

○ 부채 유무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3.6%가 부채가 있으며, 부채 발생 이유는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 25.7%, 기타(핸드폰 요금 미납, 자동차 할부, 카드빚 등) 17.7%, 사기 15.9% 등의 순임. 부채 금액 분포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23.9%,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9.5%,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1.5% 등의 순임

○ 노숙 전후 직업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노숙 전과 후 모두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으나, 노숙 전에는 다양한 직업 유형을 보이는 반면 노숙 후 직업 유형은 편중되어 있음. 특히 무직의 비율이 노숙 전 14.7%에서 노숙 후 56.4%로 크게 증가함

○ 노숙 전후 고용 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 노숙 전은 일용직 32.4%, 정규직(상용직) 22.3% 등의 순이었으나 노숙 후는 일용직 44.6%, 자활/공공근로 30.4% 등의 순임

❑ 건강 및 의료

○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쁘다 32.2%, 좋다 30.0%, 보통이다 27.5%, 매우 나쁘다 8.1% 등의 순임

○ 질병 및 치료여부를 살펴본 결과, 질병 유무는 근골격계 질환 20.3%, 순환계 16.1%, 내분비계 14.7% 등의 순으로 있다고 응답함. 치료 여부는 근골격계(46.5%), 알코올중독(50.0%)을 제외하고 치료율이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음

○ 우울을 살펴본 결과, 우울 수준은 최대 60점 만점 중 평균 17.4점임. 우울 정도는 정상(16점 미만) 47.8%, 경도(16점~24점) 26.8%, 우울(25점 이상) 25.4% 순임

○ 음주 경험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45.0%,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 26.5%,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28.4% 순임

○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알코올 의존 정도는 4점 만점 중 알코올 남용(2점) 19.3%, 알코올 의존(3점 이상) 23.3%로,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2.6%가 문제성 음주군으로 나타남

○ 노숙 전후 건강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노숙 전은 좋다(매우 좋음+좋음)가 58.8%인 반면, 노숙 후는 좋다(매우 좋음+좋음)가 32.2%로 감소함

❑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 응답자의 63.5%가 자립시도를 하고 있음. 자립시도를 하는 응답자의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은 일을 하고 있다 21.5%,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20.1% 등의 순임

○ 근로활동능력(체력, 만성적 증상, 자신감, 집중력, 자기통제)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항목별로는 5점 만점 중 체력 2.6점, 만성적 증상 2.6점, 자신감 3.1점, 집중력 3.1점, 자기통제 2.7점임

○ 응답자의 자립준비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13점 만점 중 평균 점수는 7.9점임. 각각의 항목별로는 경제적 자립 준비수준 4점 만점 중 1.9점, 일상생활유지능력 4점 만점 중 3.3점, 관계유지능력 3점 만점 중 2.4점, 자립경험 2점 만점 중 0.4점임

○ 응답자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 23.4%, 주거지원 21.3%, 의료지원 19.6%, 고용지원 12.8% 등의 순임

Ⅳ. 제언

1. 제언

❑ 노숙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 노숙예방을 위한 정보와 전문화된 상담 제공 필요
- 기존 시설의 실무 담당 인력 충원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욕구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 제공이 필요함
- 노숙 진입 가능성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상담, 노숙인 시설, 관련 지원제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해야함

❑ 주거지원

○ 자립 전 중간단계의 시설 필요
- 노숙인이 시설 퇴소 후 일상생활기술 습득, 점진적 사회적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중간단계 시설이 필요함
-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귀 경로 탐색과 재활 또는 자활 프로그램, 지역사회 지지체계들로의 연계,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함

○ 노숙인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지원 확대
- 노숙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주거제공과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노숙인 수와 특성에 따른 단계적인 주거지원 대책 마련 필요함

❑ 의료지원 접근성 강화

○ 노숙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의 보장을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및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경이 필요함
-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완화가 필요함
-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과 입원 시 간병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노숙인이 병원에서 퇴원할 시 사후관리를 지원해야 함

❑ 고용지원

○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필요

- 개인파산·면책신청, 무료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 대행, 소송비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 노숙인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활사업 급여 수준의 개선이 필요함
-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자활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노숙인 개인별 능력에 따른 일자리 내용과 기간 및 임금의 다양화가 필요함
- 동계 기간에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
- 일반취업으로의 연계 전 취업체험이나 훈련,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간적 취업의 장을 마련해야 함

❑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강화

○ 노숙인 시설의 전문성 향상

- 노숙인시설 유형 및 시설규모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재설정이 필요함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채용을 위한 경력체계 조정이 필요함. 더불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인력기준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시설체계의 재검토

- 노숙인시설별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의뢰 및 연계체계를 확보해야함. 이를 위해서 노숙인의 현황 파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노숙인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함
- 노숙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공공체계의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프로그램 이용 및 거주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여성노숙인 전용 공간 마련

- 노숙인시설 내 별도의 여성노숙인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함.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이 장기화 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강화

○ 심리치료 지원 필요

- 많은 노숙인이 우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노숙의 만성화, 장기화로 이어짐. 그러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미약함. 따라서 노숙인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함

○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 필요

- 알코올 문제와 관련된 시설 설치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함
- 기존의 노숙인시설 종사자에게 알코올중독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정신건강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당 분야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적인 상담 및 알코올 전문 프로그램 제공과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적지지 제공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알코올 관련 상담센터와 협약을 통해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노숙인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함

❑ 재노숙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 지역사회 자원 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노숙인지원체계를 넘어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함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노숙인 통합사례관리망 구축이 필요함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한 지 벌써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거 등장한 노숙인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많은 사람은 외환위기가 진정되면 노숙인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았지만, 지금까지도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장년 노숙인이 줄지 않고 있으며 노숙이 만성화되고 고령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젊은 노숙인이 등장하고 노숙인 가족과 여성 노숙인이 증가하는 등의 새로운 양상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에 따른 노숙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숙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숙인정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거리노숙인 지원, 주거지원, 일자리·의료에 대한 지원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긴급구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노숙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계를 보여 왔다(홍선미, 2002; 황선영, 2004).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쉼터 등 시설 보호를 통해 거리노숙인에 대한 응급보호를 실시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시설보호 중심의 지원은 응급보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노숙인이 시설의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며 지원체계 내에 장기간 머무르는 '노숙의 회전문 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남기철, 2011). 이후 자활 개념이 도입되어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이루고 민간의 저렴한 주거에 입주하도록 하여 노숙을 벗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제공 정책만으로는 안정된 일자리로의 취업이 쉽지 않고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노숙인의 자활과 탈노숙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노숙인 정책 중 주거지원 없는 일자리 지원은 노숙을 벗어나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노숙인정책은 주거지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응급보호적 성격에서 시작하여 단계적 접근에 따른 주거준비 모델이 적용되고 있으며(구인회·정근식, 2014), 최근에는 주거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노숙의 원인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개인적 요인인 불우한 성장배경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경제위기 이후 사회구조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숙의 원인은 고용상실, 사업실패, 주거상실, 가족해체, 정신건강 등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원인과 함께 불우한 성장환경, 불운, 생활관리 능력 취약, 일탈 등으로 노숙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았다(구인회·김소영, 2012; 박은철 외, 2015; 윤명숙, 1999; 정원오·김용득, 2014). 즉 특정한 원인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노숙을 초래하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노숙을 겪게 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노숙문제에 고용정책이나 자립지원정책으로 협소하게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숙문제를 고용이나 그로 인한 빈곤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노숙원인을 확인하고 개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노숙인정책은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과 민간기관의 소극적인 참여를 벗어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노숙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노숙인 서비스 보호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노숙인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접근 방법은 주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현명이, 2014).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체계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노숙인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거리와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었던 정책 대상이 보다 확대되었다. 또한 주거지원, 의료지원, 상담서비스, 자활 등 분절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현명이(2014)의 연구에서는 노숙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 지원, 주거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 정착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즉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숙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권리를 누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의 자립을 촉진하고자 자립의 개념을 근로활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노숙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하고 권리를 누리는 지역사회 정착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 실태 파악을 통해 노숙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노숙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자립지원 정책대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숙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노숙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쉬운 문제로, 노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입견에 기초한 정책보다 실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리노숙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 노숙인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자립 지원 방안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전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은 연구배경 및 목적과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 연구 틀에 대한 개괄이다. 제2장 대전시 노숙인 현황 및 실태는 현재 노숙인의 실태 파악을 위해 노숙인의 개념 및 규모, 대전시 노숙인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노숙인 개념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정확한 규모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거리노숙인, 시설 이용 및 거주 노숙인의 규모를 파악하여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노숙인정책을 검토하여 지원 사업과 실적을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노숙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노숙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절 조사개요에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자료 분석 방법 등 조사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절에는 대전시 노숙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을 제시하였다. 제3절에는 대전시 노숙인을 대상으로 노숙 전 상황, 주거생활,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절, 제5절, 제6절에서는 노숙인을 거주유형별로 구분하여 거리노숙인,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상황, 주거생활,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근로활동능력을 분석하였다. 거주유형별로 노숙인을 구분하여 거주유형별 특성과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 제4장 결론 및 제언은 연구 주요결과와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절 주요 분석 결과에서는 대전시 노숙인의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거주유형별 노숙인 간 분석을 통해 노숙인의 특성과 욕구를 살펴보았다. 제2절 제언에서는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 노숙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관련 제도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노숙인의 개념 및 지원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국과 대전시 노숙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전시 노숙인 종합계획의 방향, 분야별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2. 실무자, 전문가 자문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다.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는 총 2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연구방향성, 조사대상자 범위, 연구내용에 대한 실효성, 조사표 개발을 위한 항목 선정 등이 이루어졌다.

1차 자문회의는 노숙인 관련 시설 기관장을 대상으로 연구의 방향성, 조사대상자 범위를 도출하고 연구내용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2차 자문회의는 노숙인 관련 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방향성 및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노숙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표 1-3-1〉 자문회의

구 분	주 요 내 용
1차	• 대상 : 노숙인 관련 시설 기관장 • 내용 : 연구의 방향성, 조사대상자 범위 확정, 연구내용에 대한 실효성
2차	• 대상 : 노숙인 관련 시설 실무자 • 내용 : 노숙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 검토 및 의견수렴, 조사표 내용 수정 및 보완

3. 현장 방문 조사

노숙인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시설별 노숙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 방문을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 기간은 2016년 3월 14일~3월 23일이었고, 방문 시설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재활시설 1개소, 자활시설 3개소였다. 현장과의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노숙인 시설별 특성, 운영, 노숙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4. 실태조사

노숙인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숙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노숙인과 시설 거주 노숙인이며, 총 21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응답자 일반적 사항, 노숙 전 상황, 주거생활,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면대 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앞서 거주유형별로 노숙인을 구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5. 연구결과 설명회

대전광역시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듣고자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연구결과 설명회를 통해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실태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노숙인 당사자, 노숙인시설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1-3-2] 연구절차도

제2장

대전시 노숙인 현황 및 실태

제2장 대전시 노숙인 현황 및 실태

제1절 노숙인의 개념

한국에서 '노숙인'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부랑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설 중심의 보호정책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다. 노숙인은 사회구조 변화에 의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로 정의되면서, 경제위기의 부산물로 노숙인이 조명되는 과정에서 '실직 노숙인'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랑인'과는 다른 범주로 분류되었다.

사전적 의미에서 노숙(露宿)은 '이슬을 맞으며 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거주가 없는 상황을 지칭한다. 즉 노숙인은 적절한 주거지가 없고 길거리, 역사, 공원 같은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등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사람을 일컫는다. 노숙인은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아동, 노인, 여성을 구별하는 인구 집단의 특징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거 없는 생활상의 한 상태를 중심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작화하여 규정하기 힘들고 규모파악도 어렵다(남기철, 2009; 이성은·고은정, 2010).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해 개인적인 취약성을 가졌거나 이상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도 심해서 '무주거'나 '빈곤'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조망하지 못하는 부분도 크다.

노숙은 주거상실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의 범주를 파악할 때 주거취약계층의 수준 혹은 단계적 방법으로 규정하곤 한다. 노숙의 논의는 주거 빈곤 혹은 주거복지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법적, 행정적 관점의 주요한 한계점은 잠재적, 실질적 노숙상황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노숙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서비스 중심으로 대상을 범주화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노숙인 NGO인 FEANTSA(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Organisations Working with the Homeless)는 주거 적절성에 기초하여 노숙을 네 가지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ETHOS(European Typology on Homeless and Hosing Exclusion)라는 명칭으로 노숙과 주거 배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FEANTSA, 2010). 첫째, '피난처가 없는 것(rooflessness)'으로 가장 극단적인 취약상황에 해당한다. 어떠한 종류의 쉴 곳도 없는 상황으로

거리 노숙생활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둘째, '집이 없는 것(houselessness)'으로 이는 임시로 기거할 곳은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 주거가 아니라 쉼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는 경우이다. 셋째, '불안정한 주거에서 기거하는 것(living in insecure housing)'으로 이는 현재 주거지가 있지만 불안정한 임대나 퇴거, 가정폭력 등으로 위협받고 있어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넷째는 '부적절한 주거에서 기거하는 것(living in inadequate housing)'으로 불법적 야영지 이동주택, 부적절한 수준의 주택, 극단적 과밀주거에서 사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Rooflessness: 어떠한 종류의 쉴 곳도 없는 상황, sleeping rough
◦ Houselessness: 임시로 쉼터나 시설에서 기거할 수는 있는 상황
◦ Living in insecure housing: 불안정한 임대나 퇴거, 가정폭력 등으로 위협받는 상황
◦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불법적 야영지 이동주택, 부적절한 주거, 극단적 과밀주거에 사는 경우

위의 네 가지 범주는 각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서로 다르게 하위 범주 설정이나 조작화가 이루어진다. 노숙은 정적 현상이 아니라 역동적 상황으로 조망되어야 하며, 따라서 ETHOS 개념화는 이 역동적 상황에서 국가 간 비교나 탈노숙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한 것이다.

이처럼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광의의 홈리스(homeless)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선언이고 이론적 논의이지만 실제에서 노숙인을 지칭할 때는 이 연속선상의 모두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취약한 일부만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남기철 외, 2013).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노숙인 등'을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에 의하면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숙인을 주거의 측면을 요건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도시 지역의 저렴한 주거 부족과 임대료 상승,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노숙인을 양산하는 구조적 배경요인이 악화되고 있다. 거리노숙인과 시설노숙인 외에도 비숙박 다중이용시설 거주자(PC방, 찜질방, 다방, 만화방, 패스트푸드점 등), 쪽방, 여인숙, 여관, 고시원 거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취약계층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특히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 여인숙 등의 상당수는 노숙 생활과의 경계가 모호하며, 실제로 거리 노숙 생활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노숙인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이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만연된 노숙인에 대한 관념, 즉 '이슬을 맞으며 바깥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경우는 노숙인으로 정의되는 집단 내에서 오히려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거리노숙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외에도 찜질방, PC방, 만화방, 다방 등을 전전하는 사람들, 나아가 자신이 월세를 내고 입주한 고시원이나 쪽방, 심지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노숙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노숙인들이 살아온 노숙생활의 과정을 보면, 그들은 수시로 거리, 노숙인시설, 찜질방, 만화방, 쪽방이나 고시원, 그리고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잠 잘 공간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비공식성이다. 따라서 규모와 산출, 정책대상자로서의 특정화에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 포착이 어려우며 정확한 규모파악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개념인 거리노숙인과 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로 노숙인 개념을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2절 노숙인 규모

1. 전국 노숙인 등 현황

우리나라 전국 노숙인 규모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12,347명이다. 노숙인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1,949명, 일시보호시설 이용 노숙인 899명, 거리노숙인 1,138명, 재활·요양시설 거주 노숙인 8,361명이다. 이외에 쪽방주민이 6,147명이다.

〈표 2-2-1〉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3,152	13,145	12,391	12,656	12,347
자활시설	3,117	3,282	2,741	2,095	1,949
일시보호시설	-	-	-	844	899
거리노숙인	1,077	1,121	1,081	1,197	1,138
재활·요양시설	8,958	8,742	8,569	8,520	8,361
쪽방주민	6,232	5,991	5,891	5,992	6,147

출처: 보건복지부(2016b). 2016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시도별 노숙인 규모는 서울 4,270명, 대구 1,251명, 경기도 1,181명, 인천 1,090명, 부산 884명, 충북 825명, 전남 764명 등으로 나타나, 주로 대도시에 노숙인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2014.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자활	일시보호	거리노숙인	재활·요양	쪽방주민
합계	12,347	1,949	899	1,138	8,361	6,147
서울	4,270	1,116	636	308	2,188	3,475
부산	884	161	38	124	561	887
대구	1,251	132	22	124	973	893
인천	1,090	38	11	141	619	477
광주	167	16	-	6	145	-
대전	359	112	20	38	189	415
울산	53	30	7	16	-	-
세종	112	-	-	-	112	-
경기	1,181	516	93	294	578	-
강원	341	50	4	50	237	-
충북	825	17	22	6	757	-
충남	134	25	25	28	-	-
전북	376	36	9	-	184	-
전남	764	-	1	-	763	-
경북	391	-	-	-	391	-
경남	510	-	-	1	509	-
제주	511	-	11	2	155	-

출처: 보건복지부(2016b). 2016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노숙인시설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쪽방상담소가 있다. 시도별 노숙인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서울 50개소, 경기도 18개소, 부산 13개소, 대구 10개소, 인천 8개소, 대전 8개소, 강원 8개소, 전남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표 2-2-3〉 노숙인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쪽방상담소
합계	**148**	**10**	**8**	**62**	**58**	**10**
서울	50	2	4	25	14	5
부산	13	2	-	4	5	2
대구	10	1	1	5	2	1
인천	8	-	-	3	4	1
광주	2	-	-	1	1	-
대전	8	1	1	4	1	1
울산	1	-	-	1	-	-
세종	1	-	-	-	1	-
경기	18	3	1	10	4	-
강원	8	-	1	4	3	-
충북	1	-	-	1	3	-
충남	1	-	-	1	-	-
전북	5	-	-	2	3	-
전남	7	-	-	-	7	-
경북	4	-	-	-	4	-
경남	4	-	-	-	4	-
제주	3	1	-	-	2	-

출처: 보건복지부(2016b). 2016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 현황

1)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 현황

2016년 5월에서 6월에 걸쳐 진행된 대전광역시 노숙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350명이다. 이 중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45명이며,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305명이다.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32명, 노숙인자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106명, 노숙인재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16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쪽방주민이 421명이었다.

노숙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노숙인재활시설 거주자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30.3%, 거리노숙인 12.9%,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4〉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 현황

단위 : 명, %

구분	N	%
전체	350	100.0
거리노숙인	45	12.9
일시보호시설	32	9.1
노숙인자활시설	106	30.3
노숙인재활시설	167	47.7
쪽방주민	421	-

2) 대전광역시 거리노숙인 현황

2016년 5월 일시집계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리노숙인의 수는 모두 45명이다. 자치구별 거리노숙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가 73.3%(33명)로 가장 많은 거리노숙인이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중구 17.8%(8명), 서구 8.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5〉 거리노숙인 발견 현황

단위 : 명, %

자치구	N	%
동구	33	73.3
중구	8	17.8
서구	4	8.9
전체	45	100.0

[그림 2-2-1] 대전광역시 거리노숙인의 커널밀도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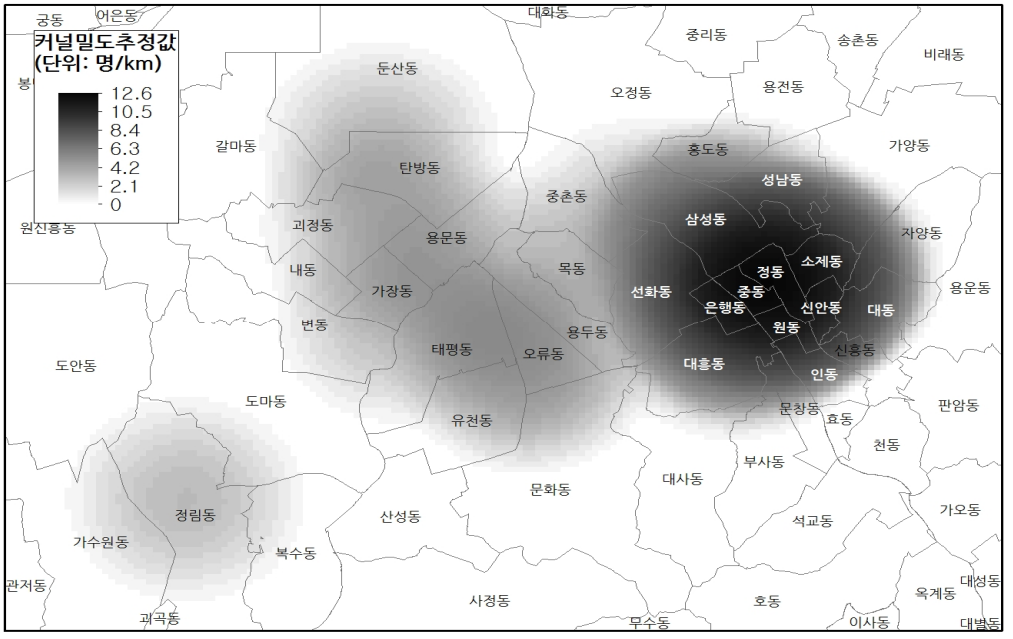

거리노숙인의 발견 장소를 살펴보면, 철도역 및 주변이 31.1%(1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하도, 지하상가와 하천 및 교량 일대가 각각 26.7%(12명), 기타(쇼핑센터, 병원, 거리)가 8.8%(4명), 공원이 6.7%(3명)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이 공원이나 하천과 같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발견되지만, 비교적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이동이 원활한 철도역 및 지하도 주변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6〉 거리노숙인 발견 장소 현황

단위 : 명, %

발견 장소	N	%
철도역 및 주변	14	31.1
지하도, 지하상가	12	26.7
하천 및 교량 일대	12	26.7
공원	3	6.7
기타	4	8.8
전체	45	100.0

출처 :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2016년 5월 기준)

자치구별 거리노숙인의 발견 장소를 살펴보면, 동구는 대전역 및 주변과 대전천 일대에서 대다수 노숙인이 발견되었다. 중구는 으능정이 거리, 서대전역 및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노숙인이 발견되었으며, 서구는 공원과 쇼핑센터에서 발견되었다. 노숙인이 동구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자치구별 거리노숙인 발견 장소 현황

단위 : 명, %

관할구	구분	N	%
동구	대전역 서광장	3	6.7
	대전역 역사내	6	13.3
	대전역 동광장	3	6.7
	대전역 동서관통로	4	8.9
	지하통로(역전)	5	11.1
	지하통로(목척교)	3	6.7
	목척교	2	4.4
	선화교	2	4.4
	삼선교	1	2.2
	북부교	2	4.4
	제1삼성교	2	4.4
중구	으능정이거리	1	2.2
	은행교	2	4.4
	○안과병원	1	2.2
	서대전역	2	4.4
	계룡육교	1	2.2
	경로공원	1	2.2
서구	가장교	1	2.2
	월평공원	1	2.2
	백운공원	1	2.2
	샤○○쇼핑센터	1	2.2
전체		45	100.0

[그림 2-2-2] 대전광역시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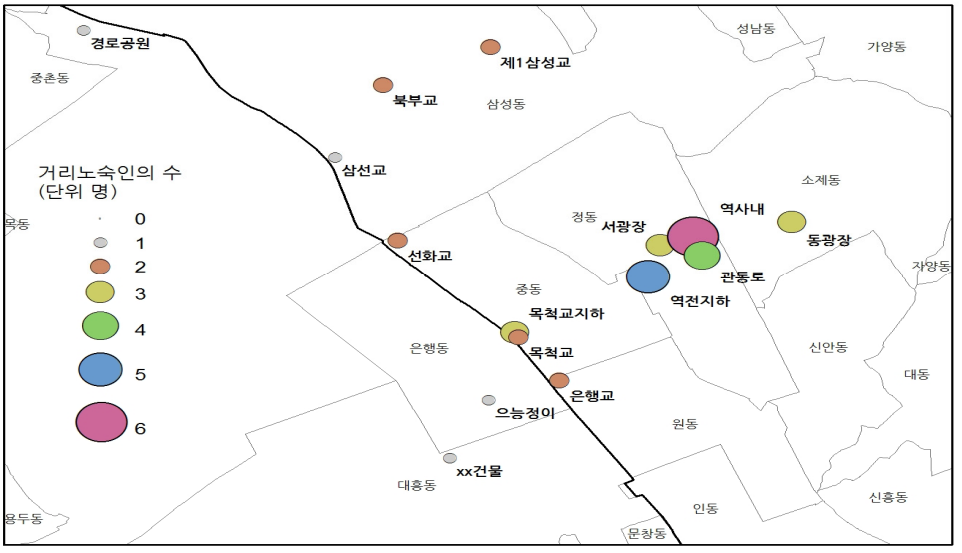

3) 대전광역시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 현황

대전광역시 노숙인시설은 일시보호시설 1개소, 자활시설 4개소, 재활시설 1개소가 있으며, 이용자 및 거주자는 모두 305명이었다. 대전광역시 노숙인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위해서 2016년 5월에 진행된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와 함께 일시보호시설 이용 노숙인 일시집계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시설유형별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면,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32명, 자활시설 거주자 106명, 재활시설 거주자 167명이다.

〈표 2-2-8〉 노숙인시설 유형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시설구분	시설	정원	현원	자치구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센터	30 ~ 50	32	동구
자활시설	야곱의집	25	25	중구
	성바우로의집	21	16	동구
	파랑새둥지	18	16	동구
	울안공동체	52	49	동구
재활시설	자강의집	170	167	대덕구
전체		336	305	-

출처 : 대전광역시노숙인일시보호센터 내부자료(2016년 5월 기준).

제3절 대전시 노숙인 지원정책

대전광역시의 노숙인정책 목적은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노숙인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즉 예방-재활-자립까지의 연속적 지원, 주거-의료-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현황·실태조사를 통한 근거중심의 노숙인 지원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2016년 대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노숙인 지원서비스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3-1] 대전광역시 노숙인 지원서비스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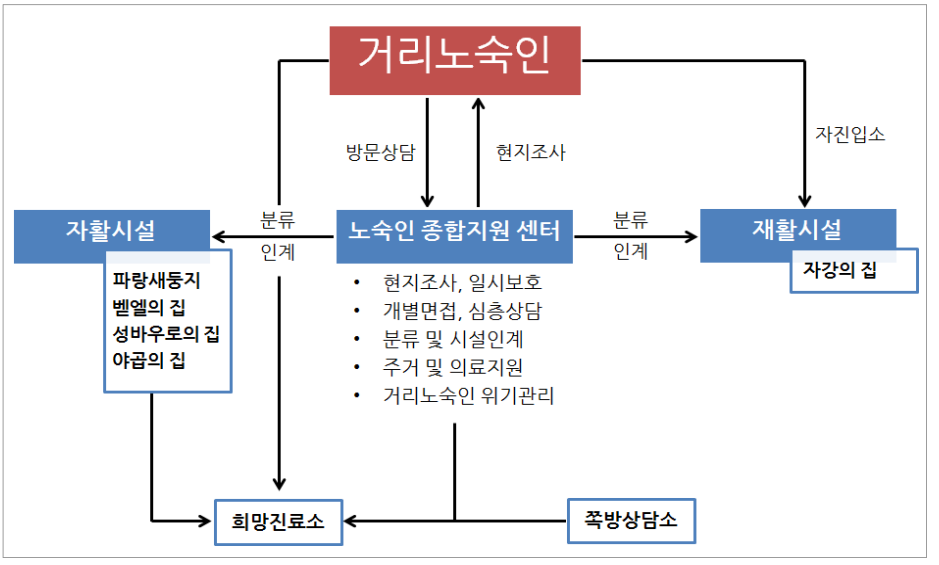

〈표 2-3-1〉 대전광역시 노숙인시설 유형별 현황 및 기능

시설유형	시설수	주요기능
전체	8	
노숙인자활시설	4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재활시설	1	신체 및 정신장애인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1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	주거·의료·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심리상담 등
쪽방상담소	1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타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상설 진료소 운영 : 희망진료센터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5. 12월말 기준)

1. 노숙유입 예방 및 초기 노숙인 지원사업

1)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숙인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노숙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노숙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방을 통해 노숙인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노숙문제의 감소와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에 주목해야 한다. 대전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을 강화하고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노숙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2-3-2〉 2015년 주거취약계층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쪽방생활인 매입임대주택	거리노숙인 등 시주거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주거지원)
지원가구	69	38	13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5. 12월말 기준)

먼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단전·단수·월세 체납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방문상담을 하여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중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PC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이용자가 거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숙인 복지시설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취약가구에게 자활근로사업 등 일자리를 알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있다.

[그림 2-3-2] 대전광역시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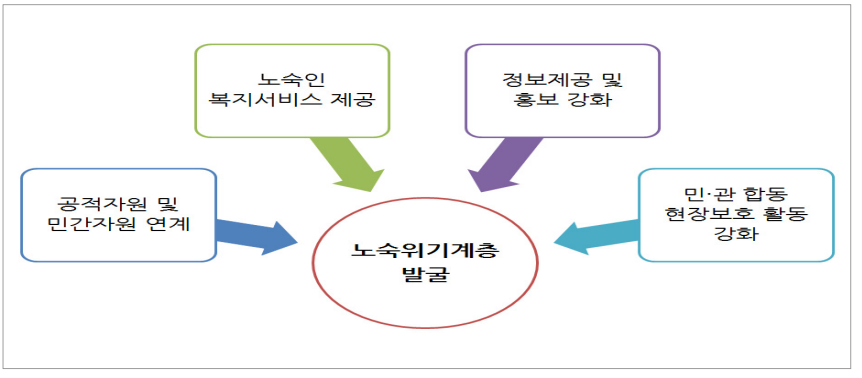

2) 상담활동 및 위기관리사업

거리노숙인 지원은 전문상담원이 시설입소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리노숙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서비스에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거리노숙인의 상담활동 및 응급지원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현장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 밀집지역은 자치구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현장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을 발견하거나 신고한 경우 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 출장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을 통하여 주거지원, 행정지원, 시설입소를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위기관리팀을 구성하여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거리노숙인을 발굴하여 병원입원, 시설입소, 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거리노숙인 현장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현장 상담은 활동 393회, 상담 4,509건을 진행하였으며, 위기관리 상담은 활동 113회, 상담 233건을 실시하였다.

〈표 2-3-3〉 2015년 거리노숙인 현장 상담 현황

단위 : 회, 건

구분	일반 현장 상담		위기관리 상담	
	활동	상담	활동	상담
2015년	393	4,509	113	233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5. 12월말 기준)

2.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 대책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과 달리 거리노숙인 중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많아 혹서기 열사병, 동절기 동사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또한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은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혹서기 및 혹한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잠자리 제공 및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혹서기에는 거리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 또는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하고 있다. 긴급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희망진료센터와 같은 상설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거리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복지시설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선풍기, 쿨매트, 생수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쪽방상담소에는 샤워시설과 대형 빨래방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2-3-3] 대전광역시 혹서기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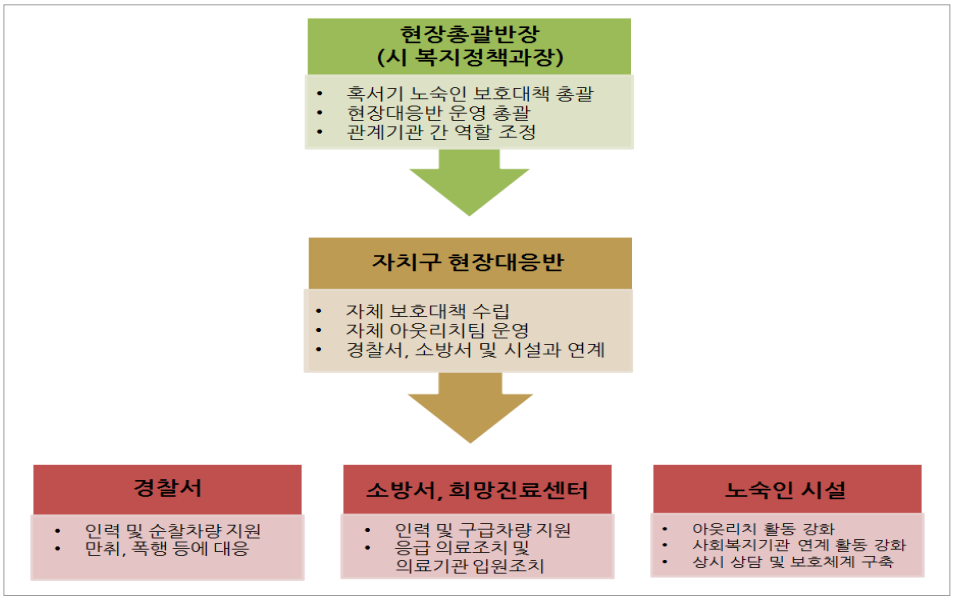

한편 동절기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거리노숙인 실태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시설입소, 응급잠자리 제공, 주거지원, 병원치료 등 거리노숙인의 위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노숙인 특성별로 분리하여 시설에 보호하고 근로능력자 및 일자리 희망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시설과 쪽방에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표 2-3-4〉 대전광역시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구분	추진 내용
현지조사 및 위기지원 강화	•구/동/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및 상담 •시설입소, 응급잠자리제공, 주거지원, 병원치료 등 거리노숙인 대책 추진
시설입소 보호	•밀착상담 결과에 따른 노숙인 특성별로 분리하여 보호 •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활용
노숙인 건강관리	•상설 무료진료소 운영, 진료를 통한 건강관리 강화 •시설보호 노숙인 및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
노숙인시설 및 쪽방 안전관리	•노숙인시설 및 쪽방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 실시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수칙 교육
자활지원 및 물품지원	•근로능력자, 일자리 희망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동절기 물품을 적정 배분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5. 12월말 기준)

3. 주거지원

1) 임시주거 지원사업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신속하게 임시적인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 대전시는 거리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직업 능력에 따라 맞춤 일자리를 알선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먼저 거리노숙인의 임시주거지원과 생필품 지원을 통하여 거리노숙을 종식토록 하고 있다. 주거지원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세방을 임차하여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평균 월 20만 원 내외로, 최대 월 75만 원까지, 최장 3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생활용품비를 1회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지원하여 스스로 주거비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자조모임, 방문사례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2015년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주거지원사업은 77명의 노숙인이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92%가 주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생활용품 35명, 사례관리 125명, 주민등록 복원 7명, 긴급지원 6명, 수급 신청 14명, 의료지원 4명, 정착프로그램 21명, 서비스 연계 9명이 지원받고 있다. 이외에도 구직상담을 통해 구직 연계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3-5〉 2015년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실적

단위 : 명

구분	주거지원		생활용품	사례관리	주민등록 복원	긴급지원	수급 신청	의료지원	정착 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신규	기존								
계	38	39	35	125	7	6	14	4	21	9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5. 12월말 기준)

2)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 사업

대전시는 노숙인의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근로의지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스스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노숙인시설 거주자 및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생활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적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69명이 입주하였으며,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비가 4만 원 정도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쪽방상담소에 입주신청을 하고 LH 공사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쪽방상담소를 통해 입주건물을 선택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4. 의료지원

대전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의거하여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자로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 노숙인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와 달리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시설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노숙인 지정의료시설은 1차 기관 보건소 5개소, 2차 기관 신생정신병원과 선병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노숙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 의료지원을 위해 시 자체사업으로 상설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희망무료진료소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의료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2015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위기관리사업 실적을 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1,5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상담에 233명, 병원입원 45명,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등의 시설입소 10명, 주거 등 서비스 지원에 1,273명이 지원을 받았다.

〈표 2-3-6〉 2015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위기관리사업 실적

단위 : 명

계	상담	병원입원	시설입소	주거 등 서비스 지원
1,561	233	45	10	1,273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5. 12월말 기준)

한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내·외과, 치과, 한의과, 피부과, 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2015년 희망무료진료소 진료 실적을 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5,123명이 이용하였다. 일반진료 1,995명, 상시진료 216명, 치과진료 69명, 한방진료 88명, 안과진료 51명, 영양제 182명, 물리치료 2,239명, 외래진료 264명, 입원진료 19명이 이용하였다.

〈표 2-3-7〉 2015년 희망무료진료소 진료 실적

단위 : 명

계	일반진료	상시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안과진료	영양제	물리치료	외래진료	입원진료
5,123	1,995	216	69	88	51	182	2,239	264	19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5. 12월말 기준)

[그림 2-3-4]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시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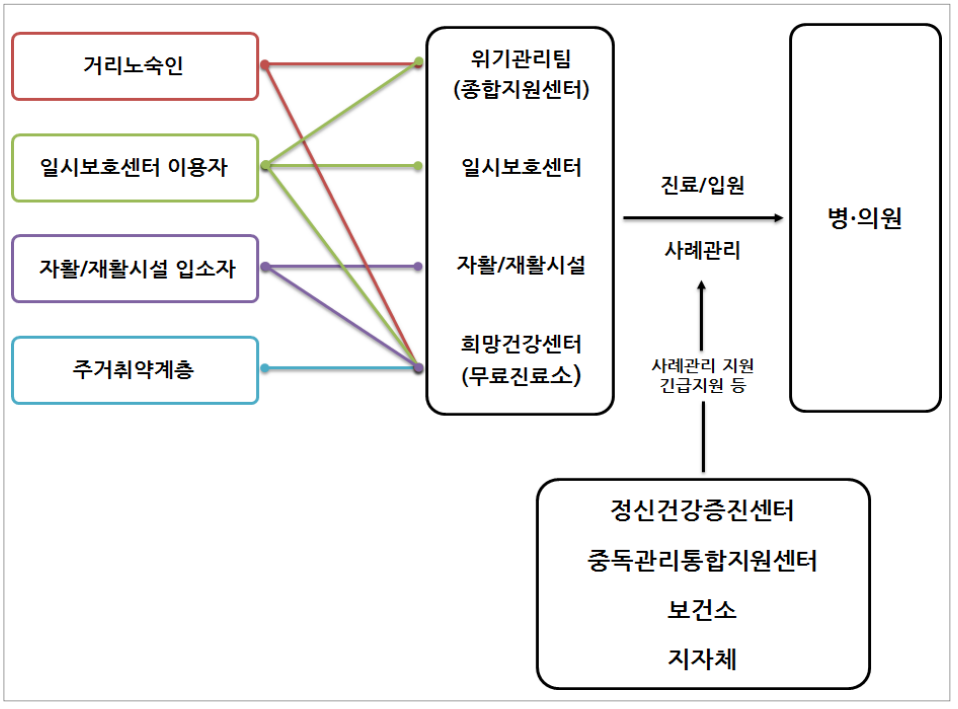

5. 일자리 지원

1) 교육지원 사업

대전시는 노숙인의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추진은 노숙인복지시설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 사업은 노숙인시설 입소자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노숙인 자격증 취득 등 취업교육 지원 현황은 2015년 12월 기준 총 86명이다. 노숙인 기초취업교육에 64명, 목공자활과 중장비 자격취득 및 가구 만들기 교육에 각각 11명이 참여하였다.

〈표 2-3-8〉 2015년 노숙인 자격증 취득 등 취업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계	기초취업교육 지원사업	목공자활	중장비 자격취득 및 가구 만들기 교육
86	64	11	11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5. 12월말 기준)

2) 자활 및 일자리 지원사업

대전시는 노숙인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고용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활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추진은 노숙인복지시설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숙인시설 입소자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일자리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 현황은 2015년 12월 기준 총 45명이다. 커피머신 임대사업에 2명, 영농사업에 6명, 노숙인 자활「빅이슈」판매에 2명, 숲으로 떠나는 노숙인 프로그램에 28명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표 2-3-9〉 2015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 현황

단위 : 명

계	커피머신 임대사업	영농사업	노숙인 자활「빅이슈」판매	숲으로 떠나는 노숙인 프로그램
45	2	6	2	28

출처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5. 12월말 기준)

제3장

노숙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3장 노숙인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본 조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노숙인의 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통해 노숙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노숙인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거리와 시설 거주 노숙인, 그리고 단기간의 노숙인과 장기간의 노숙인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과 시설 거주 노숙인을 구분하고 시설을 자활시설과 재활시설로 구분하여 기획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거리노숙인은 거리생활자와 일시보호센터 이용자를 포함한다. 거리생활자는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거리, 교량, 건물 주변, 버스정류장 등)이나 사람의 거처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이나 기타 장소(역, 계단, 차고, 지하도, 공중화장실 등)에서 잠자리에 들거나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아웃리치 서비스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거리노숙인과 대화가 용이한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실무자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은 조사기간 동안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활시설 4개소, 재활시설 1개소가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조사 기간 동안 자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으로,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할 수 없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활시설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이 대다수로 응답이 가능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16년 5월 4일부터 2016년 5월 5일 이틀간 노숙인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조사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면대 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노숙인의 특성을 잘 알고 대화가 용이한 노숙인시설 실무자가 실시하였다. 노숙인 설문

조사는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낯선 사람의 접근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은 2016년 5월 17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총 211명(거리노숙인 54명, 시설 거주 노숙인 157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완료 후 조사관리자가 조사표의 응답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조사항목 중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한 문항이 발견된 경우 보충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1-1〉 조사대상

단위 : 명

구분		조사대상[1)]	조사인원	조사기간
거리노숙인	거리생활자	45	23	2016. 5. 19. ~ 5. 30.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32	31	2016. 5. 17. ~ 6. 14.
시설노숙인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167	62	2016. 5. 26. ~ 6. 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106	95	2016. 5. 17. ~ 5. 30.
전체		350	211	2016. 5. 17. ~ 6. 14.

2. 조사방법

1) 조사내용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기본적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표 개발을 위해 노숙인시설장 및 센터장, 실무자들과의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이후 거리와 시설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거쳤다. 조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숙인의 일반적 사항, 노숙 전 상황, 주거생활,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자립 및 근로능력, 유형별 추가문항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같은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거리노숙인과 시설노숙인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욕구도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 문항을 만들어 두 노숙인 유형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1-2> 참고).

1)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16년 5월 기준

〈표 3-1-2〉 조사 영역 및 주요 내용

영역	문항내용	
Ⅰ. 일반적 사항	- 응답자 특성: 성별, 출생년도, 학력, 혼인관계, 주민등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비수급 이유 - 가족관계 : 노숙 전 동거여부, 연락 여부 및 빈도	
Ⅱ. 노숙 전 상황	- 노숙 원인, 최초 노숙 시기, 최초 노숙 지역 - 노숙 전 직업, 노숙 전 고용형태, 노숙 전 수입 - 노숙 전 건강상태, 노숙 전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노숙 전 주거형태	
Ⅲ. 주거생활	노숙 후 거주지 유형별 경험, 노숙 후 폭력 피해 경험	
Ⅳ. 경제활동	- 근로활동 : 근로여부, 근로횟수, 현재 직업, 고용형태, 구직활동, 구작활동의 어려움 등 -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 방법, 지출, 지출항목 등 - 부채 여부, 부채발생 이유, 저축 등	
Ⅴ. 건강 및 의료	건강 상태, 최근 치료 경험, 장애유무, 질병유무 및 치료 여부, 우울(CES-D), 음주 성향	
Ⅵ. 자립 및 근로능력	- 자립시도, 희망하는 주거지원 - 근로활동능력: 체력, 만성적 증상, 자신감, 집중력, 자기통제 - 자립준비, 복지욕구	
Ⅶ. 유형별 추가문항	거리노숙인	- 거리노숙 시작 시기 및 기간, 일시보호시설 이용 시기 및 기간 - 거주 장소 선택 이유, 거리생활의 어려움, 시설입소거부 이유, 서비스이용 경험
	시설노숙인	시설입소 시기 및 기간, 입소경로, 입소이유, 퇴소 의향 여부 및 계획, 시설만족도

2) 조사도구

(1) 우울

본 연구는 노숙인이 스스로 얼마나 우울하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D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 증상의 빈도에 따라 우울 증상을 네 단계의 수준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증상의 정도는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이며, 총점은 0점에서 60점까지이다. 이 총점이 우울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Radloff는 절단점을 16점으로 제시하였는데(조맹제·김계희, 1993), 16점 이상을 경도의 우울증상으로 보고 25점 이상을 우울증상으로 본다. 긍정적 문항인 5, 10, 15번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2) 음주 성향

본 연구는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음주문제 선별검사 도구 CAGE(Cut down, Annoyed, Guilty feeling, Eye-opening)를 사용하였다. CAGE는 금주에 대한 생각, 주위 사람들의 비난, 음주에 대한 죄책감, 해장술 경험 여부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경우 1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점으로 전체 4문항 중에 2문항 이상의 문항에 '예'로 응답하면 알코올 의존으로 선별할 수 있다(Mayfield 등, 1974).

(3) 근로활동능력

근로활동은 특정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직무/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공통 기초능력(basic work skills)과 직업기초 소양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능력은 근로가 가능한 정도를 말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근로활동능력이라는 2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근로가 가능하다고 본다(변경희 외, 2009).

근로활동능력은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변경희 외(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근로활동능력 평가는 근로능력 수행에 미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근로활동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 기초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근로활동능력 평가 요소는 활동성, 소양,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학습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다.

근로활동능력 평가는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코올중독, 취업 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근로의욕, 자기통제, 대처능력, 표현능력에 관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항목은 0점에서 4점 중 하나의 점수를 부여한다. 총점은 0점에서 최대 40점이며, 절단점은 최소 19점에서 최대 24점의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 이 절단점을 기준으로 절단점 이하이면 근로능력이 없고, 절단점 보다 1점이라도 많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활동능력 평가의 10개 항목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예비조사와 현장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숙인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체력, 만성적 증상, 자신감, 집중력, 자기통제 5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4) 자립준비도

자립준비도는 노숙인이 시설을 퇴소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를 나타낸다. 노숙인의 자립준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원우 외(2009)가 개발한 자립준비도를 사용

하였다. 자립준비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경제적 자립 준비 수준, 일상생활유지 능력, 관계유지 능력, 자립경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해당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전체 문항의 합산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밥/반찬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라는 문항이 예비조사와 현장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숙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최종 13문항으로 축소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숙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숙인의 경제활동, 건강, 근로활동능력 및 자립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든 문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제2절 대전시 노숙인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3-2-1>과 같다. 노숙인의 성별은 남성이 93.4%(197명), 여성이 6.6%(14명)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숙인 유형별로 성별을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남성이 98.1%(53명)이며, 여성은 1.9%(1명)에 불과하였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남성이 79.0%(4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 여성이 21.0%(13명)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남성이 100.0%(95명)로, 이는 대전에 여성노숙인을 위한 자활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연령대는 50대가 37.0%(7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1.3%(45명), 60대 19.4%(41명), 30대 11.8%(25명), 70대 이상 7.6%(16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평균연령은 52.9세로 최소연령은 23세, 최고연령은 85세였다. 노숙인의 연령대는 50대를 중심으로 40대와 60대가 많으나 30대 이하의 청년 노숙인도 14.6%를 차지해 노숙인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숙인 유형별로 연령을 보면, 거리노숙인은 50대가 38.9%(2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20.4%(11명), 30대와 60대가 각각 14.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50대가 50.0%(3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22.6%(14명), 40대 17.7%(11명) 등의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50대가 27.4%(26명), 40대 24.2%(23명), 60대 20.0%(19명), 30대 14.7%(14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 유형별로 거리, 재활시설, 자활시설 모두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거리노숙인은 20~30대, 재활 및 자활 시설 거주 노숙인은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연령 분포의 차이는 노숙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노숙인 유형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0%(9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5.6%(54명), 중학교 졸업이 20.0%(42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4%(22명) 순이었다. 노숙인 54.4%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숙 문제가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노숙인 유형별로 학력을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46.3%(25명)가 고등학교 졸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7.7%(15명), 중학교 졸업이 16.7%(9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9.3%(5명)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7.0%(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2.3%(20명)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노숙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고등학교 졸업이 47.4%(45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12.6%(12명)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노숙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숙인의 혼인관계는 미혼이 49.3%(10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거 27.5%(58명), 기혼 9.0%(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와 이혼, 사별이 각각 4.7%(10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숙인은 미혼인 경우가 많으며, 노숙인 중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가족을 구성한 경험이 전혀 없는 노숙인도 있었다. 노숙인의 연령대가 40대와 5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미혼인 사람의 비중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숙인의 사회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숙인 유형별로 혼인관계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미혼이 63.0%(3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거 24.1%(13명), 기혼, 별거, 이혼이 각각 3.7%(2명)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은 다른 노숙인 유형보다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혼은 낮게 나타났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혼인관계는 미혼이 48.4%(3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거 33.9%(21명), 기혼 6.5%(4명) 등의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혼인상태는 미혼 42.1%(40명), 동거 25.3%(24명), 기혼 13.7%(13명), 사별 7.4%(7명), 별거 6.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노숙인 유형보다 결혼하거나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노숙인		재활노숙인		자활노숙인	
		n	%	n	%	n	%	n	%
성별	남성	197	93.4	53	98.1	49	79.0	95	100.0
	여성	14	6.6	1	1.9	13	21.0	0	0.0
연령	20대	6	2.8	3	5.6	1	1.6	2	2.1
	30대	25	11.8	8	14.8	3	4.8	14	14.7
	40대	45	21.3	11	20.4	11	17.7	23	24.2
	50대	78	37.0	21	38.9	31	50.0	26	27.4
	60대	41	19.4	8	14.8	14	22.6	19	20.0
	70대 이상	16	7.6	3	5.6	2	3.2	11	11.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25.6	15	27.7	20	32.3	19	20.0
	중학교 졸업	42	20.0	9	16.7	14	22.6	19	20.0
	고등학교 졸업	93	44.0	25	46.3	23	37.0	45	47.4
	대학교 졸업 이상	22	10.4	5	9.3	5	8.1	12	12.6
혼인관계	미혼	104	49.3	34	63.0	30	48.4	40	42.1
	기혼	19	9.0	2	3.7	4	6.5	13	13.7
	동거	58	27.5	13	24.1	21	33.9	24	25.3
	별거	10	4.7	2	3.7	2	3.2	6	6.3
	이혼	10	4.7	2	3.7	3	4.8	5	5.3
	사별	10	4.7	1	1.9	2	3.2	7	7.4
전체		211	100.0	54	100.0	62	100.0	95	100.0

노숙인의 주민등록 유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3-2-2>와 같다. 노숙인의 97.6%(206명)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응답은 2.4%(5명)에 불과하였다. 노숙인 유형별로 주민등록 유지 여부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92.6%(50명),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100.0%(62명),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98.9%(94명)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거리노숙인이 다른 유형의 노숙인보다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숙인의 주민등록 상태는 현재 입소한 시설에 등록이 58.8%(12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전 지역에 등록이 24.2%(51명), 다른 지역에 등록이 14.7%(31명), 말소가 2.4%(5명) 순이었다. 노숙인 유형별로 주민등록 상태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48.1%(26명)가 대전 지역에 등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다른 지역에 등록이 37.0%(20명), 현재 입소한 시설에 등록과 말소가 각각 7.4%(4명)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민등록 상태는 현재 입소한 시설에 등록이 100.0%(62명)였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민등록 상태는 현재 입소한 시설에 등록이 61.1%(58명), 대전 지역에 등록이 26.3%(25명), 다른 지역에 등록이 11.6%(11명) 등의 순이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이 거리 노숙인보다 주민등록을 현재 입소한 시설에 등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재활시설과 자활시설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소를 현재 생활하는 시설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2-2〉 주민등록 유지 여부 및 상태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노숙인		재활노숙인		자활노숙인	
		n	%	n	%	n	%	n	%
유지 여부	주민등록 유지	206	97.6	50	92.6	62	100.0	94	98.9
	주민등록 말소	5	2.4	4	7.4	0	0.0	1	1.1
상태	현재 입소한 시설에 등록	124	58.8	4	7.4	62	100.0	58	61.1
	대전 지역에 등록	51	24.2	26	48.1	0	0.0	25	26.3
	다른 지역에 등록	31	14.7	20	37.0	0	0.0	11	11.6
	말소	5	2.4	4	7.4	0	0.0	1	1.1
전체		211	100.0	54	100.0	62	100.0	95	100.0

조사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표 3-2-3>과 같다. 노숙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 여부는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59.2%(12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수급자가 29.9%(63명), 일반수급자 6.2%(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83.3%(45명)가 수급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수급자가 13.0%(7명), 시설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각각 1.9%(1명)라고 응답하였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100.0%(62명)가 시설수급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보장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수급자로 책정된 노숙인은 기존 시설수급자 급여를 따르기 때문이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84.2%(80명)가 수급자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은 8.4%(8명), 일반수급자는 6.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노숙인		재활노숙인		자활노숙인	
	n	%	n	%	n	%	n	%
비수급자	125	59.2	45	83.3	0	0.0	80	84.2
일반수급자	13	6.2	7	13.0	0	0.0	6	6.3
특례수급자	1	0.5	0	0.0	0	0.0	1	1.1
시설수급자	63	29.9	1	1.9	62	100.0	0	0.0
차상위계층	9	4.3	1	1.9	0	0.0	8	8.4
전체	211	100.0	54	100.0	62	100.0	95	100.0

노숙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41.9%(7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서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가 각각 13.2%(22명)로 나타났다. 이외에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가 7.2%(12명), 본인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가 6.6%(11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 유형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이유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42.9%(2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서가 16.1%(9명),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가 10.7%(6명)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와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가 각각 8.9%(5명)를 차지하고 있어, 거리노숙인은 불안정한 거처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40.9%(4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가 14.5%(16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서 11.8%(13명),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 10.9%(1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2-4〉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이유(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노숙인		자활노숙인	
	n	%	n	%	n	%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70	41.9	24	42.9	45	40.9
본인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11	6.6	2	3.6	9	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서	22	13.2	9	16.1	13	11.8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22	13.2	6	10.7	16	14.5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8	4.8	5	8.9	3	2.7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	8	4.8	5	8.9	3	2.7
명의도용된 재산 때문에	5	3.0	1	1.8	4	3.6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6	3.6	3	5.4	3	2.7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	12	7.2	0	0.0	12	10.9
기타	3	1.8	1	1.8	2	1.8
전체	167	100.0	56	100.0	110	100.0

2. 가구 특성

1) 노숙 전 가족 동거 여부

조사대상자의 노숙 전 가족 동거 여부는 <표 3-2-5>와 같다. 노숙인의 56.9%(120명)가 노숙생활 전에 가족이나 친인척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었으며, 노숙 생활 이전부터 가족관계의 취약성을 나타냈다. 노숙인 유형별로 노숙 전 가족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63.0%(34명),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6.8%(29명),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60.0%(57명)가 노숙 전에 가족 혹은 친지와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노숙 전 가족 동거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노숙인		재활노숙인		자활노숙인	
	n	%	n	%	n	%	n	%
동거	120	56.9	34	63.0	29	46.8	57	60.0
비동거	91	43.1	20	37.0	33	53.2	38	40.0
전체	211	100.0	54	100.0	62	100.0	95	100.0

노숙인의 노숙 전 같이 살았던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23.0%(4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녀 21.5%(45명), 어머니 20.6%(43명), 아버지 15.3%(32명), 형제·자매 11.5%(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유형별로 노숙 전 같이 살았던 가족 구성원을 보면, 거리노숙인은 어머니가 22.6%(1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버지 20.8%(11명), 자녀 18.9%(10명), 배우자 17.0%(9명) 등의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동거했던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가 25.0%(12명)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20.8%(10명), 아버지 16.7%(8명), 자녀 14.6%(7명) 등의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동거했던 가족 구성원을 보면 배우자가 26.9%(29명), 자녀 25.9%(28명), 어머니 17.6%(19명), 아버지 12.0%(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 노숙 전 동거했던 가족 구성원(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노숙인		재활노숙인		자활노숙인	
	n	%	n	%	n	%	n	%
아버지	32	15.3	11	20.8	8	16.7	13	12.0
어머니	43	20.6	12	22.6	12	25.0	19	17.6
배우자	48	23.0	9	17.0	10	20.8	29	26.9
동거인(애인)	6	2.9	1	1.9	2	4.2	3	2.8
자녀	45	21.5	10	18.9	7	14.6	28	25.9
형제·자매	24	11.5	7	13.2	6	12.5	11	10.2
친인척	2	1.0	1	1.9	1	2.1	0	0.0
기타	9	4.3	2	3.8	2	4.2	5	4.6
전체	209	100.0	53	100.0	48	100.0	108	100.0

2) 가족 및 친지와의 관계망

조사대상자의 가족 및 친지 연락 여부를 살펴보면 <표 3-2-7>과 같다. 노숙인의 64.0%(135명)가 가족 및 친지와 연락이 끊긴 것으로 나타나, 많은 노숙인이 가족 및 친인척과 연락도 없이 살아감을 알 수 있다. 노숙인 유형별로 가족 및 친지 연락 여부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81.5%(44명)가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및 친인척들과 연락을 한다는 응답은 18.5%(10명)에 불과하였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54.8%(34명)가 가족 및 친인척과 연락이 단절되었으며, 45.2%(28명)가 연락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60.0%(57명)가 가족 및 친인척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40.0%(38명)가 가족과 연락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거리노숙인이 다른 유형의 노숙인보다 가족 및 친인척들과 연락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가족 및 친인척들과 연락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7〉 가족 및 친지 연락 여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노숙인		재활노숙인		자활노숙인	
	n	%	n	%	n	%	n	%
연락 중	76	36.0	10	18.5	28	45.2	38	40.0
단절	135	64.0	44	81.5	34	54.8	57	60.0
전체	211	100	54	100	62	100	95	100

조상대상자의 가족이나 친지와 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표 3-2-8>과 같다. 노숙인의 26.5%(56명)가 가족/친지가 있지만 연락처가 없거나 잊어버렸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친지가 없다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지낸다가 각각 19.0%(40명)로 나타났다. 이외에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가 16.6%(35명), 가족/친지와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가 9.0%(19명), 만나지는 않지만,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가 8.1%(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유형별로 가족 및 친지와 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35.2%(19명)가 가족/친지가 있지만 연락처가 없거나 잊어버렸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친지가 없다가 29.6%(16명), 가족/친지의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지낸다가 각각 14.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가족 및 친지와 연락 정도를 보면, 가족/친지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지낸다가 27.4%(17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친지가 없다가 21.0% (13명), 가족/친지가 있지만 연락처가 없거나 잊어버렸다가 19.4%(12명) 등의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6.3%(25명)가 가족/친지가 있지만 연락처가 없거나 잊어버렸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친지의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가 20.0%(19명),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지낸다가 15.8%(15명), 가족/친지와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가 12.6%(12명)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이 다른 유형의 노숙인보다 가족/친지가 없거나 연락처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가족/친지와 연락하고 만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거리노숙인의 연계단절이 가장 심각한 상태였고, 시설 거주 노숙인은 상대적으로 관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가족관계가 전체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고립이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노숙생활 이후 가족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노숙인도 있었다.

〈표 3-2-8〉 가족 및 친지와 연락 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노숙인		재활노숙인		자활노숙인	
	n	%	n	%	n	%	n	%
가족/친지가 없다	40	19.0	16	29.6	13	21.0	11	11.6
가족/친지의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을 끊고 산다	4	1.9	1	1.9	1	1.6	2	2.1
가족/친지의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	35	16.6	8	14.8	8	12.9	19	20.0
가족/친지가 있지만 연락처가 없거나 잊어버렸다	56	26.5	19	35.2	12	19.4	25	26.3
가족/친지와 만나지는 않지만,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17	8.1	0	0.0	6	9.7	11	11.6
가족/친지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지낸다	40	19.0	8	14.8	17	27.4	15	15.8
가족/친지와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	19	9.0	2	3.7	5	8.1	12	12.6
전체	211	100.0	54	100.0	62	100.0	95	100.0

조사대상자의 가족 및 친지와의 연락 방법을 살펴보면 <표 3-2-9>와 같다. 노숙인이 가족 및 친지와 연락하는 방법은 직접 만남이 75.0%(5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화가 22.4%(17명), 이메일 또는 우편이 2.6%(2명) 순이었다. 노숙인 유형별로 가족 및 친지와의 연락 방법을 보면, 거리노숙인의 70.0%(7명),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78.6%(22명),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73.7%(28명)가 가족이나 친지와 직접 만난다고 응답하였다.

〈표 3-2-9〉 가족 및 친지와 연락 방법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노숙인		재활노숙인		자활노숙인	
	n	%	n	%	n	%	n	%
직접 만남	57	75.0	7	70.0	22	78.6	28	73.7
전화	17	22.4	2	20.0	6	21.4	9	23.7
이메일 또는 우편	2	2.6	1	10.0	0	0.0	1	2.6
전체	76	100.0	10	100.0	28	100.0	38	100.0

노숙인들이 가족 및 친지와 직접 만나는 빈도는 연 2회 이상이 35.1%(2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월 1회 이상이 22.8%(13명), 연 1회 이상 21.1%(12명), 연 6회 이상 10.5%(6명) 등의 순이었다.

제3절 대전시 노숙인 특성과 실태

1. 노숙 전 상황

1) 노숙생활 시작

조사대상자의 노숙 원인을 살펴보면 <표 3-3-1>과 같다. 노숙인이 노숙생활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실직 및 사업실패가 26.6%(8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혼 및 가족해체가 14.1%(45명), 질환 및 장애 13.8%(44명), 부채 및 신용불량 12.5%(40명), 주거지 상실 12.2%(39명),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8.1%(26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노숙 원인은 실직 및 사업실패, 부채 및 신용불량, 주거지 상실 등 경제적 요인이 5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들 외에도 이혼 및 가족해체와 같은 제도적 관계망 상실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노숙 원인은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3-1> 노숙 원인(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실직 및 사업실패	85	26.6
이혼 및 가족해체	45	14.1
부채 및 신용불량	40	12.5
게임 및 도박중독	10	3.1
질환 및 장애	44	13.8
주거지 상실	39	12.2
수급중지	4	1.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26	8.1
가족관계의 어려움	22	6.9
기타	5	1.6
전체	320	100.0

[그림 3-3-1] 노숙 원인(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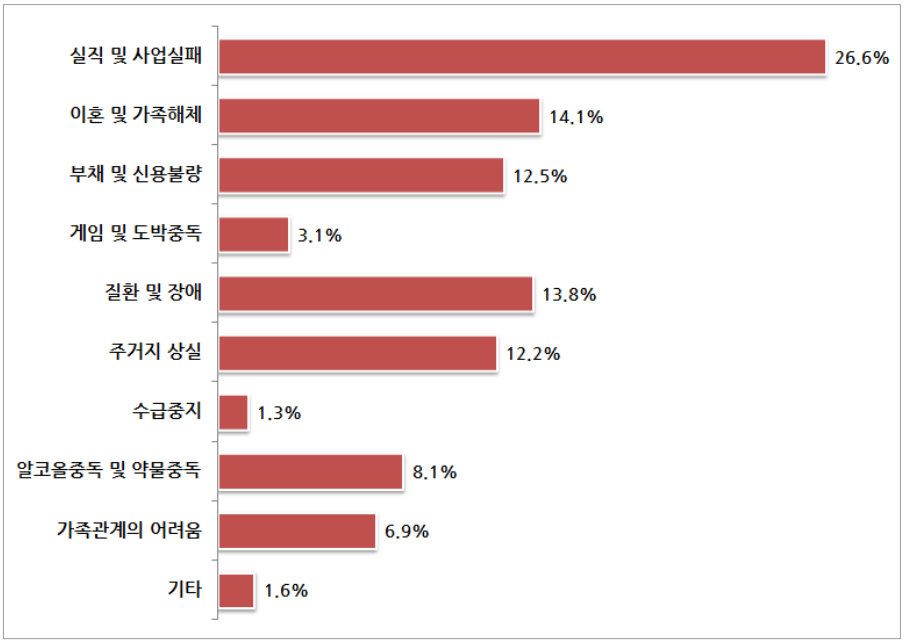

노숙인이 처음으로 노숙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에 노숙을 시작한 노숙인이 31.0%(6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6년~2010년이 25.2%(53명), 2001년~2005년 18.1%(38명), 1996년~2000년 15.2%(32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이 노숙을 시작한 시기는 1997년 이전과 이후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 중반부터 노숙을 시작한 노숙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시기를 기점으로 실직, 사업 실패와 같은 사건으로 가족해체, 주거지 상실 등의 빈곤화 과정을 거쳐 2000년대 중반부터 노숙으로 이르게 된 노숙인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실직자가 실직과 동시에 바로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소외과정 속에서 실업, 가정불화, 가족해체, 알코올중독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노숙으로 이르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노숙인의 학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이전의 노숙인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대다수였으나, 이후에는 고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학력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학력자의 노숙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실직, 가족해체, 주거지 상실 등의 빈곤화, 노숙화를 거쳐 노숙인이 되고 만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3-2〉 노숙 시작 시기

단위 : 명, %

구분	n	%
1969년 ~ 1980년	2	1.0
1981년 ~ 1990년	8	3.8
1991년 ~ 1995년	8	3.8
1996년 ~ 2000년	32	15.2
2001년 ~ 2005년	38	18.1
2006년 ~ 2010년	53	25.2
2011년 ~ 2015년	65	31.0
2016년 ~	4	1.9
전체	210	100.0

[그림 3-3-2] 노숙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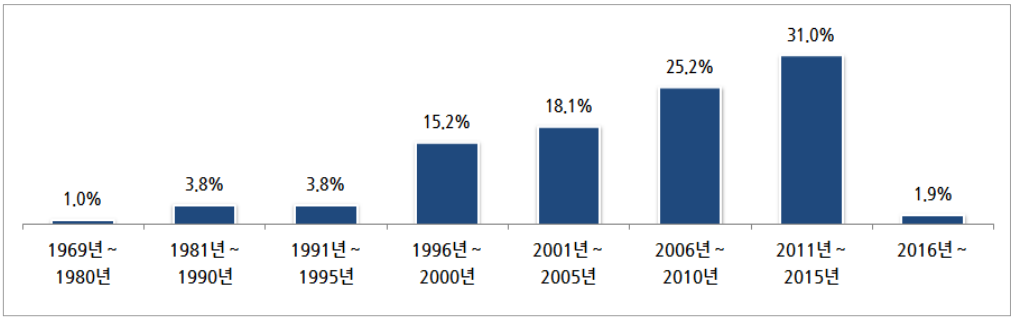

노숙인이 노숙을 경험한 기간은 6년~10년이 25.4%(5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년~5년 19.1%(40명), 11년~15년 18.2%(38명), 16년~20년 15.3%(32명), 1년~2년 12.0%(25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평균 노숙기간은 10.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노숙을 시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노숙인은 1.9%(4명)이었으며, 노숙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노숙인이 68.0%로 많은 노숙인이 장기적으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3〉 노숙 기간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년 미만	4	1.9	
1년 ~ 2년	25	12.0	
3년 ~ 5년	40	19.1	
6년 ~ 10년	53	25.4	
11년 ~ 15년	38	18.2	10.3년(7.7)
16년 ~ 20년	32	15.3	
21년 ~ 25년	8	3.8	
26년 ~ 30년	7	3.3	
31년 이상	2	1.0	
전체	209	100.0	

[그림 3-3-3] 노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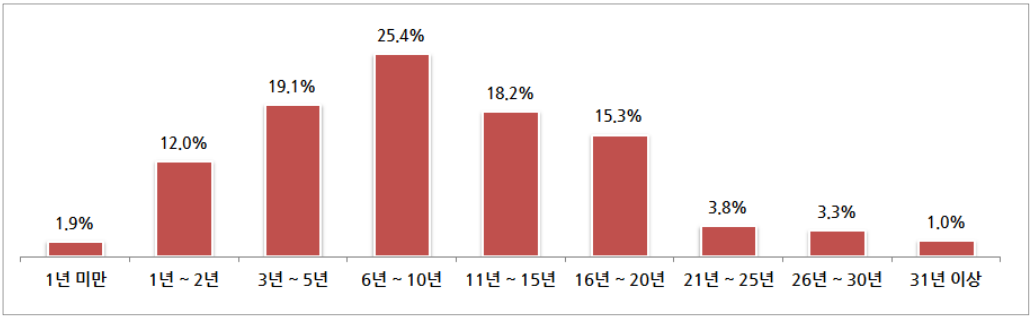

노숙인이 처음 노숙을 시작한 연령은 40대가 31.0%(6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7.1%(57명), 50대가 21.0%(44명), 20대가 11.9%(25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평균 연령은 42.6세로 나타났다. 노숙을 시작하는 연령이 30대 이하가 40.9%로 나타나, 노숙인들이 이른 나이에 노숙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4〉 노숙 시작 연령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0대	4	1.9	
20대	25	11.9	
30대	57	27.1	
40대	65	31.0	42.6세(11.5)
50대	44	21.0	
60대	14	6.7	
70대	1	0.5	
전체	210	100.0	

[그림 3-3-4] 노숙 시작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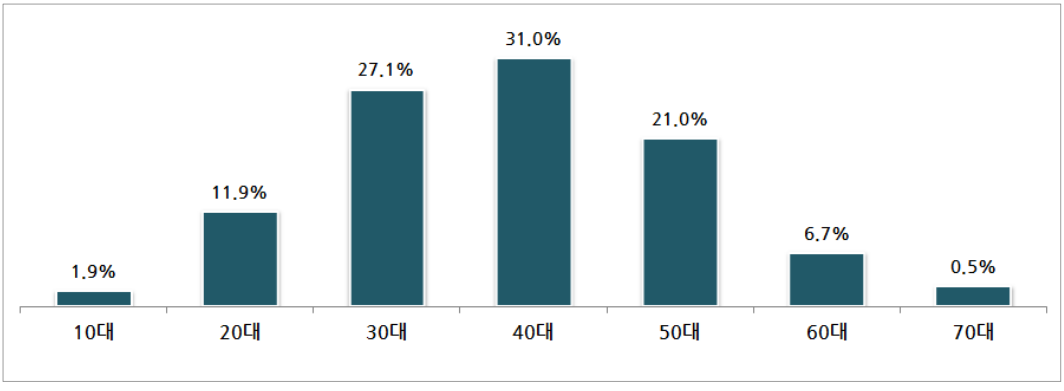

조사대상자가 노숙을 시작한 지역을 살펴보면 <표 3-3-5>와 같다. 노숙인의 45.0%(95명)가 대전에서 처음 노숙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16.6%(35명), 충남 9.5%(20명), 경기 8.1%(17명), 충북, 대구, 부산이 각각 2.8%(6명) 등의 순이었다. 대전이 중간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입되는 노숙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대전에서 노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노숙 시작 지역

단위 : 명, %

구분	n	%
대전	95	45.0
서울	35	16.6
충남	20	9.5
경기	17	8.1
충북	6	2.8
대구	6	2.8
부산	6	2.8
전북	5	2.4
경남	4	1.9
경북	4	1.9
인천	3	1.4
전남	3	1.4
울산	2	0.9
강원	2	0.9
광주	1	0.5
제주	1	0.5
해외	1	0.5
전체	211	100.0

[그림 3-3-5] 노숙 시작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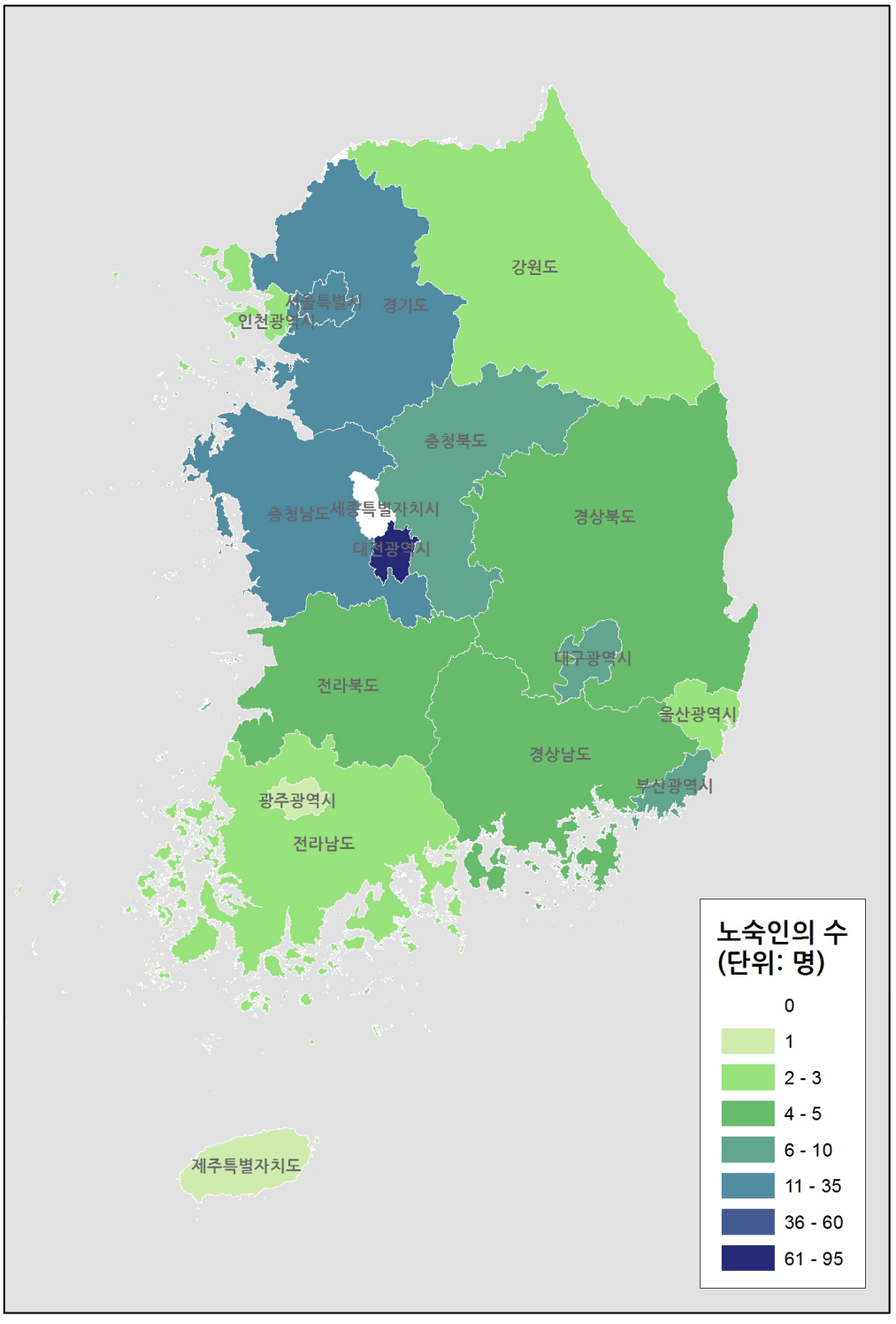

2) 노숙 전 경제활동

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5.3%(180명)가 근로활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7%(31명)에 불과하였다. 노숙인 대다수가 노숙 이전에 근로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근로활동을 했다	180	85.3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다	31	14.7
전체	211	100.0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노숙인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건설이 25.0%(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관리자가 18.3%(33명), 단순노무직_제조가 11.7%(21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8.3%(15명),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가 7.2%(13명), 서비스종사자와 사무종사자가 각각 5.6%(10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7〉 노숙 전 직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단순노무직_건설	45	25.0
단순노무직_운송	8	4.4
단순노무직_제조	21	11.7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5	2.8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5	2.8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13	7.2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9	5.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5	8.3
판매종사자	3	1.7
서비스종사자	10	5.6
전문가	2	1.1
사무종사자	10	5.6
관리자	33	18.3
기타	1	0.6
전체	180	100.0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노숙인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32.2%(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영업이 23.9%(43명), 정규직(상용직)이 22.2%(40명), 비정규직(계약직)이 19.4%(35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8〉 노숙 전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정규직(상용직)	40	22.2
비정규직(계약직)	35	19.4
일용직	58	32.2
자활/공공근로	2	1.1
자영업	43	23.9
무급가족종사자	1	0.6
기타	1	0.6
전체	180	100.0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노숙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는 51만 원~100만 원이 22.9%(41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만 원~150만 원 17.3%(31명), 151만 원~200만 원 16.2%(29명), 201만 원~250만 원 10.6%(19명) 등의 순이었다.

근로활동 경험이 있던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은 34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최소 5만 5천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범위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표 3-3-9〉 노숙 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50만 원 이하	17	9.5
51만 원 ~ 100만 원	41	22.9
101만 원 ~ 150만 원	31	17.3
151만 원 ~ 200만 원	29	16.2
201만 원 ~ 250만 원	19	10.6
251만 원 ~ 300만 원	6	3.4
301만 원 ~ 400만 원	13	7.3
401만 원 ~ 500만 원	6	3.4
501만 원 ~ 600만 원	1	0.6
601만 원 이상	16	8.9
전체	179	100.0

〈표 3-3-10〉 노숙 전 월평균 소득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중간값(중위소득)	최대값
179	3,422,206원(8,754,188)	55,000원	1,600,000원	100,000,000원

3) 노숙 전 건강상태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좋은 편이었다가 46.0%(9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이었다가 20.9%(44명), 나쁜 편이었다 14.2%(30명), 매우 좋았다가 12.8%(27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는 58.8%가 좋았다고 응답한 반면, 나빴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하였다.

〈표 3-3-11〉 노숙 전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n	%
매우 좋았다	27	12.8
좋은 편이었다	97	46.0
보통이었다	44	20.9
나쁜 편이었다	30	14.2
매우 나빴다	13	6.2
전체	211	100.0

4)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및 이용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를 살펴보면, 노숙인의 81.0%(171명)가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알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를 알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0%(40명)에 불과하였다.

〈표 3-3-12〉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알아보았다	40	19.0
알아보지 않았다	171	81.0
전체	211	100.0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은 노숙인의 84.8%(179명)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2%(32명)에 불과하였다.

〈표 3-3-13〉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32	15.2
없다	179	84.8
전체	211	100.0

노숙인이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이 48.6%(1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긴급지원이 24.3%(9명),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기타가 각각 10.8%(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14〉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기초생활보장	18	48.6
긴급지원	9	24.3
실업급여	2	5.4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4	10.8
기타	4	10.8
전체	37	100.0

5) 노숙 전 주거형태

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는 월세가 37.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가 34.1%(72명), 전세 14.2%(30명), 직장 내 숙소 7.6%(16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15〉 노숙 전 주거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자가	72	34.1
전세	30	14.2
월세	79	37.4
직장 내 숙소	16	7.6
기타	12	5.7
전체	209	100.0

2. 주거생활

1) 거주 경험

조사대상자의 취약거처에서의 거주 경험을 살펴보면 <표 3-3-16>과 같다. 노숙인의 취약거처에서 1개월 이상 거주 경험을 살펴보면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이 16.9%(111명)로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관, 여인숙, 모텔 등이 14.0%(92명), 거리노숙이 13.3%(87명), 일시보호시설이 10.8%(71명),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이 9.9%(65명)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취약거처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사우나(찜질방)가 6.1%(40명), 고시원이 5.3%(35명), 쪽방이 3.8%(25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37.6%가 노숙인복지시설에서의 거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중 대다수가 노숙인복지시설 이용자나 거주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3-16〉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거리노숙	87	13.3
일시보호시설	71	10.8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	111	16.9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	65	9.9
쪽방	25	3.8
여관, 여인숙, 모텔 등	92	14.0
비닐하우스	6	0.9
빈 집	5	0.8
종교단체(교회, 절 등)	14	2.1
고시원	35	5.3
사우나(찜질방)	40	6.1
만화방	7	1.1
다방	2	0.3
PC방	17	2.6
친인척 집	7	1.1
친구(지인) 집	16	2.4
국공립병원	2	0.3
아동·청소년시설	2	0.3
장애인시설	4	0.6
교정시설	24	3.7
요양원/요양병원	4	0.6
의료시설	16	2.4
기타	4	0.6
전체	656	100.0

[그림 3-3-6]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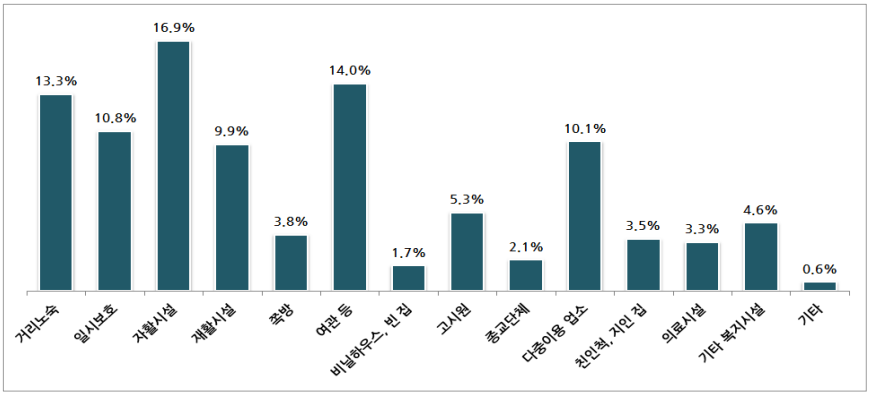

2) 범죄 피해 경험

조사대상자의 노숙생활 동안 범죄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표 3-3-17>과 같다. 노숙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동안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노숙하던 중에 여러 유형의 범죄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범죄 피해 경험은 언어폭력 및 모욕이 13.7%(29명)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명의도용 및 사기 10.4%(22명), 구타 6.6%(14명), 금품갈취 4.3%(9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17> 범죄 피해 경험(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구타	14 (6.6)	197 (93.4)	211 (100.0)
언어폭력, 모욕	29 (13.7)	182 (86.3)	211 (100.0)
성폭력 및 성희롱	0 (0.0)	211 (100.0)	211 (100.0)
금품갈취	9 (4.3)	202 (95.7)	211 (100.0)
명의도용, 사기	22 (10.4)	189 (89.6)	211 (100.0)
기타	4 (1.9)	207 (98.1)	211 (100.0)

3. 경제활동

1) 근로활동 실태

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43.6%(92명)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6.4%(119명)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18> 현재 근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92	43.6
안 한다	119	56.4
전체	211	100.0

현재 일을 하는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는 16일이었으며, 최소 2.5일에서 최대 30일 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9〉 월평균 근로일 수

단위 : 일

구분	평균 근로일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6.0	6.9	2.5	30.0

현재 일을 하는 노숙인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_건설이 41.3%(3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_제조가 29.3%(27명),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가 10.9%(10명),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와 서비스종사자가 각각 4.3%(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20〉 직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단순노무직_건설	38	41.3
단순노무직_운송	1	1.1
단순노무직_제조	27	29.3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4	4.3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1	1.1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10	10.9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2	2.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	3.3
판매종사자	1	1.1
서비스종사자	4	4.3
전문가	0	0.0
사무종사자	0	0.0
관리자	1	1.1
전체	92	100.0

[그림 3-3-7] 직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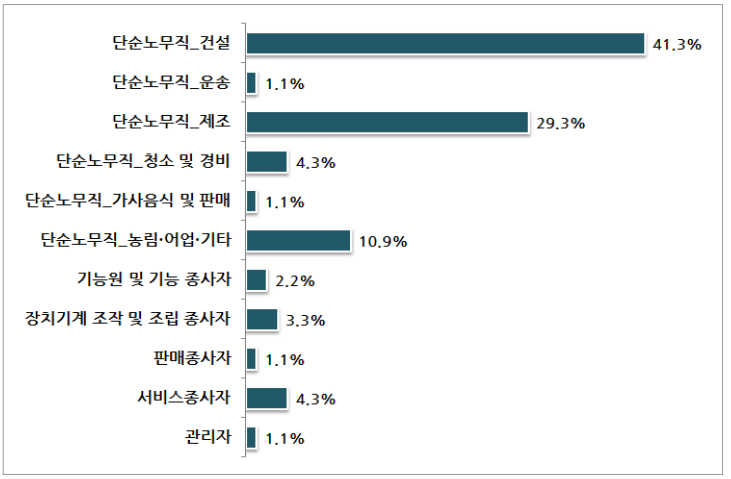

현재 일을 하는 노숙인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44.6%(4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활근로 30.4%(28명), 비정규직(계약직) 9.8%(9명), 공공근로 6.5%(6명), 정규직(상용직) 4.3%(4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직업 유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순노무직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 고용 형태에서도 대다수가 일용직과 정부와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활 및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표 3-3-21〉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정규직(상용직)	4	4.3
비정규직(계약직)	9	9.8
일용직	41	44.6
자활근로	28	30.4
공공근로	6	6.5
자영업	1	1.1
기타	3	3.3
전체	92	100.0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숙인의 근로활동 중 어려움을 살펴보면, '어려운 점이 없다'가 30.4%(2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18.5%(17명),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 17.4%(16명), '수입이 적다' 16.3%(15명),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7.6%(7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22〉 근로활동의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n	%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7	7.6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17	18.5
수입이 적다	15	16.3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다	4	4.3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	16	17.4
어려운 점이 없다	28	30.4
기타	5	5.4
전체	92	100.0

2) 구직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노숙인의 구직 여부를 살펴보면, 노숙인의 71.4%(85명)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숙인은 28.6%(34명)에 불과하였다.

〈표 3-3-23〉 구직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34	28.6
안 한다	85	71.4
전체	119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는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이 35.3%(1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관 17.6%(6명), 기타(인터넷, 직접 탐문) 14.7%(5명)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노숙인이 생활정보지나 신문, 방송 등의 매체에서 정보를 찾는 경우와 사회복지기관, 고용지원센터 등의 공공 안내소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4〉 구직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명, %

구분	n	%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	12	35.3
동료 및 지인	4	11.8
민간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4	11.8
사회복지기관	6	17.6
고용지원센터	3	8.8
기타	5	14.7
전체	34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노숙인에게 구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일정한 주소지 확보가 23.5%(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회복이 20.6%(7명),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와 취업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이 각각 17.6%(6명), 직업교육이 5.9%(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25〉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n	%
일정한 주소지 확보	8	23.5
직업교육	2	5.9
건강회복	7	20.6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6	17.6
취업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	6	17.6
주민등록 복원	1	2.9
기타	1	2.9
없음	3	8.8
전체	34	100.0

[그림 3-3-8]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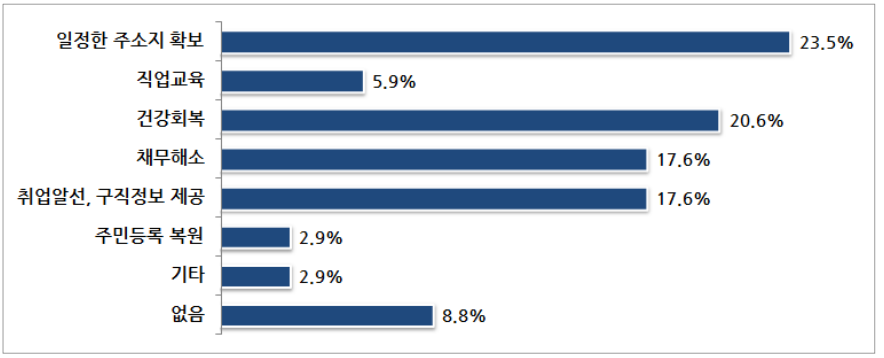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가 59.5%(5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가 16.7%(14명),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와 나와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각각 6.0%(5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와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조사대상자가 많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표 3-3-26〉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	5	6.0
나이가 많아서	14	16.7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50	59.5
나와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5	6.0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서	0	0.0
신분증이 없어서	2	2.4
일하고 싶지 않아서	4	4.8
기타	4	4.8
전체	84	100.0

[그림 3-3-9]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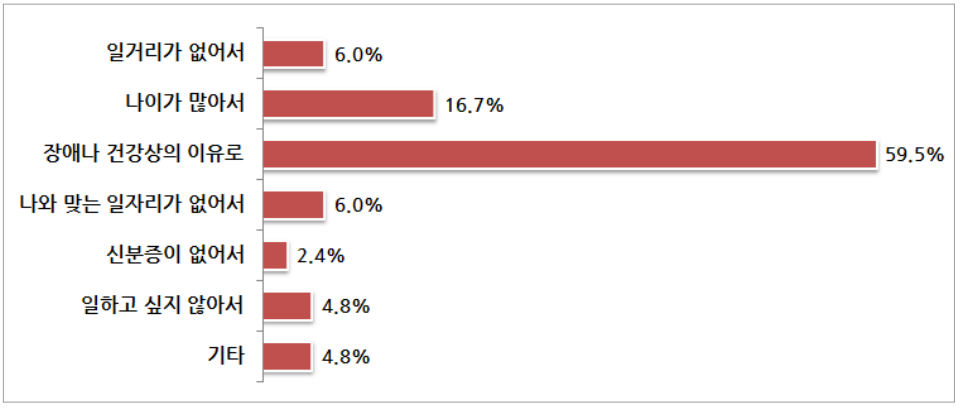

3) 소득

(1) 근로소득

노숙인의 근로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53.1%(111명)가 하계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9%(98명)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동계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응답은 42.1%(88명)이었으며, 소득이 없다는 응답은 57.9%(121명)로 나타났다. 하계에 근로소득이 있는 노숙인은 53.1%, 동계에 근로소득이 있는 노숙인은 42.1%로 노숙인의 근로소득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3-3-27〉 근로소득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하계	111 (53.1)	98 (46.9)
동계	88 (42.1)	121 (57.9)

[그림 3-3-10] 근로소득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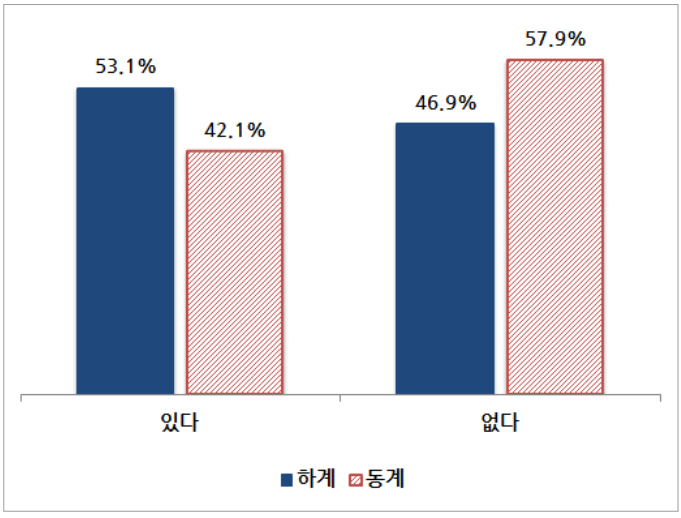

근로활동을 하는 노숙인의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은 79만 원이며, 최소 6만 5천 원에서 최대 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1만 원~40만 원이 28.8%(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만 원 이하와 81만 원~100만 원이 각각 13.5%(15명), 61만 원~80만 원이 9.9%(11명), 41만 원~60만 원이 9.0%(10명) 등의 순이었다.

근로활동을 하는 노숙인의 동계 월평균 근로소득은 67만 원이며, 최소 만 원에서 최대 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동계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1만 원~40만 원이 35.2%(3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81만 원~100만 원이 14.7%(13명), 20만 원 이하와 41만 원~60만 원, 61만 원~80만 원이 각각 11.4%(10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하계 소득이 동계보다 101만 원 이상의 소득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계소득은 40만 원 이하의 소득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28〉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하계		동계	
	n	%	n	%
20만 원 이하	15	13.5	10	11.4
21만 원 ~ 40만 원	32	28.8	31	35.2
41만 원 ~ 60만 원	10	9.0	10	11.4
61만 원 ~ 80만 원	11	9.9	10	11.4
81만 원 ~ 100만 원	15	13.5	13	14.7
101만 원 ~ 120만 원	2	1.8	2	2.3
121만 원 ~ 140만 원	5	4.5	3	3.4
141만 원 ~ 160만 원	7	6.3	3	3.4
161만 원 ~ 180만 원	7	6.3	3	3.4
181만 원 이상	7	6.3	3	3.4
전체	111	100.0	88	100.0

〈표 3-3-29〉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

구분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하계	111	793,121원(637,805)	65,000원	2,800,000원
동계	88	671,835원(535,291)	10,000원	2,800,000원

(2) 기타소득

노숙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기타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74.4%(157명)가 기타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6%(54명)에 불과하였다.

〈표 3-3-30〉 기타소득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54	25.6
없다	157	74.4
전체	211	100.0

노숙인의 평균 기타소득은 30만 원이며, 최소 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1만 원~20만 원이 31.5%(1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0만 원 이하가 27.8%(15명), 41만 원~50만 원이 14.8%(8명), 31만 원~40만 원이 13.0%(7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31〉 기타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15	27.8
11만 원 ~ 20만 원	17	31.5
21만 원 ~ 30만 원	2	3.7
31만 원 ~ 40만 원	7	13.0
41만 원 ~ 50만 원	8	14.8
51만 원 ~ 100만 원	1	1.9
101만 원 이상	4	7.4
전체	54	100.0

〈표 3-3-32〉 기타소득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54	302,130원(309,913)	10,000원	1,200,000원

(3) 주 수입원

노숙인의 주 수입원은 근로활동이 52.2%(8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19.3%(31명), 기초노령연금이 8.1%(13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6.8%(11명), 장애수당이 6.2%(10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수입원은 대부분 근로활동 및 자활사업 참여와 같은 근로소득이며, 재산소득은 전혀 없었다. 근로소득 이외의 항목 중에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적연금이다.

〈표 3-3-33〉 주 수입원

단위 : 명, %

구분	n	%
근로활동	84	52.2
자활사업 참여	31	19.3
종교·복지단체 지원	2	1.2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얻음	0	0.0
친구 및 친인척 도움	2	1.2
국민연금	5	3.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1	6.8
기초노령연금	13	8.1
장애수당	10	6.2
공공근로	1	0.6
실업급여	2	1.2
전체	161	100.0

4) 지출

노숙인의 지출유무를 살펴보면, 노숙인의 77.3%(163명)가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7%(48명)에 불과하였다.

〈표 3-3-34〉 지출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163	77.3
없다	48	22.7
전체	211	100.0

노숙인의 평균 지출금액은 30만 원이며, 최소 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가 29.6%(4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만 원~20만 원이 22.6%(36명), 21만 원~30만 원이 15.1%(24명), 31만 원~40만 원이 10.1%(16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86.2%가 50만 원 이하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5〉 지출 금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47	29.6
11만 원 ~ 20만 원	36	22.6
21만 원 ~ 30만 원	24	15.1
31만 원 ~ 40만 원	16	10.1
41만 원 ~ 50만 원	14	8.8
51만 원 ~ 60만 원	7	4.4
61만 원 ~ 70만 원	0	0.0
71만 원 ~ 100만 원	11	6.8
101만 원 이상	4	2.5
전체	159	100.0

〈표 3-3-36〉 지출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159	303,491원(310,455)	10,000원	2,000,000원

[그림 3-3-11] 지출 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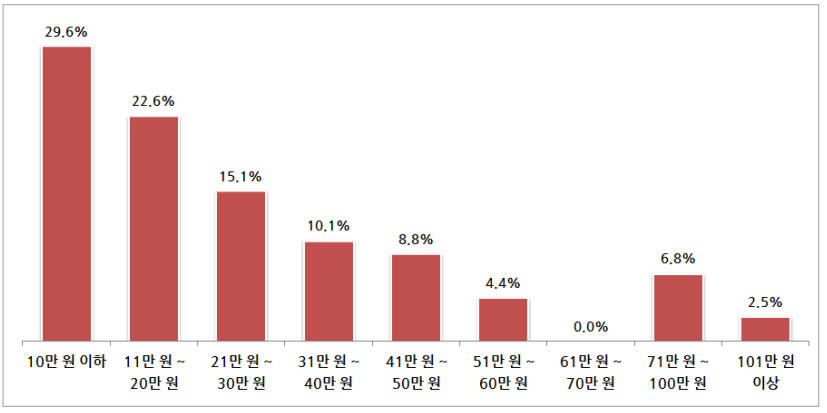

노숙인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로 전체 지출에서 27.0%(81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식비 23.0%(69명), 여가활동비 7.0%(21명), 교통비 6.7%(20명), 통신비와 피복비가 각각 5.3%(16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37〉 지출 항목(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담배	81	27.0
식비	69	23.0
여가활동비	21	7.0
교통비	20	6.7
통신비	16	5.3
피복비	16	5.3
숙박비	11	3.7
보건의료비	10	3.3
음주	9	3.0
주거비	9	3.0
생활용품구입비	9	3.0
저축	6	2.0
가족송금	6	2.0
부채상환	6	2.0
도박/오락	5	1.7
기타	6	2.0
전체	300	100.0

[그림 3-3-12] 지출 항목(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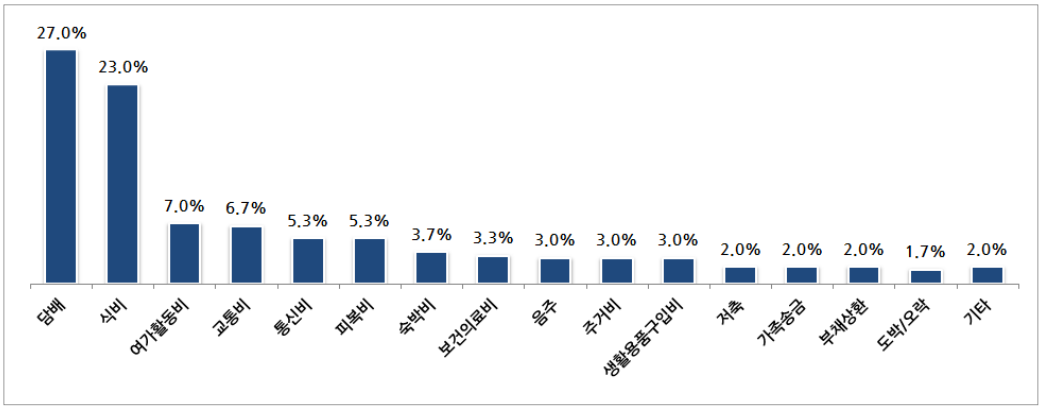

5) 부채

노숙인의 부채 유무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노숙인은 53.6%(113명), 부채가 없는 노숙인은 45.0%(95명)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노숙인이 1.4%(3명)로 조사되었다. 상당히 많은 노숙인이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38〉 부채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113	53.6
없다	95	45.0
모름	3	1.4
전체	211	100.0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이 25.7%(2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핸드폰 요금 미납, 자동차 할부, 카드빚 등) 17.7%(20명), 사기 15.9%(18명), 대출, 보증 11.5%(13명), 생활비 9.7%(11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39〉 부채 발생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생활비	11	9.7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	29	25.7
의료비	4	3.5
대출, 보증	13	11.5
도박, 유흥, 오락	9	8.0
주민등록 도용	8	7.1
사기	18	15.9
기타	20	17.7
원인 모름	1	0.9
전체	113	100.0

[그림 3-3-13] 부채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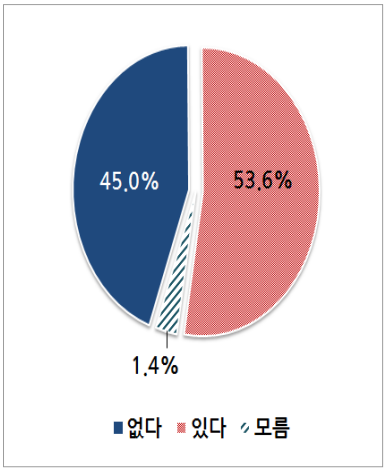

[그림 3-3-14] 부채 발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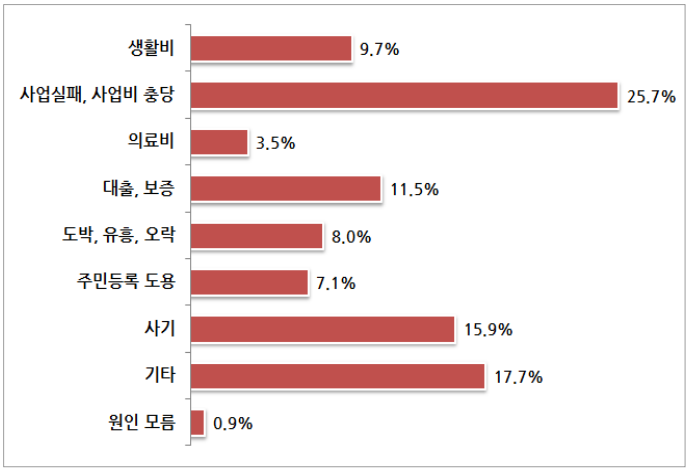

노숙인의 평균 부채액은 4,500만 원이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1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23.9%(2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19.5%(22명),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11.5%(13명), 100만 원 미만과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각각 10.6%(12명) 등의 순이었다. 비교적 고액인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도 8.9%(10명)로 나타났다.

〈표 3-3-40〉 부채 금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0만 원 미만	12	10.6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22	19.5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12	10.6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7	6.2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27	23.9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4	3.5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3	11.5
1억 원 이상	10	8.9
액수모름	6	5.3
전체	113	100.0

〈표 3-3-41〉 부채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113	45,600,234원(204,974,982)	30,000원	10,000,000원	2,100,000,000원

[그림 3-3-15] 부채 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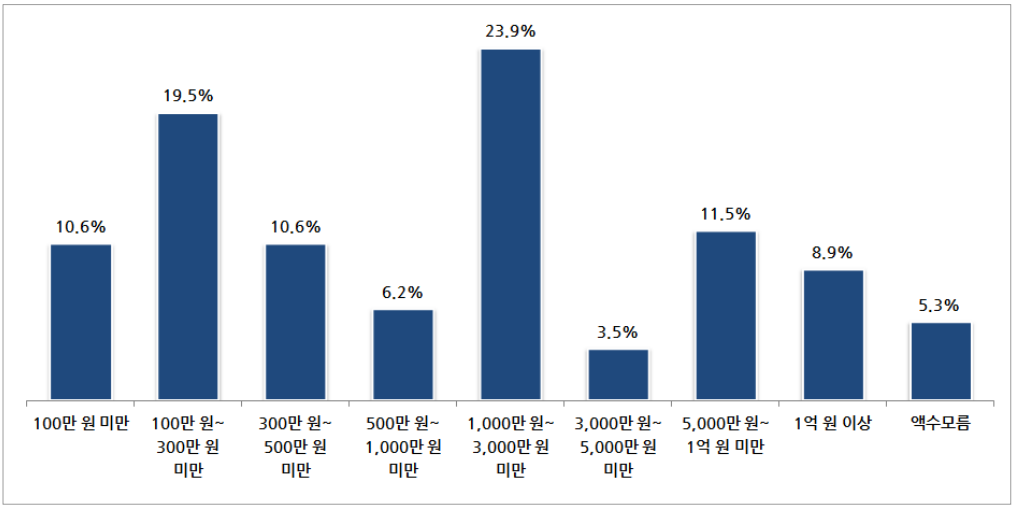

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를 살펴보면, 40.3%(85명)가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응답하였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는 응답이 56.9%(120명)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인지 모르는 노숙인이 2.8%(6명)로 조사되었다.

〈표 3-3-42〉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그렇다	85	40.3
아니다	120	56.9
모름	6	2.8
전체	211	100.0

6) 저축

노숙인의 저축 여부를 살펴보면, 75.8%(160명)가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축하고 있다는 응답은 24.2%(51명)에 불과하였다. 많은 노숙인이 저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3-43〉 저축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51	24.2
안 한다	160	75.8
전체	211	100.0

노숙인의 평균 저축 금액은 41만 원이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와 11만 원~20만 원이 각각 25.5%(1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만 원~30만 원이 21.6%(11명), 71만 원~100만 원이 11.7%(6명), 101만 원 이상이 7.8%(4명)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노숙인이 3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4〉 월평균 저축 금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13	25.5
11만 원 ~ 20만 원	13	25.5
21만 원 ~ 30만 원	11	21.6
31만 원 ~ 50만 원	3	5.9
51만 원 ~ 70만 원	1	2.0
71만 원 ~ 100만 원	6	11.7
101만 원 이상	4	7.8
전체	51	100.0

〈표 3-3-45〉 월평균 저축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51	413,333원(528,025)	20,000원	3,000,000원

노숙인이 저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76.1%(12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채 상환 중이어서 10.1%(16명), 필요성을 못 느껴서 7.5%(12명),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4.4%(7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46〉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돈이 없어서	121	76.1
필요성을 못 느껴서	12	7.5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7	4.4
부채 상환 중이어서	16	10.1
기타	3	1.9
전체	159	100.0

7) 노숙 전후 근로활동 비교

조사대상자의 노숙 전과 후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노숙 전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이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리자와 서비스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던 경향이 있다. 반면, 노숙 이후의 직업 유형은 38.4%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대다수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전반적으로 다른 직업군에서 일하는 비율이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숙 전후와 비교해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14.7%에서 56.4%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3-47〉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무직	31	14.7	119	56.4
단순노무직_건설	45	21.3	38	18.0
단순노무직_운송	8	3.8	1	0.5
단순노무직_제조	21	10.0	27	12.8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5	2.4	4	1.9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5	2.4	1	0.5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13	6.2	10	4.7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9	4.3	2	0.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	7.1	3	1.4
판매종사자	3	1.4	1	0.5
서비스종사자	10	4.7	4	1.9
전문가	2	0.9	0	0.0
사무종사자	10	4.7	0	0.0
관리자	33	15.6	1	0.5
기타	1	0.5	0	0.0
전체	211	100.0	211	100.0

[그림 3-3-16]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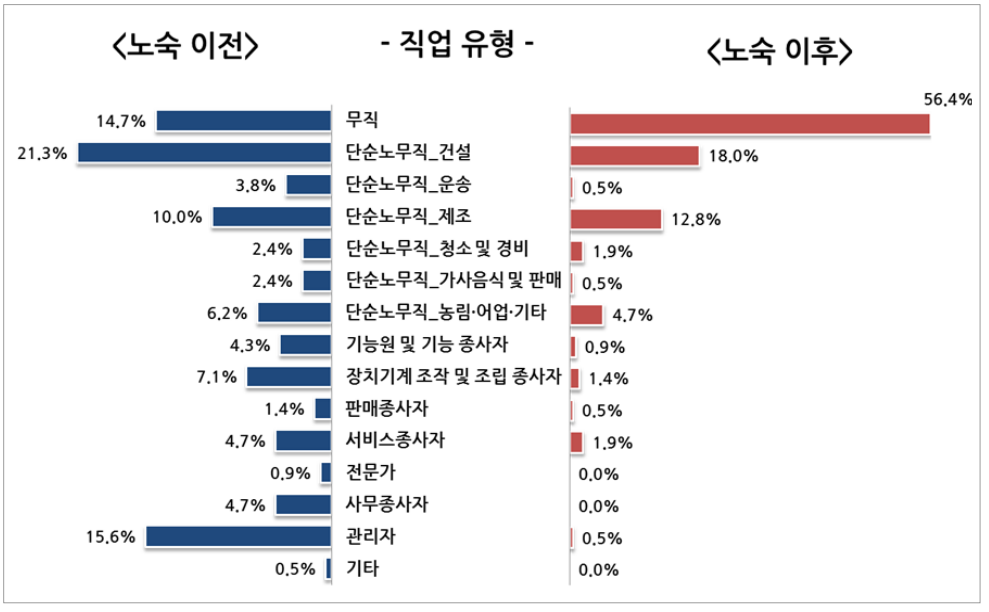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일용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영업과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 노숙 후에는 대다수가 일용직과 자활/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48〉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정규직(상용직)	40	22.3	4	4.3
비정규직(계약직)	35	19.6	9	9.8
일용직	58	32.4	41	44.6
자활/공공근로	2	1.1	28	30.4
자영업	43	24.0	6	6.5
무급가족종사자	1	0.6	1	1.1
기타	1	0.6	3	3.3
전체	179	100.0	92	100.0

[그림 3-3-17]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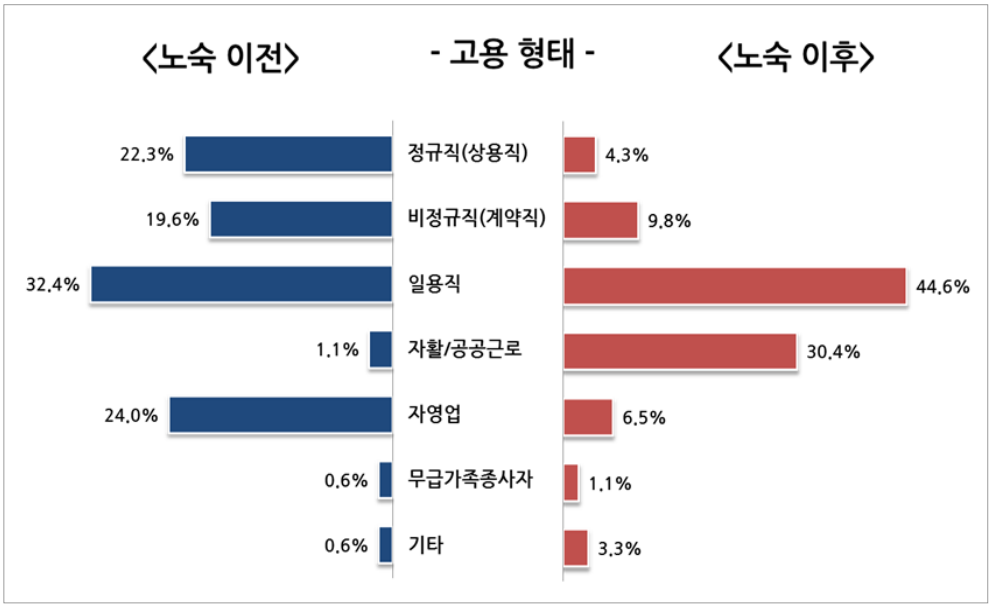

4. 건강 및 의료

1) 건강과 질병 대처방법

(1) 건강상태

노숙인이 인식하는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32.2%(6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좋다 30.3%(64명), 보통이다 27.5%(58명), 매우 나쁘다 8.1%(17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은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49〉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n	%
매우 좋다	4	1.9
좋다	64	30.3
보통이다	58	27.5
나쁘다	68	32.2
매우 나쁘다	17	8.1
전체	211	100.0

[그림 3-3-18]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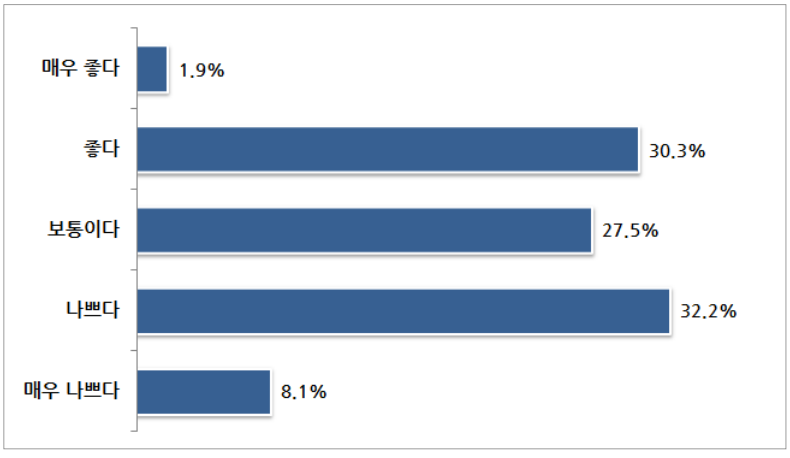

노숙인의 장애 유무는 장애가 없다는 응답이 83.9%(177명),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16.1%(34명)였다. 한편, 장애가 있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명 중 9명으로 나타났다.

〈표 3-3-50〉 장애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비장애	177	83.9
장애	34	16.1
전체	211	100.0

노숙인의 장애유형은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4.0%(11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신장애 32.0%(8명), 지적장애 12.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51〉 장애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지체장애	11	44.0
시각장애	1	4.0
청각장애	1	4.0
지적장애	3	12.0
정신장애	8	32.0
언어장애	1	4.0
합계	25	100.0

(2) 질병 및 치료 여부

노숙인의 질병 유무와 치료 여부를 살펴보면 <표 3-3-52>와 같다. 노숙인의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20.3%(43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순환계(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가 16.1%(34명), 내분비계(당뇨, 갑상선 관련 질환 등)가 14.7%(31명), 소화계(위염, 위궤양, 위암, 간염, 간경화 등)와 정신질환이 각각 12.8%(27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질병 치료 여부를 살펴보면, 질병이 있는 노숙인은 근골격계(46.5%), 알코올중독(50.0%)을 제외하고는 60% 이상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순환계(100.0%), 신경계(100.0%), 내분비계(93.5%), 정신질환(81.5%)은 80.0%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보인다.

〈표 3-3-52〉 질병과 치료 여부(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질병 유무		치료 여부	
	있다	없다	예	아니오
근골격계 질환	43 (20.3)	168 (79.7)	20 (46.5)	23 (53.5)
소화계(위염, 위궤양, 위암, 간염, 간경화 등)	27 (12.8)	184 (87.2)	20 (74.1)	7 (25.9)
순환계(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34 (16.1)	177 (83.9)	34 (100.0)	0 (0.0)
내분비계(당뇨, 갑상선 관련 질환 등)	31 (14.7)	180 (85.3)	29 (93.5)	2 (6.5)
호흡계(감염성 질환, 기도 관련 질환 등)	13 (6.2)	198 (93.8)	9 (69.2)	4 (30.8)
피부질환	5 (2.4)	206 (97.6)	3 (60.0)	2 (40.0)
신경계(간질, 치매, 척수질환 등)	1 (0.5)	210 (99.5)	1 (100.0)	0 (0.0)
안/치과/귀 질환	15 (7.1)	196 (92.9)	10 (66.7)	5 (33.3)
정신질환	27 (12.8)	184 (87.2)	22 (81.5)	5 (18.5)
알코올중독	18 (8.5)	193 (91.5)	9 (50.0)	9 (50.0)
뇌질환	7 (3.3)	204 (96.7)	6 (85.7)	1 (14.3)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주로 대처하는 방법은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가 42.9%(9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가 23.3%(49명),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가 20.5%(43명), 개인적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가 13.3%(28명)의 순이었다.

〈표 3-3-53〉 질병 대처방법

단위 : 명, %

구분	n	%
개인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음	28	13.3
무료진료소 이용	43	20.5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음	90	42.9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음	49	23.3
전체	210	100.0

(3) 치료 경험

최근 1년간 아픈 곳이 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노숙인의 22.7%(48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비 부담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83.3%(40명)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와 기타가 각각 6.3%(3명), 건강보험이 체납돼서가 4.2%(2명)의 순이었다.

<표 3-3-54>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48	22.7
없다	163	77.3
전체	211	100.0

<표 3-3-55>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병원비가 부담돼서	40	83.3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3	6.3
건강보험이 체납돼서	2	4.2
기타	3	6.3
전체	48	100.0

2) 우울

노숙인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 <표 3-3-56>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을 최대 6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평균은 17.4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47.8%(98명)가 정상(16점 미만)에 해당하며, 경도(16점~24점) 26.8%(55명), 우울(25점 이상) 25.4%(52명) 순이었다.

〈표 3-3-56〉 우울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6점 미만 (정상)	98	47.8	17.4점 (11.3)
16점 ~ 24점 (경도)	55	26.8	
25점 이상 (우울)	52	25.4	
전체	205	100.0	

[그림 3-3-19]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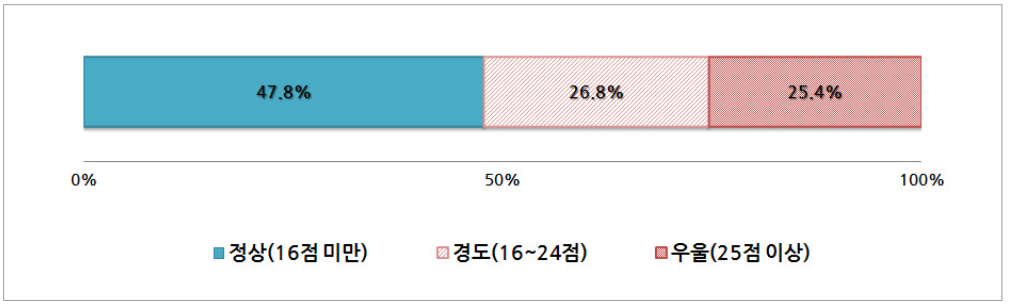

3) 음주

(1) 음주 경험

노숙인의 음주 경험을 살펴본 결과, 45.0%(95명)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가 28.4%(60명),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가 26.5%(56명) 순이었다. 많은 사람이 노숙인은 알코올 중독이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술을 마시지 않는 노숙인의 비율이 5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3-57〉 음주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95	45.0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	56	26.5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60	28.4
전체	211	100.0

[그림 3-3-20] 음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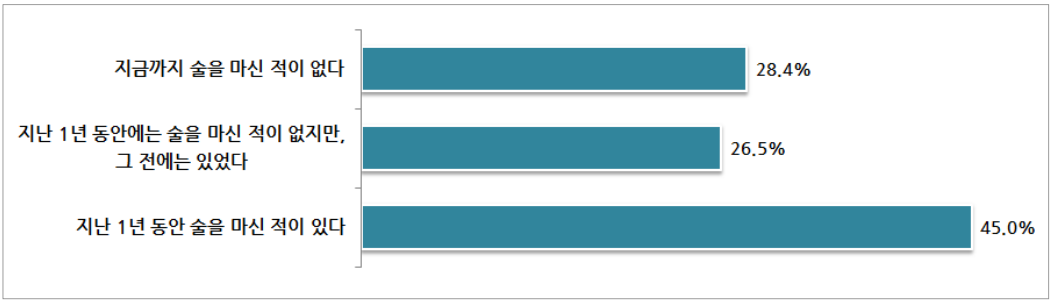

(2) 음주 성향

음주 경험이 있는 노숙인 151명의 음주 성향을 조사한 결과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2.0%(78명)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5.3%(38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술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8.7%(58명)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술 마신 다음 날 숙취증상을 없애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1.3%(47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3-3-58〉 음주 성향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78 (52.0)	72 (48.0)	150 (100.0)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38 (25.3)	112 (74.7)	150 (100.0)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58 (38.7)	92 (61.3)	150 (100.0)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숙취증상을 없애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47 (31.3)	103 (68.7)	150 (100.0)

[그림 3-3-21] 음주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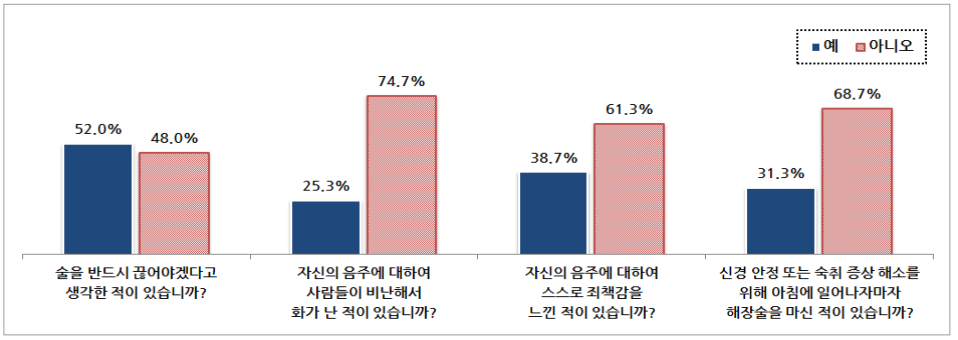

총 4개의 문항에 대해 2개 이상이 해당할 경우(2점 이상) 문제성 음주군으로 분류한다. '예'로 응답한 문항이 2개 이상이면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으로, 3개 이상이면 음주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알코올 의존'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음주경험이 있는 노숙인 중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이 19.3%(29명), 음주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의존이 23.3%(35명)로, 조사대상자 중 42.6%가 문제성 음주군에 해당하였다.

〈표 3-3-59〉 알코올 의존 정도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0점	45	30.0	
1점	41	27.3	
2점	29	19.3	1.47점(1.33)
3점	18	12.0	
4점	17	11.3	
전체	150	100.0	

[그림 3-3-22] 알코올 의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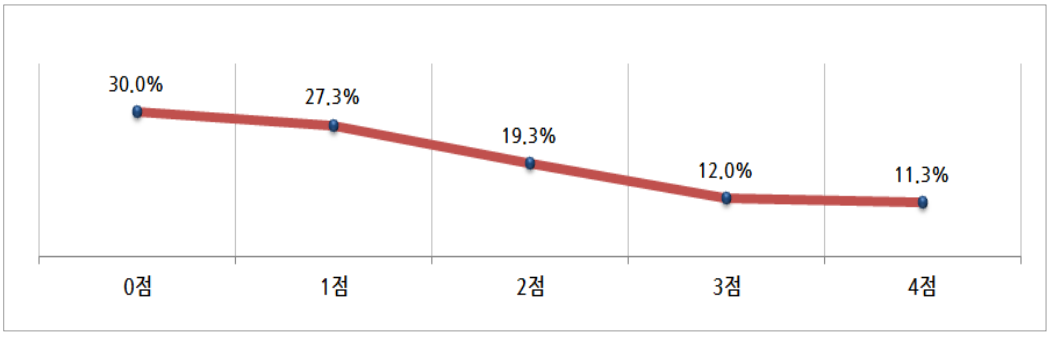

4)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조사대상자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58.8%가 건강이 좋다고 응답했지만, 노숙 후에는 32.2%가 좋다고 하였다. 노숙 전과 후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때, 좋다는 응답이 26.6%p 감소하여 노숙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표 3-3-60〉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매우 좋음	27	12.8	4	1.9
좋음	97	46.0	64	30.3
보통	44	20.9	58	27.5
나쁨	30	14.2	68	32.2
매우 나쁨	13	6.2	17	8.1
전체	211	100.0	211	100.0

[그림 3-3-23]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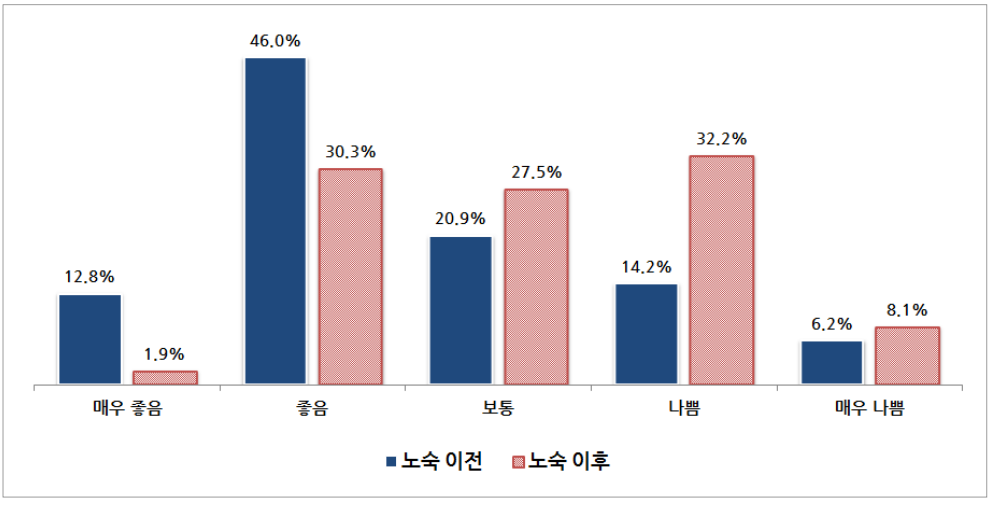

5.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1) 자립시도

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를 살펴본 결과, 63.5%(134명)가 노숙 또는 시설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6.5%(77명)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3-3-61〉 자립시도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134	63.5
안 한다	77	36.5
전체	211	100.0

거리노숙 또는 시설을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1.5%(5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20.1%(55명), '자활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여 중 또는 예정이다' 11.7%(32명), '신용회복 및 저축을 하고 있다' 10.9%(30명), '병을 치료하고 있다' 10.2%(28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자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11명)로 나타났다.

〈표 3-3-62〉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일을 하고 있다	59	21.5
노숙인시설이나 노숙인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	20	7.3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	17	6.2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55	20.1
병을 치료하고 있다(음주 치료 포함)	28	10.2
신용회복 및 저축을 하고 있다	30	10.9
앞으로 생활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	17	6.2
자활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여 중 또는 예정이다	32	11.7
기타	5	1.8
구체적인 활동 없음	11	4.0
전체	274	100.0

[그림 3-3-24] 자립시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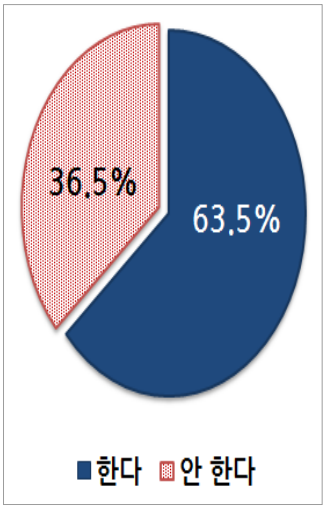

[그림 3-3-25]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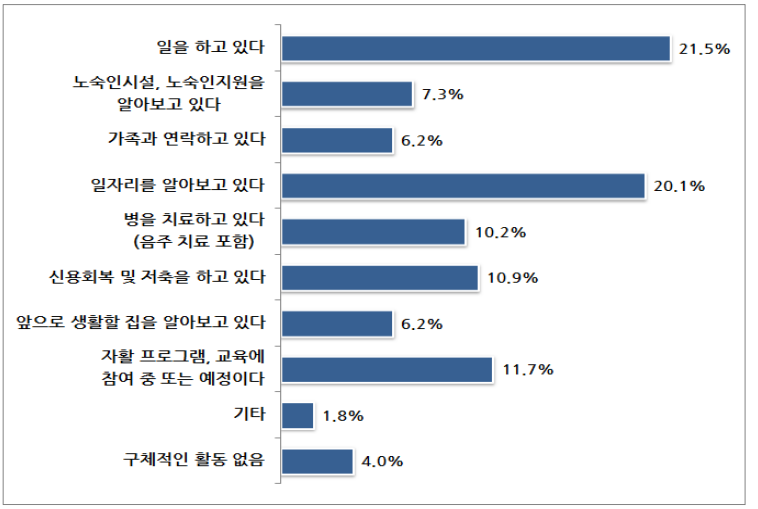

2) 근로활동능력

조사대상자의 근로활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력, 만성적 증상, 자신감, 집중력, 자기통제 5개 항목을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활동능력 중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인 체력을 살펴보면,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가 32.7%(6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26.1%(55명),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22.3%(47명), '육체노동은 어렵다' 14.7%(31명), '육체노동은 불가능하다' 4.3%(9명) 순이었다. 노숙인의 체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점으로 나타났다.

〈표 3-3-63〉 근로활동능력 - 체력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55	26.1	2.6점 (1.1)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69	32.7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47	22.3	
육체노동은 어렵다	31	14.7	
육체노동은 불가능하다	9	4.3	
전체	211	100.0	

[그림 3-3-26] 근로활동능력 - 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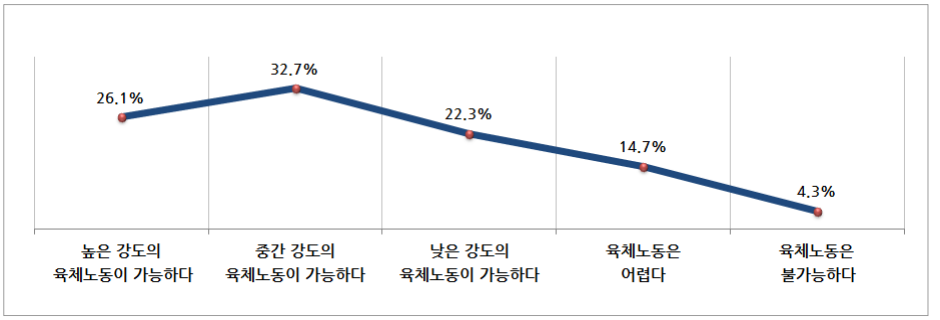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인 만성적 증상은 조사대상자의 44.5%(94명)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22.3%(47명),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4.7%(31명)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11.4%(24명),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7.1%(15명) 순이었다. 노숙인의 만성적 증상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점으로 나타났다.

〈표 3-3-64〉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94	44.5	2.6점 (1.5)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24	11.4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47	22.3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15	7.1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31	14.7	
전체	211	100.0	

[그림 3-3-27]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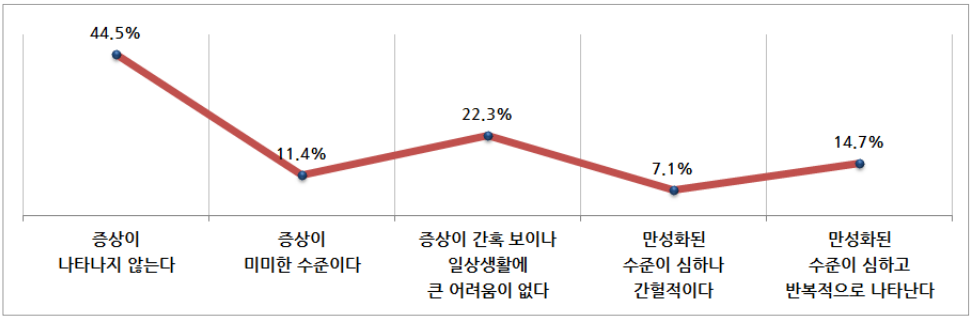

노숙인의 자신감은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가 45.5%(9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한다' 29.9%(63명),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16.1%(34명), '작심삼일이다' 5.2%(11명), '자포자기한다' 3.3%(7명) 순이었다. 노숙인의 자신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1점으로 나타났다.

〈표 3-3-65〉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	96	45.5	3.1점 (1.1)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한다	63	29.9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34	16.1	
작심삼일이다	11	5.2	
자포자기한다	7	3.3	
전체	211	100.0	

[그림 3-3-28]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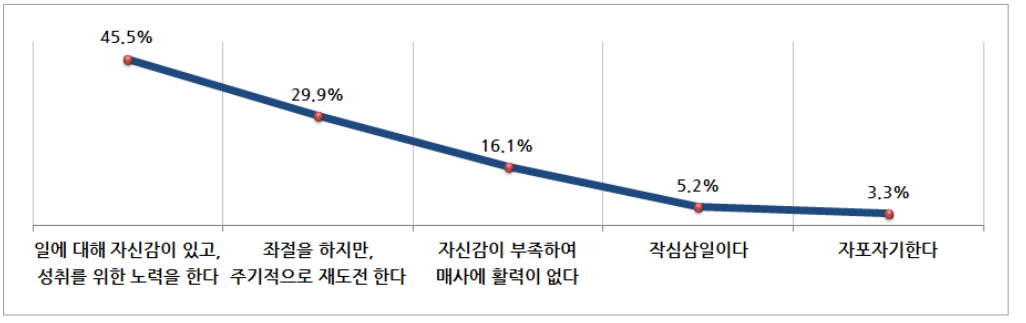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집중력은 조사대상자의 46.4%(98명)가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가 31.3%(66명),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9.0%(19명),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8.5%(18명),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본 것이 거의 없다' 4.7%(10명) 순이었다. 노숙인의 집중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1점으로 나타났다.

〈표 3-3-66〉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	98	46.4	3.1점 (1.2)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	66	31.3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18	8.5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19	9.0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 본 것이 거의 없다	10	4.7	
전체	211	100.0	

[그림 3-3-29]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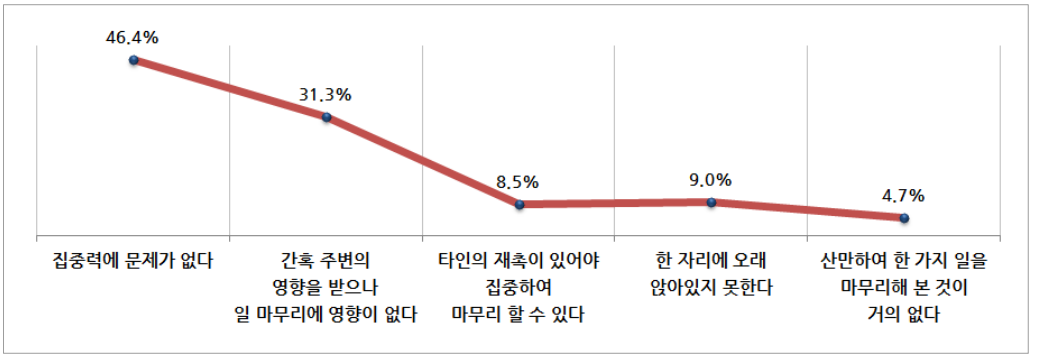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통제는 조사대상자의 41.2%(87명)가 자기통제가 '잘 되는 편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2.7%(48명), '잘 된다' 20.9%(44명), '안 되는 편이다' 14.7%(31명), '안 된다' 0.5%(1명) 순이었다. 노숙인의 62.1%가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15.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노숙인의 자기통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7점으로 나타났다.

〈표 3-3-67〉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잘 된다	44	20.9	2.7점 (1.0)
잘 되는 편이다	87	41.2	
보통이다	48	22.7	
안 되는 편이다	31	14.7	
안 된다	1	0.5	
전체	211	100.0	

[그림 3-3-30]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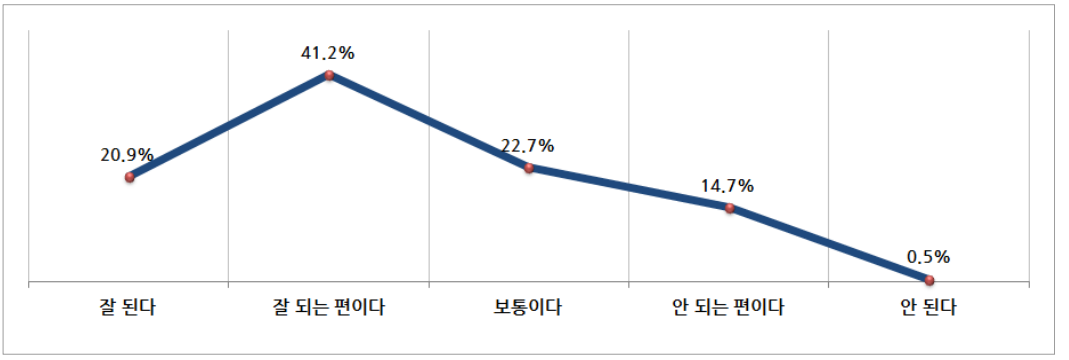

3) 자립준비

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3-3-68>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노숙을 탈피하거나 시설을 퇴소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를 측정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가 86.3%(18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리정돈 또는 주변정리를 잘 했다'가 83.9%(177명),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했다'가 각각 82.9%(175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난 6개월 사이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12.8%), '지난 6개월 사이 한 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25.6%), '저축을 하고 있다'(26.1%), '현재 일을 하고 있다'(43.6%)는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는 경제적 자립과 자립경험 차원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8〉 자립준비 여부

단위 : 명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경제적 자립준비 수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92 (43.6)	119 (56.4)	211 (100.0)
	저축을 하고 있다	55 (26.1)	156 (73.9)	211 (100.0)
	현재 내 통장이 있다	143 (67.8)	68 (32.2)	211 (100.0)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꾸준히 일했다	103 (48.8)	108 (51.2)	211 (100.0)
일상생활 유지능력	지난 한 달 동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잘 참았다	162 (76.8)	49 (23.2)	211 (100.0)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	175 (82.9)	36 (17.1)	211 (100.0)
	지난 한달 동안 현재 이용(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리정돈을 잘 했다	177 (83.9)	34 (16.1)	211 (100.0)
	지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 했다	175 (82.9)	36 (17.1)	211 (100.0)
관계유지 능력	지난 한 달 동안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했다	159 (75.4)	52 (24.6)	211 (100.0)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다	166 (78.7)	45 (21.3)	211 (100.0)
	지난 한 달 동안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	182 (86.3)	29 (13.7)	211 (100.0)
자립경험	지난 6개월 사이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	27 (12.8)	184 (87.2)	211 (100.0)
	지난 6개월 사이 한 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	54 (25.6)	157 (74.4)	211 (100.0)

조사대상자의 자립준비도를 13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자립준비도 평균은 7.9점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도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 일상생활유지능력 평균이 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관계유지능력 2.4점, 경제적 자립준비수준 1.9점, 자립경험 0.4점 순이었다. 자립준비도 하위요인들 중에서 자립경험 차원의 수준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9〉 자립준비도

단위 :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자립준비수준	1.9	1.33
일상생활유지능력	3.3	1.07
관계유지능력	2.4	0.80
자립경험	0.4	0.62
자립준비도	7.9	2.52

[그림 3-3-31] 자립준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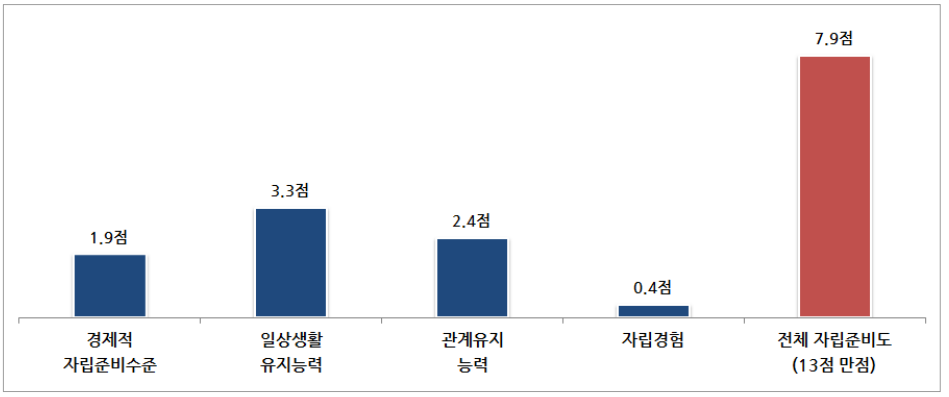

4) 자립을 위한 지원 욕구

노숙인이 주택을 구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76.7%(161명)가 초기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 71.0%(149명),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 70.5%(148명),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69.5%(146명) 등의 순이었다.

〈표 3-3-70〉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제도, 시장 상황, 지원 서비스 등)	149 (71.0)	61 (29.0)	210 (100.0)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거처 찾기, 계약 등에 대한 지원)	146 (69.5)	64 (30.5)	210 (100.0)
초기 정착 지원(가구/집기 구비, 지원 서비스 연결)	161 (76.7)	49 (23.3)	210 (100.0)
주거 유지를 위해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 (알코올중독, 정신건강 등)	129 (61.4)	81 (38.6)	210 (100.0)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정기적 연락)	148 (70.5)	62 (29.5)	210 (100.0)

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표 3-3-71>과 같다. 노숙인의 자립 및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가 23.4%(148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주거지원이 21.3%(135점), 의료지원이 19.6%(124점), 고용지원이 12.8%(81점)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으로 나타났다.

〈표 3-3-71〉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총점[1]	순위
	n	%	n	%		
소득보조	55	26.1	38	18.0	148(23.4)	1
의료지원	48	22.7	28	13.3	124(19.6)	3
고용지원	27	12.8	27	12.8	81(12.8)	4
주거지원	41	19.4	53	25.1	135(21.3)	2
심리지원	4	1.9	7	3.3	15(2.4)	9
채무상담지원	8	3.8	9	4.3	25(3.9)	7
문화활동지원	2	0.9	8	3.8	12(1.9)	10
교육	6	2.8	7	3.3	19(3.0)	8
노숙인시설 내 독립공간 마련	10	4.7	6	2.8	26(4.1)	6
필요한 지원 없음	10	4.7	28	13.3	48(7.6)	5
전체	211	100.0	211	100.0	633(100.0)	-

[그림 3-3-32]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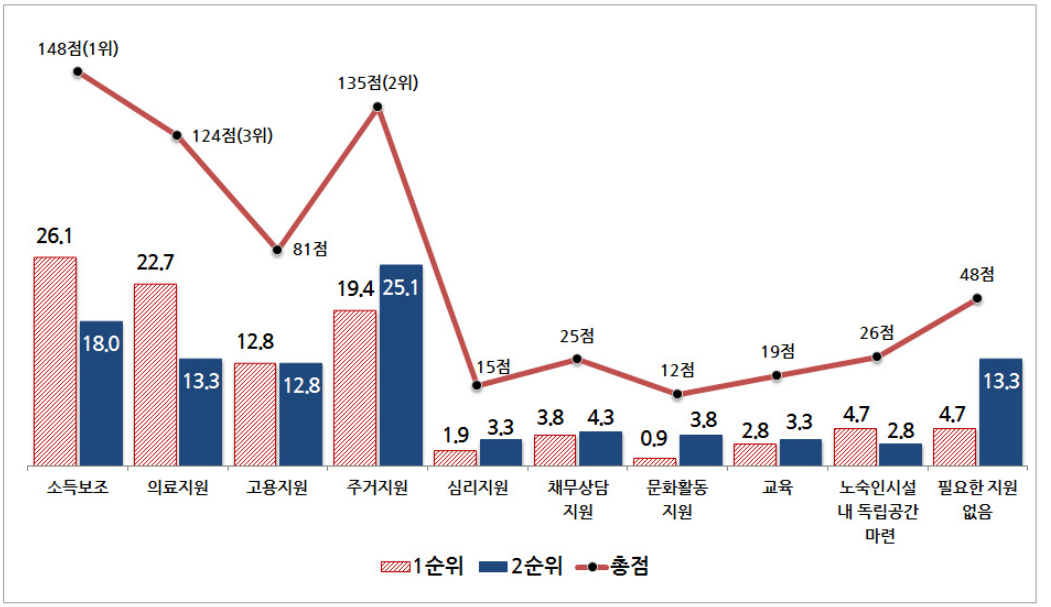

1) 총점 = (1순위 빈도 × 2점) + (2순위 빈도 × 1점)

제4절 거리노숙인

1.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상황

1) 노숙생활 시작

조사대상자의 노숙 원인을 살펴보면 <표 3-4-1>과 같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생활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실직 및 사업실패가 28.4%(1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혼 및 가족해체가 17.9%(12명), 주거지 상실 13.4%(9명), 가족관계의 어려움 10.4%(7명), 부채 및 신용불량과 질환 및 장애가 각각 9.0%(6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1〉 거리노숙인의 노숙 원인(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실직 및 사업실패	19	28.4
이혼 및 가족해체	12	17.9
부채 및 신용불량	6	9.0
게임 및 도박중독	3	4.5
질환 및 장애	6	9.0
주거지 상실	9	13.4
수급중지	1	1.5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3	4.5
가족관계의 어려움	7	10.4
기타	1	1.5
전체	67	100.0

거리노숙인이 처음으로 노숙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에 노숙을 시작한 거리노숙인이 42.6%(2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6년~2010년이 25.9%(14명), 2001년~2005년 13.0%(7명), 1991년~1995년 7.4%(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2〉 거리노숙인의 노숙 시작 시기

단위 : 명, %

구분	n	%
1969년 ~ 1980년	0	0.0
1981년 ~ 1990년	2	3.7
1991년 ~ 1995년	4	7.4
1996년 ~ 2000년	3	5.6
2001년 ~ 2005년	7	13.0
2006년 ~ 2010년	14	25.9
2011년 ~ 2015년	23	42.6
2016년 ~	1	1.9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이 거리에서 노숙을 한 기간은 6년~10년이 25.9%(1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년~5년 24.1%(13명), 1년~2년 18.5%(10명), 11년~15년 13.0%(7명), 21년~25년 7.4%(4명)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평균 노숙기간은 8.6년으로 나타났다.

〈표 3-4-3〉 거리노숙인의 노숙 기간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년 미만	1	1.9	8.6년(7.4)
1년 ~ 2년	10	18.5	
3년 ~ 5년	13	24.1	
6년 ~ 10년	14	25.9	
11년 ~ 15년	7	13.0	
16년 ~ 20년	3	5.6	
21년 ~ 25년	4	7.4	
26년 ~ 30년	2	3.7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이 처음 노숙을 시작한 연령은 40대가 42.6%(2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2.2%(12명), 50대가 11.1%(6명), 20대와 60대가 각각 9.3%(5명)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평균 노숙 시작 연령은 41.8세로 나타났다.

<표 3-4-4> 거리노숙인의 노숙 시작 연령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0대	3	5.6	41.8세(11.8)
20대	5	9.3	
30대	12	22.2	
40대	23	42.6	
50대	6	11.1	
60대	5	9.3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시작한 지역을 살펴보면 <표 3-4-5>와 같다. 거리노숙인의 27.8%(15명)가 대전에서 처음 노숙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경기가 16.7%(9명), 서울과 충남이 각각 13.0%(7명), 전북과 경북이 각각 5.6%(3명), 충북, 대구, 인천이 각각 3.7%(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5〉 거리노숙인의 노숙 시작 지역

단위 : 명, %

구분	n	%
대전	15	27.8
서울	7	13.0
충남	7	13.0
경기	9	16.7
충북	2	3.7
대구	2	3.7
부산	0	0.0
전북	3	5.6
경남	1	1.9
경북	3	5.6
인천	2	3.7
전남	0	0.0
울산	0	0.0
강원	1	1.9
광주	1	1.9
제주	1	1.9
전체	54	100.0

2) 노숙 전 경제활동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85.2%(46명)가 근로활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8%(8명)에 불과하였다.

〈표 3-4-6〉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근로활동을 했다	46	85.2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다	8	14.8
전체	54	100.0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거리노숙인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건설이 37.0%(1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_제조,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가 각각 10.9%(5명), 관리자가 8.7%(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7〉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직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단순노무직_건설	17	37.0
단순노무직_운송	1	2.2
단순노무직_제조	5	10.9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3	6.5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0	0.0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5	10.9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1	2.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3	6.5
판매종사자	2	4.3
서비스종사자	3	6.5
전문가	0	0.0
사무종사자	1	2.2
관리자	4	8.7
기타	1	2.2
전체	46	100.0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거리노숙인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47.8%(2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규직(상용직)이 17.4%(8명), 비정규직(계약직)과 자영업이 각각 15.2%(7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8〉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정규직(상용직)	8	17.4
비정규직(계약직)	7	15.2
일용직	22	47.8
자활/공공근로	0	0.0
자영업	7	15.2
무급가족종사자	1	2.2
기타	1	2.2
전체	46	100.0

근로활동 경험이 있던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은 186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50만 원으로 소득범위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는 51만 원~100만 원이 26.1%(12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만 원~150만 원이 19.6%(9명), 50만 원 이하와 201만 원~250만 원이 각각 15.2%(7명), 151만 원~200만 원과 301만 원~400만 원이 각각 6.5%(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9〉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50만 원 이하	7	15.2
51만 원 ~ 100만 원	12	26.1
101만 원 ~ 150만 원	9	19.6
151만 원 ~ 200만 원	3	6.5
201만 원 ~ 250만 원	7	15.2
251만 원 ~ 300만 원	2	4.3
301만 원 ~ 400만 원	3	6.5
401만 원 ~ 500만 원	2	4.3
501만 원 ~ 600만 원	0	0.0
601만 원 이상	1	2.2
전체	46	100.0

〈표 3-4-10〉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중간값(중위소득)	최대값
46	1,866,847원(1,978,397)	100,000원	1,300,000원	12,500,000원

3) 노숙 전 건강상태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좋은 편이었다가 44.4%(2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이었다가 22.2%(12명), 매우 좋았다 13.0%(7명), 나쁜 편이었다 11.1%(6명)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는 57.4%가 건강이 좋았다고 응답한 반면, 나빴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하였다.

〈표 3-4-11〉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n	%
매우 좋았다	7	13.0
좋은 편이었다	24	44.4
보통이었다	12	22.2
나쁜 편이었다	6	11.1
매우 나빴다	5	9.3
전체	54	100.0

4)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및 이용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77.8%(42명)가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알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를 알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2.2%(12명)에 불과하였다.

〈표 3-4-12〉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알아보았다	12	22.2
알아보지 않았다	42	77.8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은 거리노숙인 83.3%(45명)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7%(9명)에 불과하였다.

〈표 3-4-13〉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9	16.7
없다	45	83.3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이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이 각각 50.0%(5명)로 나타났다.

〈표 3-4-14〉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기초생활보장	5	50.0
긴급지원	5	50.0
실업급여	0	0.0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0	0.0
기타	0	0.0
전체	10	100.0

5) 노숙 전 주거형태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는 월세가 45.3%(2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가 30.2%(16명), 전세 9.4%(5명), 직장 내 숙소 7.5%(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15〉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자가	16	30.2
전세	5	9.4
월세	24	45.3
직장 내 숙소	4	7.5
기타	4	7.5
전체	53	100.0

2. 거리노숙인의 주거생활

1) 거주 경험

거리노숙인의 취약거처에서의 거주 경험을 살펴보면 <표 3-4-16>과 같다. 거리노숙인의 취약거처에서의 1개월 이상 거주 경험을 살펴보면 여관, 여인숙, 모텔 등이 19.3%(36명)로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리노숙이 18.7%(35명), 일시보호시설이 17.1%(32명), 사우나(찜질방)가 9.1%(17명),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 쪽방, 고시원이 각각 5.9%(11명)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취약거처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종교단체(교회, 절 등)가 3.2%(6명), PC방이 2.7%(5명), 교정시설이 2.1%(4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3-4-16〉 거리노숙인의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거리노숙	35	18.7
일시보호시설	32	17.1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	11	5.9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	1	0.5
쪽방	11	5.9
여관, 여인숙, 모텔 등	36	19.3
비닐하우스	3	1.6
빈 집	2	1.1
종교단체(교회, 절 등)	6	3.2
고시원	11	5.9
사우나(찜질방)	17	9.1
만화방	2	1.1
다방	1	0.5
PC방	5	2.7
친인척 집	2	1.1
친구(지인) 집	2	1.1
국공립병원	1	0.5
아동·청소년시설	1	0.5
장애인시설	2	1.1
교정시설	4	2.1
요양원/요양병원	1	0.5
의료시설	0	0.0
기타	1	0.5
전체	187	100.0

2) 거리노숙 및 일시보호시설 이용 시작 시기와 기간

(1) 거리노숙 시작 시기와 기간

처음으로 거리노숙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이 41.7%(2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6년~2010년 27.1%(13명), 2001년~2005년 10.4%(5명), 2016년 이후 8.3%(4명) 등의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로 거리노숙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거리생활자는 2011년~2015년이 43.5%(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06년~2010년 26.1%(6명), 2001년~2005년 13.0%(3명) 등의 순이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역시 2011년~2015년이 40.0%(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2010년 28.0%(7명), 2016년 이후 12.0%(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17〉 거리노숙 시작 시기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생활자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n	%	n	%	n	%
1986년 ~ 1990년	1	2.1	0	0.0	1	4.0
1991년 ~ 1995년	3	6.3	1	4.3	2	8.0
1996년 ~ 2000년	2	4.2	2	8.7	0	0.0
2001년 ~ 2005년	5	10.4	3	13.0	2	8.0
2006년 ~ 2010년	13	27.1	6	26.1	7	28.0
2011년 ~ 2015년	20	41.7	10	43.5	10	40.0
2016년 이후	4	8.3	1	4.3	3	12.0
전체	48	100.0	23	100.0	25	100.0

조사대상자가 거리노숙을 한 기간은 6년~10년이 27.1%(1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이하와 2년~5년이 각각 25.0%(12명), 11년~15년 10.4%(5명) 등의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생활자는 2년~5년과 6년~10년이 각각 26.1%(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하가 21.7%(5명), 11년~15년이 13.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는 1년 이하와 6년~10년이 각각 28.0%(7명)로 가장 많았으며, 2년~5년 24.0%(6명), 11년~15년과 21년~25년이 각각 8.0%(2명)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거리노숙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8년이었으며, 평균 거리노숙 기간은 7.4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3-4-18〉 거리노숙 기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생활자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n	%	n	%	n	%
1년 이하	12	25.0	5	21.7	7	28.0
2년 ~ 5년	12	25.0	6	26.1	6	24.0
6년 ~ 10년	13	27.1	6	26.1	7	28.0
11년 ~ 15년	5	10.4	3	13.0	2	8.0
16년 ~ 20년	2	4.2	2	8.7	0	0.0
21년 ~ 25년	3	6.3	1	4.3	2	8.0
26년 ~ 30년	1	2.1	0	0.0	1	4.0
전체	48	100.0	23	100.0	25	100.0

〈표 3-4-19〉 거리노숙 기간

구분	평균 기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7.4년	7.1년	3개월	28년

(2) 일시보호시설 이용 시작 시기와 기간

거리노숙인이 처음으로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이 60.5%(2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6년 이후가 18.4%(7명), 2006년~2010년이 13.2%(5명) 등의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로 일시보호시설 이용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거리생활자는 2011년~2015년이 62.5%(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16년 이후 25.0%(2명), 1996년~2000년 12.5%(1명) 순이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역시 2011년~2015년이 60.0%(1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2010년과 2016년 이후가 각각 16.7%(5명), 1991년~1995년과 2001년~2005년이 각각 3.3%(1명) 순이었다.

〈표 3-4-20〉 일시보호시설 이용 시작 시기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생활자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n	%	n	%	n	%
1991년 ~ 1995년	1	2.6	0	0.0	1	3.3
1996년 ~ 2000년	1	2.6	1	12.5	0	0.0
2001년 ~ 2005년	1	2.6	0	0.0	1	3.3
2006년 ~ 2010년	5	13.2	0	0.0	5	16.7
2011년 ~ 2015년	23	60.5	5	62.5	18	60.0
2016년 이후	7	18.4	2	25.0	5	16.7
전체	38	100.0	8	100.0	30	100.0

조사대상자가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 기간은 1년 이하가 42.1%(1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년~5년이 36.8%(14명), 6년~10년이 13.2%(5명) 등의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생활자는 1년 이하가 50.0%(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년~5년 37.5%(3명), 16년~20년 12.5%(1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도 1년 이하가 40.0%(12명)로 가장 많았으며 2년~5년 36.7%(11명), 6년~10년 16.7%(5명)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시보호시설 이용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2년이었으며, 평균 일시보호시설 이용 기간은 3.8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3-4-21〉 일시보호시설 이용 기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생활자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n	%	n	%	n	%
1년 이하	16	42.1	4	50.0	12	40.0
2년 ~ 5년	14	36.8	3	37.5	11	36.7
6년 ~ 10년	5	13.2	0	0.0	5	16.7
11년 ~ 15년	1	2.6	0	0.0	1	3.3
16년 ~ 20년	1	2.6	1	12.5	0	0.0
21년 ~ 25년	1	2.6	0	0.0	1	3.3
전체	38	100.0	8	100.0	30	100.0

〈표 3-4-22〉 일시보호시설 이용 기간

구분	평균 기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3.8년	4.9년	1개월	22년

3) 거주지 선택

거리노숙인의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가 52.8%(2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조용하기 때문에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가 각각 9.4%(5명), 주변에 동료 및 지인들이 있어서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가 각각 7.5%(4명) 등의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생활자는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와 조용하기 때문에가 각각 22.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가 18.2% (4명) 등의 순이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는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가 74.2%(23명)로 가장 많았고, 주변에 동료 및 지인들이 있어서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가 각각 6.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23〉 거리노숙인의 현재 거주지 선택 이유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생활자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n	%	n	%	n	%
주변에 동료 및 지인들이 있어서	4	7.5	2	9.1	2	6.5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4	7.5	2	9.1	2	6.5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28	52.8	5	22.7	23	74.2
조용하기 때문에	5	9.4	5	22.7	0	0.0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	5	9.4	4	18.2	1	3.2
시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3	5.7	2	9.1	1	3.2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0	0.0	0	0.0	0	0.0
기타	4	7.5	2	9.1	2	6.5
전체	53	100.0	22	100.0	31	100.0

[그림 3-4-1] 거리노숙인의 현재 거주지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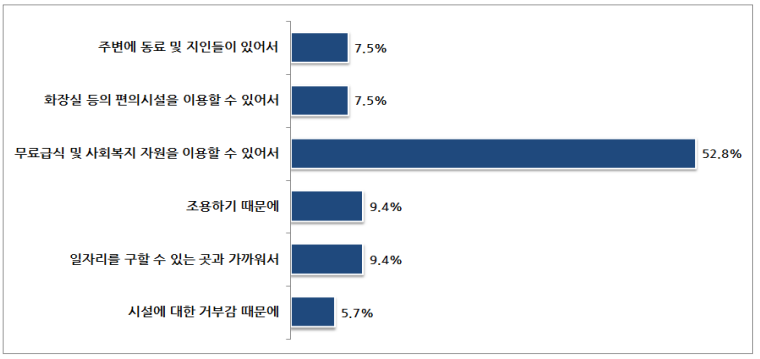

거리노숙인의 현재 거주지와 관련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이 41.3%(1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30.4%(14명),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15.2%(7명) 등의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생활자는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이 45.0%(9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30.0%(6명),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15.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역시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이 38.5%(10명)로 가장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 30.8%(8명),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15.4%(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24〉 거리노숙인의 현재 거주지 관련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생활자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n	%	n	%	n	%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	19	41.3	9	45.0	10	38.5
폭력으로부터의 위험	0	0.0	0	0.0	0	0.0
구직 활동	1	2.2	0	0.0	1	3.8
경제적인 어려움	14	30.4	6	30.0	8	30.8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7	15.2	3	15.0	4	15.4
기타	5	10.9	2	10.0	3	11.5
전체	46	100.0	20	100.0	26	100.0

4) 노숙인·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거리노숙인이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34.9%(22명)가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20.6%(13명),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때문에 7.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생활자는 잘 몰라서가 38.5%(10명)로 가장 많았고,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23.1%(6명), 기타 15.4%(4명) 등의 순이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도 잘 몰라서가 32.4%(1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18.9%(7명), 종교행사를 지나치게 강요해서와 주변의 시선이 싫어서가 각각 10.8%(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의 존재, 즉 시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시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설 입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거리노숙인 중에는 일시보호시설조차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며, 정보를 제공해도 시설을 경험하지 않아 시설 입소나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제공해도 사회복지사가 전해주는 정보보다는 노숙인 동료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듣고 오해를 하여 시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표 3-4-25〉 거리노숙인의 노숙인·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생활자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n	%	n	%	n	%
잘 몰라서	22	34.9	10	38.5	12	32.4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13	20.6	6	23.1	7	18.9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때문에	5	7.9	2	7.7	3	8.1
지원서비스가 부족해서	2	3.2	1	3.8	1	2.7
시설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2	3.2	2	7.7	0	0.0
재미가 없어서	1	1.6	0	0.0	1	2.7
입소불가 또는 이용정지로	1	1.6	0	0.0	1	2.7
종교행사를 지나치게 강요해서	5	7.9	1	3.8	4	10.8
주변의 시선이 싫어서	4	6.3	0	0.0	4	10.8
기타	8	12.7	4	15.4	4	10.8
전체	63	100.0	26	100.0	37	100.0

[그림 3-4-2] 거리노숙인의 노숙인·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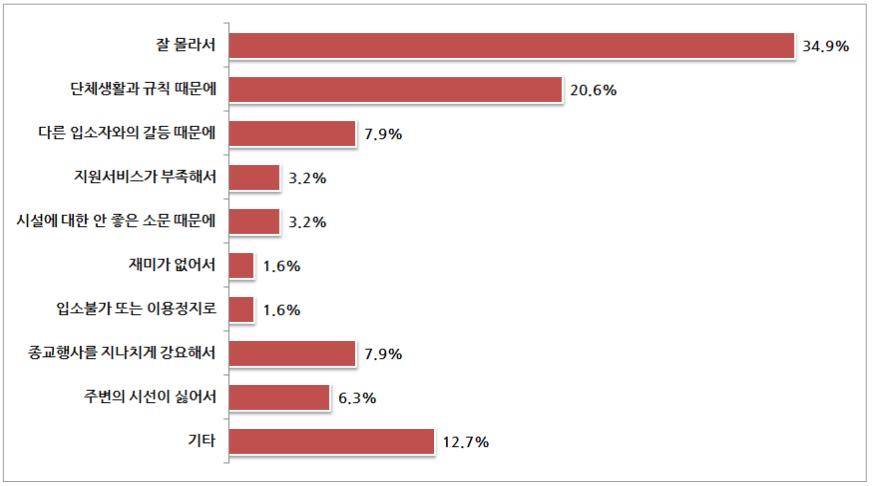

5)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거리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료급식이 25.4%(49명)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편의시설 이용 19.7%(38명), 생필품 지원 17.6%(34명), 의료서비스(무료진료) 15.5%(30명), 임시주거지원 11.9%(23명) 등의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생활자는 무료급식이 31.3%(21명)로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서비스(무료진료)와 생필품지원이 각각 17.9%(12명), 편의시설 이용이 14.9%(10명) 등의 순이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는 무료급식과 편의시설 이용이 각각 22.2%(2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필품지원이 17.5%(22명), 의료서비스(무료진료)가 14.3%(18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26〉 거리노숙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거리생활자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n	%	n	%	n	%
임시주거지원	23	11.9	8	11.9	15	11.9
일자리지원	6	3.1	1	1.5	5	4.0
무료급식	49	25.4	21	31.3	28	22.2
의료서비스(무료진료)	30	15.5	12	17.9	18	14.3
편의시설 이용	38	19.7	10	14.9	28	22.2
재활/자활프로그램	12	6.2	2	3.0	10	7.9
생필품지원	34	17.6	12	17.9	22	17.5
기타	1	0.5	1	1.5	0	0.0
전체	193	100.0	67	100.0	126	100.0

3. 거리노숙인의 경제활동

1) 근로활동 실태

거리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33.3%(18명)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6.7%(36명)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27〉 거리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18	33.3
안 한다	36	66.7
전체	54	100.0

현재 일을 하는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는 14.6일이었으며, 최소 3일에서 최대 30일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8〉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

단위 : 일

구분	평균 근로일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4.6	6.9	3.0	30.0

현재 일을 하는 거리노숙인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_건설이 66.7%(1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가 16.7%(3명), 단순노무직_제조,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서비스종사자가 각각 5.6%(1명)의 순이었다.

〈표 3-4-29〉 거리노숙인의 직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단순노무직_건설	12	66.7
단순노무직_운송	0	0.0
단순노무직_제조	1	5.6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0	0.0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0	0.0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3	16.7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1	5.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	0.0
판매종사자	0	0.0
서비스종사자	1	5.6
전문가	0	0.0
사무종사자	0	0.0
관리자	0	0.0
전체	18	100.0

현재 일을 하는 거리노숙인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77.8%(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계약직), 공공근로, 자영업이 각각 5.6%(1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30〉 거리노숙인의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정규직(상용직)	0	0.0
비정규직(계약직)	1	5.6
일용직	14	77.8
자활근로	0	0.0
공공근로	1	5.6
자영업	1	5.6
기타	1	5.6
전체	18	100.0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 중 어려움을 살펴보면,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와 '어려운 점이 없다'가 각각 27.8%(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22.2%(4명), '수입이 적다' 11.1%(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31〉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의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n	%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1	5.6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4	22.2
수입이 적다	2	11.1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다	1	5.6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	5	27.8
어려운 점이 없다	5	27.8
기타	18	100.0

2) 구직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의 구직 여부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80.6%(29명)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숙인은 19.4%(7명)에 불과하였다.

〈표 3-4-32〉 거리노숙인의 구직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7	19.4
안 한다	29	80.6
전체	36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는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이 57.1%(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료 및 지인 28.6%(2명), 민간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14.3%(1명)의 순이었다.

〈표 3-4-33〉 거리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명, %

구분	n	%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	4	57.1
동료 및 지인	2	28.6
민간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1	14.3
사회복지기관	0	0.0
고용지원센터	0	0.0
기타	0	0.0
전체	7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에게 구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일정한 주소지 확보가 42.9%(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회복이 28.6%(2명), 취업 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과 주민등록 복원이 각각 14.3%(1명)의 순이었다.

〈표 3-4-34〉 거리노숙인의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n	%
일정한 주소지 확보	3	42.9
직업교육	0	0.0
건강회복	2	28.6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0	0.0
취업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	1	14.3
주민등록 복원	1	14.3
전체	7	100.0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가 71.4%(2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와 신분증이 없어서가 각각 7.1%(2명), 나와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와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각각 3.6%(1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35〉 거리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	0	0.0
나이가 많아서	2	7.1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20	71.4
나와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1	3.6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서	0	0.0
신분증이 없어서	2	7.1
일하고 싶지 않아서	1	3.6
기타	2	7.1
전체	28	100.0

3) 소득

(1) 근로소득

거리노숙인의 근로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47.2%(25명)가 하계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2.8%(28명)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동계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응답은 39.6%(21명)이었으며, 소득이 없다는 응답은 60.4%(32명)로 나타났다.

〈표 3-4-36〉 거리노숙인의 근로소득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하계	25 (47.2)	28 (52.8)
동계	21 (39.6)	32 (60.4)

근로활동을 하는 거리노숙인의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은 96만 원이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0만 원 이하와 61만 원~80만원, 81만 원~100만 원이 각각 16.0%(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1만 원~60만 원이 12.0%(3명), 121만 원~140만 원, 141만 원~160만 원, 161만 원~180만 원, 180만 원 이상이 각각 8.0%(2명) 등의 순이었다.

근로활동을 하는 거리노숙인의 동계 월평균 근로소득은 76만 원이며, 최소 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동계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61만 원~80만 원이 23.8%(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만 원 이하가 19.0%(4명), 41만 원~60만 원과 81만 원~100만 원이 각각 14.3%(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37〉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하계		동계	
	n	%	n	%
20만 원 이하	4	16.0	4	19.0
21만 원 ~ 40만 원	1	4.0	2	9.5
41만 원 ~ 60만 원	3	12.0	3	14.3
61만 원 ~ 80만 원	4	16.0	5	23.8
81만 원 ~ 100만 원	4	16.0	3	14.3
101만 원 ~ 120만 원	1	4.0	1	4.8
121만 원 ~ 140만 원	2	8.0	1	4.8
141만 원 ~ 160만 원	2	8.0	1	4.8
161만 원 ~ 180만 원	2	8.0	1	4.8
181만 원 이상	2	8.0	0	0.0
전체	25	100.0	21	100.0

〈표 3-4-38〉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

구분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하계	25	960,000원(632,290)	100,000원	2,500,000원
동계	21	764,285원(548,858)	10,000원	2,000,000원

(2) 기타소득

거리노숙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기타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77.8%(42명)가 기타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12명)에 불과하였다.

〈표 3-4-39〉 거리노숙인의 기타소득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12	22.2
없다	42	77.8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의 평균 기타소득은 52만 원이며, 최소 33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31만 원~40만 원과 41만 원~50만 원이 각각 41.7%(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1만 원~100만 원과 101만 원 이상이 각각 8.3%(1명)의 순이었다.

〈표 3-4-40〉 거리노숙인의 기타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0	0.0
11만 원 ~ 20만 원	0	0.0
21만 원 ~ 30만 원	0	0.0
31만 원 ~ 40만 원	5	41.7
41만 원 ~ 50만 원	5	41.7
51만 원 ~ 100만 원	1	8.3
101만 원 이상	1	8.3
전체	12	100.0

〈표 3-4-41〉 거리노숙인의 기타소득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12	528,750원(270,522)	330,000원	1,200,000원

(3) 주 수입원

거리노숙인의 주 수입원은 근로활동이 69.2%(2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23.1%(9명), 종교·복지단체 지원이 5.1%(2명), 친구 및 친인척 도움이 2.6%(1명)의 순이었다.

〈표 3-4-42〉 거리노숙인의 주 수입원

단위 : 명, %

구분	n	%
근로활동	27	69.2
자활사업 참여	0	0.0
종교·복지단체 지원	2	5.1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얻음	0	0.0
친구 및 친인척 도움	1	2.6
국민연금	0	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9	23.1
기초노령연금	0	0.0
장애수당	0	0.0
공공근로	0	0.0
실업급여	0	0.0
전체	39	100.0

4) 지출

거리노숙인의 지출 유무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77.8%(42명)가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12명)로 나타났다.

〈표 3-4-43〉 거리노숙인의 지출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42	77.8
없다	12	22.2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의 평균 지출금액은 41만 원이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가 26.8%(1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만 원~20만 원, 21만 원~30만 원, 71만 원~100만 원이 각각 14.6%(6명), 41만 원~50만 원이 12.2%(5명)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78.0%가 50만 원 이하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4〉 거리노숙인의 지출 금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11	26.8
11만 원 ~ 20만 원	6	14.6
21만 원 ~ 30만 원	6	14.6
31만 원 ~ 40만 원	4	9.8
41만 원 ~ 50만 원	5	12.2
51만 원 ~ 60만 원	1	2.4
61만 원 ~ 70만 원	0	0.0
71만 원 ~ 100만 원	6	14.6
101만 원 이상	2	4.9
전체	41	100.0

〈표 3-4-45〉 거리노숙인의 지출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41	416,707원(423,203)	30,000원	2,000,000원

거리노숙인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로 전체 지출에서 28.2%(22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담배 15.4%(12명), 숙박비와 주거비 각각 10.3%(8명), 교통비와 피복비, 보건의료비, 음주 6.4%(5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46〉 거리노숙인의 지출 항목(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담배	12	15.4
식비	22	28.2
여가활동비	0	0.0
교통비	5	6.4
통신비	3	3.8
피복비	5	6.4
숙박비	8	10.3
보건의료비	5	6.4
음주	5	6.4
주거비	8	10.3
생활용품구입비	2	2.6
저축	0	0.0
가족송금	0	0.0
부채상환	0	0.0
도박/오락	3	3.8
기타	0	0.0
전체	78	100.0

5) 부채

거리노숙인의 부채 유무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거리노숙인은 51.9%(28명), 부채가 없는 거리노숙인은 42.6%(23명)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리노숙인이 5.6%(3명)로 조사되었다.

〈표 3-4-47〉 거리노숙인의 부채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28	51.9
없다	23	42.6
모름	3	5.6
전체	54	100.0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기가 28.6%(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핸드폰 요금 미납, 자동차 할부, 카드빚 등) 17.9%(5명), 생활비와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과 도박, 유흥, 오락이 각각 14.3%(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48〉 거리노숙인의 부채 발생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생활비	4	14.3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	4	14.3
의료비	0	0.0
대출, 보증	1	3.6
도박, 유흥, 오락	4	14.3
주민등록 도용	2	7.1
사기	8	28.6
기타	5	17.9
원인 모름	0	0.0
전체	28	100.0

거리노숙인의 평균 부채액은 1,442만 원이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39.3%(1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과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각각 17.9%(5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채 금액을 모른다고 응답한 거리노숙인이 7.1%(2명)로 조사되었다.

〈표 3-4-49〉 거리노숙인의 부채 금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0만 원 미만	2	7.1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5	17.9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5	17.9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1	3.6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11	39.3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0	0.0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	3.6
1억 원 이상	1	3.6
액수모름	2	7.1
전체	28	100.0

〈표 3-4-50〉 거리노숙인의 부채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28	14,424,231원(24,692,004)	30,000원	7,750,000원	100,000,000원

거리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를 살펴보면, 40.7%(22명)가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응답하였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는 응답이 51.9%(28명)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인지 모르는 거리노숙인이 7.4%(4명)로 조사되었다.

〈표 3-4-51〉 거리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그렇다	22	40.7
아니다	28	51.9
모름	4	7.4
전체	54	100.0

6) 저축

거리노숙인의 저축 여부를 살펴보면, 88.9%(48명)가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축하고 있다는 응답은 11.1%(6명)에 불과하였다.

〈표 3-4-52〉 거리노숙인의 저축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6	11.1
안 한다	48	88.9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의 평균 저축액은 32만 원이며,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11만 원~20만 원이 50.0%(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만 원~30만 원, 31만 원~50만 원, 51만 원~70만 원이 각각 16.7%(1명)의 순이었다.

〈표 3-4-53〉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0	0.0
11만 원 ~ 20만 원	3	50.0
21만 원 ~ 30만 원	1	16.7
31만 원 ~ 50만 원	1	16.7
51만 원 ~ 70만 원	1	16.7
71만 원 ~ 100만 원	0	0.0
101만 원 이상	0	0.0
전체	6	100.0

〈표 3-4-54〉 거리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6	325,000원(183,712)	150,000원	600,000원

거리노숙인이 저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78.7%(3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10.6%(5명), 부채 상환 중이어서 6.4%(3명),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4.3%(2명)의 순이었다.

〈표 3-4-55〉 거리노숙인의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돈이 없어서	37	78.7
필요성을 못 느껴서	5	10.6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2	4.3
부채 상환 중이어서	3	6.4
기타	0	0.0
전체	47	100.0

7) 노숙 전후 근로활동 비교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과 후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건설이 31.5%(1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_제조와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가 각각 9.3%(5명),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서비스종사가 각각 5.6%(3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숙 이후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건설이 22.2%(1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5.6%(3명), 단순노무직_제조,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서비스종사자가 각각 1.9%(1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노숙 전후와 비교해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14.8%에서 66.7%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4-56〉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무직	8	14.8	36	66.7
단순노무직_건설	17	31.5	12	22.2
단순노무직_운송	1	1.9	0	0.0
단순노무직_제조	5	9.3	1	1.9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3	5.6	0	0.0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0	0.0	0	0.0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5	9.3	3	5.6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1	1.9	1	1.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	5.6	0	0.0
판매종사자	2	3.7	0	0.0
서비스종사자	3	5.6	1	1.9
전문가	0	0.0	0	0.0
사무종사자	1	1.9	0	0.0
관리자	4	7.4	0	0.0
기타	1	1.9	0	0.0
전체	54	100.0	54	100.0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일용직이 47.8%(2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상용직) 17.4%(8명), 비정규직(계약직)과 자영업 15.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숙 후에는 일용직이 77.8%(14명)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계약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5.6%(1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57〉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정규직(상용직)	8	17.4	0	0.0
비정규직(계약직)	7	15.2	1	5.6
일용직	22	47.8	14	77.8
자활/공공근로	0	0.0	0	0.0
자영업	7	15.2	1	5.6
무급가족종사자	1	2.2	1	5.6
기타	1	2.2	1	5.6
전체	45	100.0	18	100.0

4. 거리노숙인의 건강 및 의료

1) 건강과 질병 대처방법

(1) 건강상태

거리노숙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33.3%(1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29.6%(16명), 좋다 24.1%(13명), 매우 나쁘다 9.3%(5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58〉 거리노숙인의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n	%
매우 좋다	2	3.7
좋다	13	24.1
보통이다	16	29.6
나쁘다	18	33.3
매우 나쁘다	5	9.3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의 장애 유무는 장애가 없다는 응답이 90.7%(49명),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9.3%(5명)였다. 한편, 장애가 있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표 3-3-59〉 거리노숙인의 장애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비장애	49	90.7
장애	5	9.3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의 장애유형은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0.0%(2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각각 25.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60〉 거리노숙인의 장애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지체장애	2	50.0
시각장애	0	0.0
청각장애	0	0.0
지적장애	1	25.0
정신장애	0	0.0
언어장애	1	25.0
합계	4	100.0

(2) 질병 및 치료 여부

거리노숙인의 질병 유무와 치료 여부를 살펴보면 <표 3-4-61>과 같다. 거리노숙인의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18.5%(10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화계(위염, 위궤양, 위암, 간염, 간경화 등)가 14.8%(8명), 순환계(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와 내분비계(당뇨, 갑상선 관련 질환 등)와 알코올 중독이 각각 11.1%(6명), 정신질환이 7.4%(4명)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질병 치료 여부를 살펴보면, 질병이 있는 거리노숙인은 근골격계 질환(20.0%), 호흡계(33.3%)를 제외하고는 50% 이상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순환계(100.0%), 내분비계(83.3%), 알코올중독(66.7%)은 60.0% 이상의 치료율을 보인다.

〈표 3-4-61〉 거리노숙인의 질병과 치료 여부(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질병 유무		치료 여부	
	있다	없다	예	아니오
근골격계 질환	10 (18.5)	44 (81.5)	2 (20.0)	8 (80.0)
소화계(위염, 위궤양, 위암, 간염, 간경화 등)	8 (14.8)	46 (85.2)	4 (50.0)	4 (50.0)
순환계(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6 (11.1)	48 (88.9)	6 (100.0)	0 (0.0)
내분비계(당뇨, 갑상선 관련 질환 등)	6 (11.1)	48 (88.9)	5 (83.3)	1 (16.7)
호흡계(감염성 질환, 기도 관련 질환 등)	3 (5.6)	51 (94.4)	1 (33.3)	2 (66.7)
피부질환	2 (3.7)	52 (96.3)	1 (50.0)	1 (50.0)
신경계(간질, 치매, 척수질환 등)	0 (0.0)	54 (100.0)	0 (0.0)	0 (0.0)
안/치과/귀 질환	2 (3.7)	52 (96.3)	1 (50.0)	1 (50.0)
정신질환	4 (7.4)	50 (92.6)	2 (50.0)	2 (50.0)
알코올중독	6 (11.1)	49 (90.7)	4 (66.7)	2 (33.3)
뇌질환	1 (1.9)	53 (98.1)	1 (100.0)	0 (0.0)

거리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주로 대처하는 방법은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가 59.3%(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받는다가 20.4%(11명),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가 14.8%(8명),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가 5.6%(3명)의 순이었다.

〈표 3-4-62〉 거리노숙인의 질병 대처방법

단위 : 명, %

구분	n	%
개인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음	11	20.4
무료진료소 이용	8	14.8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음	3	5.6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음	32	59.3
전체	54	100.0

(3) 치료 경험

최근 1년간 아픈 곳이 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거리노숙인의 44.4%(24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병원비 부담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87.5%(21명)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강보험이 체납돼서가 8.3%(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63〉 거리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24	44.4
없다	30	55.6
전체	54	100.0

〈표 3-4-64〉 거리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병원비가 부담돼서	21	87.5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0	0.0
건강보험이 체납돼서	2	8.3
기타	1	4.2
전체	24	100.0

2) 우울

거리노숙인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 <표 3-4-65>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을 최대 6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평균은 22.3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40.7%(22명)가 우울(25점 이상)에 해당하며, 경도(16점~24점) 31.5%(17명), 정상(16점 미만) 27.8%(15명) 순이었다.

〈표 3-4-65〉 거리노숙인의 우울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6점 미만 (정상)	15	27.8	22.3점 (12.2)
16점 ~ 24점 (경도)	17	31.5	
25점 이상 (우울)	22	40.7	
전체	54	100.0	

3) 음주

(1) 음주 경험

거리노숙인의 음주 경험을 살펴본 결과, 63.0%(34명)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와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가 각각 18.5%(10명) 순이었다.

〈표 3-4-66〉 거리노숙인의 음주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34	63.0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	10	18.5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10	18.5
전체	54	100.0

(2) 음주 성향

음주 경험이 있는 거리노숙인 44명의 음주 성향을 조사한 결과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9.1%(26명)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2.7%(10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술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0.9%(18명)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술 마신 다음 날 숙취증상을 없애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6.4%(16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3-4-67〉 거리노숙인의 음주 성향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26 (59.1)	18 (40.9)	44 (100.0)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10 (22.7)	34 (77.3)	44 (100.0)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8 (40.9)	26 (59.1)	44 (100.0)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숙취증상을 없애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16 (36.4)	28 (63.6)	44 (100.0)

총 4개의 문항에 대해 2개 이상이 해당할 경우(2점 이상) 문제성 음주군으로 분류한다. '예'로 응답한 문항이 2개 이상이면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으로, 3개 이상이면 음주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알코올 의존'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음주 경험이 있는 거리노숙인 중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이 22.7%(10명), 음주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의존이 22.8%(10명)로, 조사대상자 중 45.5%가 문제성 음주군에 해당하였다.

〈표 3-4-68〉 거리노숙인의 알코올 의존 정도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0점	9	20.5	1.59점 (1.26)
1점	15	34.1	
2점	10	22.7	
3점	5	11.4	
4점	5	11.4	
전체	44	100.0	

4)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57.4%가 건강이 좋다고 응답했지만, 노숙 후에는 27.8%가 좋다고 하였다. 노숙 전과 후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때, 좋다는 응답이 29.6%p 감소하여 거리노숙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표 3-4-69〉 거리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매우 좋음	7	13.0	2	3.7
좋음	24	44.4	13	24.1
보통	12	22.2	16	29.6
나쁨	6	11.1	18	33.3
매우 나쁨	5	9.3	5	9.3
전체	54	100.0	54	100.0

5. 거리노숙인의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1) 자립시도

거리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를 살펴본 결과, 75.9%(41명)가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1%(13명)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3-4-70〉 거리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41	75.9
안 한다	13	24.1
전체	54	100.0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3.4%(1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19.5%(15명), '병을 치료하고 있다' 13.0%(10명), '노숙인 시설이나 노숙인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 '신용회복 및 저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생활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가 각각 9.1%(7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자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3명)로 나타났다.

〈표 3-4-71〉 거리노숙인의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일을 하고 있다	18	23.4
노숙인시설이나 노숙인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	7	9.1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	3	3.9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15	19.5
병을 치료하고 있다(음주 치료 포함)	10	13.0
신용회복 및 저축을 하고 있다	7	9.1
앞으로 생활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	7	9.1
자활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여 중 또는 예정이다	6	7.8
기타	1	1.3
구체적인 활동 없음	3	3.9
전체	77	100.0

2) 근로활동능력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력, 만성적 증상, 자신감, 집중력, 자기통제 5개 항목을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활동능력 중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인 체력을 살펴보면,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와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가 각각 31.5%(1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18.5%(10명), '육체노동은 어렵다' 14.8%(8명), '육체노동은 불가능하다' 3.7%(2명)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체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7점으로 나타났다.

〈표 3-4-72〉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체력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17	31.5	2.7점 (1.2)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17	31.5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10	18.5	
육체노동은 어렵다	8	14.8	
육체노동은 불가능하다	2	3.7	
전체	54	100.0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인 만성적증상은 거리노숙인의 40.7%(22명)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와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가 각각 16.7%(9명),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14.8%(8명),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11.1%(6명)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만성적 증상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5점으로 나타났다.

〈표 3-4-73〉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22	40.7	2.5점 (1.5)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8	14.8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9	16.7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6	11.1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9	16.7	
전체	54	100.0	

거리노숙인의 자신감은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가 38.9%(2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한다' 29.6%(16명),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24.1%(13명), '작심삼일이다'와 '자포자기한다'가 각각 3.7%(2명)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자신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0점으로 나타났다.

〈표 3-4-74〉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	21	38.9	3.0점 (1.1)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한다	16	29.6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13	24.1	
작심삼일이다	2	3.7	
자포자기한다	2	3.7	
전체	54	100.0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집중력은 거리노숙인의 46.3%(25명)가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가 20.4%(11명),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16.7%(9명),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11.1%(6명),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본 것이 거의 없다' 5.6%(3명)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집중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9점으로 나타났다.

〈표 3-4-75〉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	25	46.3	2.9점 (1.3)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	11	20.4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6	11.1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9	16.7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본 것이 거의 없다	3	5.6	
전체	54	100.0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통제는 거리노숙인의 35.2%(19명)가 자기통제가 '잘 되는 편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잘 된다' 29.6%(16명), '보통이다' 20.4%(11명), '안 되는 편이다' 14.8%(8명)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64.8%가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14.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거리노숙인의 자기통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8점으로 나타났다.

〈표 3-4-76〉 거리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잘 된다	16	29.6	2.8점 (1.0)
잘 되는 편이다	19	35.2	
보통이다	11	20.4	
안 되는 편이다	8	14.8	
안 된다	0	0.0	
전체	54	100.0	

3) 자립준비

거리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3-4-77>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노숙을 탈피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를 측정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현재 이용(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리정돈을 잘 했다'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 했다'와 '지난 한 달 동안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가 각각 81.5%(4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잘 참았다'와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다'가 각각 74.1%(40명),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가 63.0%(34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저축을 하고 있다'(13.0%), '지난 6개월 사이 한 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29.6%), '현재 일을 하고 있다'(33.3%)는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4-77> 거리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

단위 : 명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경제적 자립 준비 수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18 (33.3)	36 (66.7)	54 (100.0)
	저축을 하고 있다	7 (13.0)	47 (87.0)	54 (100.0)
	현재 내 통장이 있다	31 (57.4)	23 (42.6)	54 (100.0)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꾸준히 일했다	21 (38.9)	33 (61.1)	54 (100.0)
일상 생활 유지 능력	지난 한 달 동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잘 참았다	40 (74.1)	14 (25.9)	54 (100.0)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	34 (63.0)	20 (37.0)	54 (100.0)
	지난 한달 동안 현재 이용(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리정돈을 잘 했다	44 (81.5)	10 (18.5)	54 (100.0)
	지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 했다	44 (81.5)	10 (18.5)	54 (100.0)
관계 유지 능력	지난 한 달 동안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했다	32 (59.3)	22 (40.7)	54 (100.0)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다	40 (74.1)	14 (25.9)	54 (100.0)
	지난 한 달 동안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	44 (81.5)	10 (18.5)	54 (100.0)
자립 경험	지난 6개월 사이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	20 (37.0)	34 (63.0)	54 (100.0)
	지난 6개월 사이 한 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	16 (29.6)	38 (70.4)	54 (100.0)

조사대상자의 자립준비도를 13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자립준비도 평균은 7.2점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도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 일상생활유지능력 평균이 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관계유지능력 2.1점, 경제적 자립준비수준 1.4점, 자립경험 0.7점 순이었다. 자립준비도 하위요인 중에서 자립경험 차원의 수준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8〉 거리노숙인의 자립준비도

단위 :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자립준비수준	1.4	1.33
일상생활유지능력	3.0	1.18
관계유지능력	2.1	0.92
자립경험	0.7	0.85
자립준비도 (전체)	7.2	3.03

4) 자립을 위한 지원 욕구

거리노숙인이 주택을 구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거리노숙인의 92.6%(50명)가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과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초기 정착 지원 87.0%(47명), 주거 유지를 위해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 81.5%(4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4-79〉 거리노숙인의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제도, 시장 상황, 지원 서비스 등)	50 (92.6)	4 (7.4)	54 (100.0)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거처 찾기, 계약 등에 대한 지원)	50 (92.6)	4 (7.4)	54 (100.0)
초기 정착 지원(가구/집기 구비, 지원 서비스 연결)	47 (87.0)	7 (13.0)	54 (100.0)
주거 유지를 위해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 (알코올중독, 정신건강 등)	44 (81.5)	10 (18.5)	54 (100.0)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정기적 연락)	40 (74.1)	14 (25.9)	54 (100.0)

거리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표 3-4-78>과 같다. 거리노숙인의 자립 및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거지원이 28.4%(46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지원이 26.5%(43점), 소득보조가 21.0%(34점), 고용지원 12.3%(20점), 심리지원 4.3%(7점)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거지원, 의료지원, 소득보조로 나타났다.

〈표 3-4-80〉 거리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총점[1)]	순위
	n	%	n	%		
소득보조	12	22.2	10	18.5	34(21.0)	3
의료지원	17	31.5	9	16.7	43(26.5)	2
고용지원	6	11.1	8	14.8	20(12.3)	4
주거지원	15	27.8	16	29.6	46(28.4)	1
심리지원	2	3.7	3	5.6	7(4.3)	5
채무상담지원	0	0.0	3	5.6	3(1.9)	7
문화활동지원	0	0.0	0	0.0	0(0.0)	10
교육	0	0.0	2	3.7	2(1.2)	9
노숙인시설 내 독립공간 마련	2	3.7	0	0.0	4(2.5)	6
필요한 지원 없음	0	0.0	3	5.6	3(1.9)	7
전체	54	100.0	54	100.0	162(100.0)	-

1) 총점 = (1순위 빈도 × 2점) + (2순위 빈도 × 1점)

제5절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상황

1) 노숙생활 시작

조사대상자의 노숙 원인을 살펴보면 <표 3-5-1>과 같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노숙생활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질환 및 장애가 22.6%(2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혼 및 가족해체와 주거지 상실이 각각 18.3%(17명), 실직 및 사업실패 15.1%(14명), 알코올 중독 및 약물중독 14.0%(13명), 부채 및 신용불량 6.5%(6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원인(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실직 및 사업실패	14	15.1
이혼 및 가족해체	17	18.3
부채 및 신용불량	6	6.5
게임 및 도박중독	1	1.1
질환 및 장애	21	22.6
주거지 상실	17	18.3
수급중지	1	1.1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13	14.0
가족관계의 어려움	3	3.2
기타	0	0.0
전체	93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처음으로 노숙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2001년~2005년에 노숙을 시작한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31.1%(1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1년~2015년 19.7%(12명), 2006년~2010년 18.0%(11명), 1996년~2000년 16.4%(10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시기

단위 : 명, %

구분	n	%
1969년 ~ 1980년	1	1.6
1981년 ~ 1990년	4	6.5
1991년 ~ 1995년	3	4.9
1996년 ~ 2000년	10	16.4
2001년 ~ 2005년	19	31.1
2006년 ~ 2010년	11	18.0
2011년 ~ 2015년	12	19.7
2016년 ~	1	1.6
전체	61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노숙을 경험한 기간은 11년~15년이 31.1%(1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년~10년 18.0%(11명), 16년~20년 16.4%(10명), 3년~5년 14.8%(9명) 등의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노숙 기간은 12.4년으로 나타났다.

<표 3-5-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기간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년 미만	1	1.6	
1년 ~ 2년	3	4.9	
3년 ~ 5년	9	14.8	
6년 ~ 10년	11	18.0	
11년 ~ 15년	19	31.1	12.4년(7.9)
16년 ~ 20년	10	16.4	
21년 ~ 25년	3	4.9	
26년 ~ 30년	3	4.9	
31년 이상	2	3.2	
전체	61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처음 노숙을 시작한 연령은 30대가 32.8%(2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7.9%(17명), 50대가 24.6%(15명), 20대가 9.8%(6명) 등의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노숙 시작 연령은 42.4세로 나타났다.

〈표 3-5-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연령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0대	0	0.0	42.4세(10.3)
20대	6	9.8	
30대	20	32.8	
40대	17	27.9	
50대	15	24.6	
60대	3	4.9	
전체	61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노숙을 시작한 지역을 살펴보면 <표 3-5-5>와 같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53.2%(33명)가 대전에서 처음 노숙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16.1%(10명), 충남이 12.9%(8명), 경기가 4.8%(3명), 충북과 전남이 각각 3.2%(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지역

단위 : 명, %

구분	n	%
대전	33	53.2
서울	10	16.1
충남	8	12.9
경기	3	4.8
충북	2	3.2
대구	1	1.6
부산	0	0.0
전북	1	1.6
경남	0	0.0
경북	0	0.0
인천	1	1.6
전남	2	3.2
울산	0	0.0
강원	0	0.0
광주	0	0.0
제주	0	0.0
해외	1	1.6
전체	62	100.0

2) 노숙 전 경제활동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77.4%(48명)가 근로활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6%(14명)에 불과하였다.

〈표 3-5-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근로활동을 했다	48	77.4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다	14	22.6
전체	62	100.0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건설이 20.8%(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_제조가 14.6%(7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2.5%(6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직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단순노무직_건설	10	20.8
단순노무직_운송	4	8.3
단순노무직_제조	7	14.6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0	0.0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5	10.4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4	8.3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5	10.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6	12.5
판매종사자	0	0.0
서비스종사자	1	2.1
전문가	1	2.1
사무종사자	4	8.3
관리자	1	2.1
기타	0	0.0
전체	48	100.0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39.6%(1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규직(상용직)이 27.1%(13명), 비정규직(계약직)이 22.9%(11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정규직(상용직)	13	27.1
비정규직(계약직)	11	22.9
일용직	19	39.6
자활/공공근로	1	2.1
자영업	4	8.3
무급가족종사자	0	0.0
기타	0	0.0
전체	48	100.0

근로활동 경험이 있던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은 12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최소 5만 5천 원에서 최대 550만 원으로 나타났다.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는 51만 원~100만 원이 42.6%(2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만 원~150만 원이 21.3%(10명), 50만 원 이하가 12.8%(6명), 201만 원~250만 원 10.6%(5명), 151만 원~200만 원이 8.5%(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50만 원 이하	6	12.8
51만 원 ~ 100만 원	20	42.6
101만 원 ~ 150만 원	10	21.3
151만 원 ~ 200만 원	4	8.5
201만 원 ~ 250만 원	5	10.6
251만 원 ~ 300만 원	0	0.0
301만 원 ~ 400만 원	1	2.1
401만 원 ~ 500만 원	0	0.0
501만 원 ~ 600만 원	1	2.1
601만 원 이상	0	0.0
전체	47	100.0

〈표 3-5-1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중간값(중위소득)	최대값
47	1,273,936원(926,370)	55,000원	1,000,000원	5,500,000원

3) 노숙 전 건강상태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좋은 편이었다가 54.8%(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나쁜 편이었다가 19.4%(12명), 보통이었다가 17.7%(11명), 매우 좋았다가 6.5%(4명) 등의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는 61.3%가 좋았다고 응답한 반면, 나빴다는 응답은 21.0%에 불과하였다.

〈표 3-5-1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n	%
매우 좋았다	4	6.5
좋은 편이었다	34	54.8
보통이었다	11	17.7
나쁜 편이었다	12	19.4
매우 나빴다	1	1.6
전체	62	100.0

4)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및 이용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2.3%(51명)가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알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를 알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7%(11명)에 불과하였다.

〈표 3-5-1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알아보았다	11	17.7
알아보지 않았다	51	82.3
전체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은 85.5%(53명)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4.5%(9명)에 불과하였다.

<표 3-5-1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9	14.5
없다	53	85.5
전체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들이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이 54.5%(6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이 27.3%(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1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기초생활보장	6	54.5
긴급지원	0	0.0
실업급여	0	0.0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3	27.3
기타	2	18.2
전체	11	100.0

5) 노숙 전 주거형태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는 월세가 37.7%(2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가 29.5%(18명), 전세 13.1%(8명), 직장 내 숙소 9.8%(6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1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자가	18	29.5
전세	8	13.1
월세	23	37.7
직장 내 숙소	6	9.8
기타	6	9.8
전체	61	100.0

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거생활

1) 거주 경험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취약거처에서의 거주 경험을 살펴보면 <표 3-5-16>과 같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취약거처에서 1개월 이상 거주 경험을 살펴보면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이 34.8%(62명)로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리노숙이 10.7%(19명), 여관, 여인숙, 모텔 등이 9.6%(17명), 교정시설이 6.2%(11명), 고시원과 의료시설이 각각 5.1%(9명), 친구(지인) 집이 4.5%(8명)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취약거처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 종교단체(교회, 절 등), 사우나(찜질방)가 각각 2.8%(5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3-5-1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거리노숙	19	10.7
일시보호시설	5	2.8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	5	2.8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	62	34.8
쪽방	4	2.2
여관, 여인숙, 모텔 등	17	9.6
비닐하우스	2	1.1
빈 집	1	0.6
종교단체(교회, 절 등)	5	2.8
고시원	9	5.1
사우나(찜질방)	5	2.8
만화방	2	1.1
다방	1	0.6
PC방	3	1.7
친인척 집	4	2.2
친구(지인) 집	8	4.5
국공립병원	1	0.6
아동·청소년시설	0	0.0
장애인시설	1	0.6
교정시설	11	6.2
요양원/요양병원	2	1.1
의료시설	9	5.1
기타	2	1.1
전체	178	100.0

2) 시설 입소 시기와 거주 기간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처음 시설에 입소한 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이 33.9%(2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1년~2005년이 27.4%(17명), 2006년~2010년 19.4%(12명), 2016년 이후 8.1%(5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1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입소 시기

단위 : 명, %

구분	n	%
1969년 ~ 1980년	0	0.0
1981년 ~ 1990년	2	3.2
1991년 ~ 1995년	1	1.6
1996년 ~ 2000년	4	6.5
2001년 ~ 2005년	17	27.4
2006년 ~ 2010년	12	19.4
2011년 ~ 2015년	21	33.9
2016년 이후	5	8.1
전체	62	100.0

시설 입소 후 거주 기간은 2년~5년이 30.6%(1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년~15년 27.4%(17명), 6년~10년 19.4%(12명), 1년 이하 11.3%(7명)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한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7년이었으며, 평균 시설 거주 기간은 8.4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3-5-1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거주 기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년 이하	7	11.3
2년 ~ 5년	19	30.6
6년 ~ 10년	12	19.4
11년 ~ 15년	17	27.4
16년 ~ 20년	4	6.5
21년 이상	3	4.8
전체	62	100.0

〈표 3-5-1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거주 기간

구분	평균 기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8.4년	6.5년	1개월	27년

조사대상자의 현 재활시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5년 미만이 22.6%(1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1.0%(13명), 5년 이상~10년 미만이 19.4%(12명), 15년 이상이 17.7%(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재활시설 거주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7년이었으며, 평균 현 재활시설 거주 기간은 7.8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3-5-2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 재활시설 거주 기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년 미만	6	9.7
1년 이상 ~ 2년 미만	6	9.7
2년 이상 ~ 5년 미만	14	22.6
5년 이상 ~ 10년 미만	12	19.4
10년 이상 ~ 15년 미만	13	21.0
15년 이상	11	17.7
전체	62	100.0

〈표 3-5-2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 재활시설 거주 기간

구분	평균 기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7.8년	6.31년	1개월	27년

3) 재활시설 입소 경로와 이유

조사대상자의 재활시설 입소 경로를 살펴보면, 경찰이나 공공기관 등의 소개가 58.1%(3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자진 입소 등)가 14.5%(9명), 동료 및 지인의 소개가 12.9%(8명),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가 11.3%(7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22〉 재활시설 입소 경로

단위 : 명, %

구분	n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7	11.3
거리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0	0.0
동료 및 지인의 소개로	8	12.9
경찰이나 공공기관 등의 소개로	36	58.1
긴급전화 안내를 통해서	1	1.6
인터넷 등 직접 정보를 찾아서	1	1.6
기타	9	14.5
전체	62	100.0

[그림 3-5-1] 재활시설 입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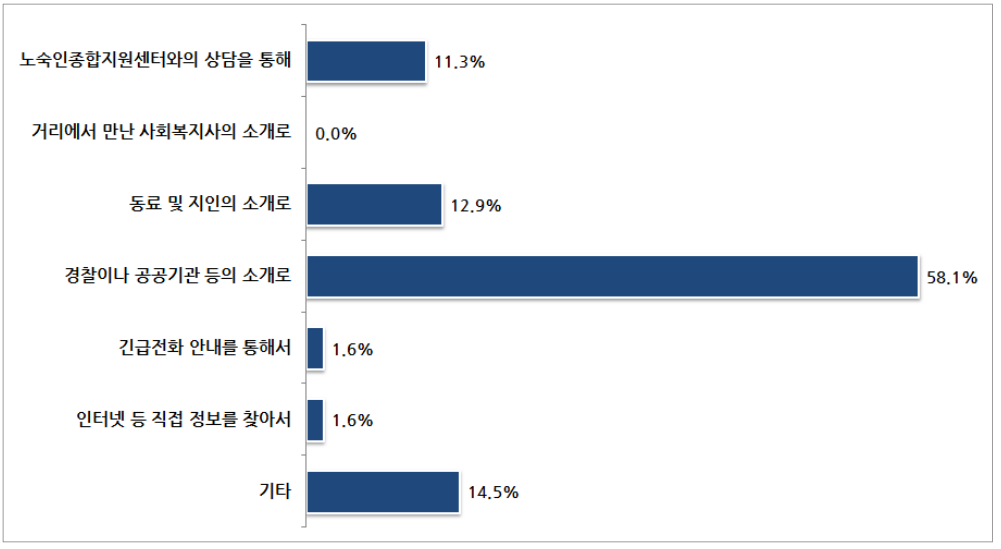

재활시설 입소 이유를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가 41.9%(2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2.2%(20명),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서 12.9%(8명),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와 기타가 각각 6.5%(4명) 순이었다.

〈표 3-5-23〉 재활시설 입소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26	41.9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서	8	12.9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	6.5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	32.3
기타	4	6.5
전체	62	100.0

[그림 3-5-2] 재활시설 입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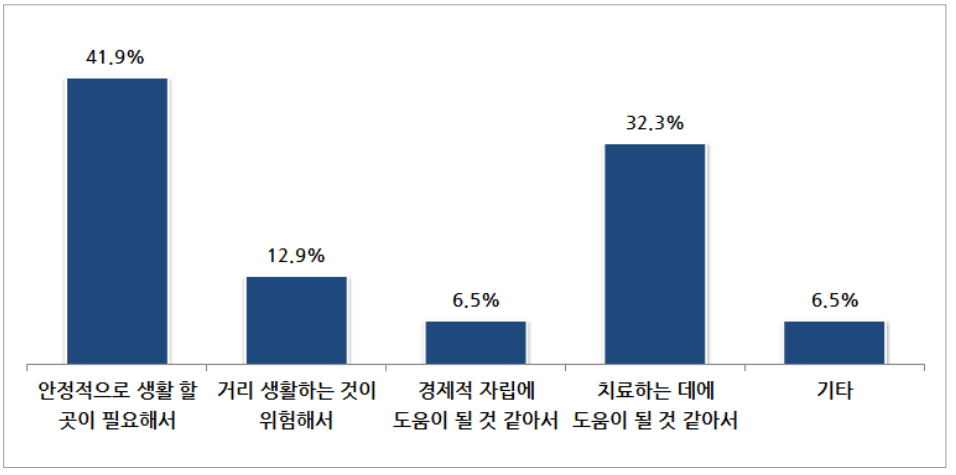

4) 재활시설 퇴소 계획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의 퇴소 의향 대해 살펴보면, 퇴소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8%(16명)로 나타났으며, 74.2%(46명)는 퇴소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3-5-24〉 재활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퇴소할 의향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16	25.8
없다	46	74.2
전체	62	100.0

재활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퇴소할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재활시설 퇴소 후 거처에 대한 계획에서는 지역사회에 집을 구해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62.5%(1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예정과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경우가 각각 12.5%(2명), 가족이 아닌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으로 들어갈 예정과 기타가 각각 6.3%(1명) 순이었다.

〈표 3-5-25〉 재활시설 퇴소 후 거처에 대한 계획

단위 : 명, %

구분	n	%
가족에게 돌아갈 예정	2	12.5
가족이 아닌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으로 들어갈 예정	1	6.3
지역사회에 집을 구해서 독립생활	10	62.5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입소 희망	0	0.0
기타	1	6.3
분명한 계획 없음	2	12.5
전체	16	100.0

재활시설 퇴소 후 어느 곳에서 생활하기 원하는지를 살펴보면, 37.5%(6명)의 응답자가 원래 살던 동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 지역근처가 25.0%(4명), 기타가 18.8%(3명), 가족 또는 지인 근처가 12.5%(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26〉 재활시설 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

단위 : 명, %

구분	n	%
원래 살던 동네	6	37.5
현재 시설 근처	1	6.3
가족 또는 지인 근처	2	12.5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 지역 근처	4	25.0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지역	0	0.0
기타	3	18.8
전체	16	100.0

[그림 3-5-3] 재활시설 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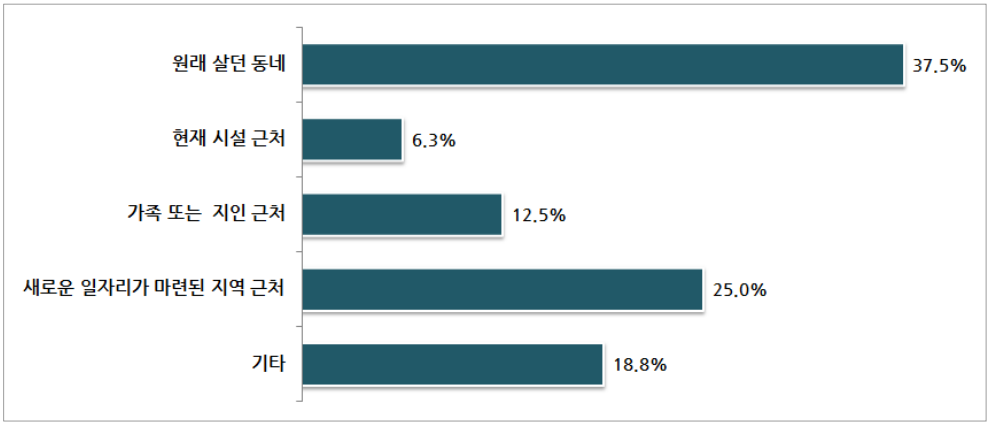

5) 재활시설 만족도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입소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만족도는 25점 만점 중 20.4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 중 '이곳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만족하는 편이다'가 4.4점, '이곳 직원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안다'가 3.8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가 3.8점, '이곳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가 4.3점, '이곳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4.0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3-5-27〉 재활시설 만족도

구분	평균 만족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20.4점	3.6점	5.0점	25.0점

〈표 3-5-28〉 항목별 재활시설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이곳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만족하는 편이다	4.4	0.9
이곳 직원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안다	3.8	1.1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	3.8	1.2
이곳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4.3	0.9
이곳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0	1.0

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경제활동

1) 근로활동 실태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6.8%(29명)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3.2%(33명)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2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29	46.8
안 한다	33	53.2
전체	62	100.0

현재 일을 하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는 20.7일이었으며, 최소 12일에서 최대 26일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

단위 : 일

구분	평균 근로일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20.7	2.4	12.0	26.0

현재 일을 하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_제조가 89.7%(2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 6.9%(2명),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3.4%(1명) 순이었다.

〈표 3-5-3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직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단순노무직_건설	0	0.0
단순노무직_운송	0	0.0
단순노무직_제조	26	89.7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0	0.0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0	0.0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1	3.4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0	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	0.0
판매종사자	0	0.0
서비스종사자	2	6.9
전문가	0	0.0
사무종사자	0	0.0
관리자	0	0.0
전체	29	100.0

현재 일을 하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고용 형태는 자활근로가 89.7%(2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계약직) 6.9%(2명), 기타 3.4%(1명) 순이었다.

〈표 3-5-3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정규직(상용직)	0	0.0
비정규직(계약직)	2	6.9
일용직	0	0.0
자활근로	26	89.7
공공근로	0	0.0
자영업	0	0.0
기타	1	3.4
전체	29	100.0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 중 어려움을 살펴보면, '어려운 점이 없다'가 51.7%(1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입이 적다'가 24.1%(7명),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와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다'가 각각 6.9%(2명),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가 각각 3.4%(1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3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의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n	%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1	3.4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2	6.9
수입이 적다	7	24.1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다	2	6.9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	1	3.4
어려운 점이 없다	15	51.7
기타	1	3.4
전체	29	100.0

2) 구직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여부를 살펴보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87.9%(29명)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숙인은 12.1%(4명)에 불과하였다.

〈표 3-5-3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4	12.1
안 한다	29	87.9
전체	33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는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이 50.0%(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간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와 사회복지기관이 각각 25.0%(1명) 순이었다.

〈표 3-5-3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명, %

구분	n	%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	2	50.0
동료 및 지인	0	0.0
민간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1	25.0
사회복지기관	1	25.0
고용지원센터	0	0.0
기타	0	0.0
전체	4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일정한 주소지 확보가 75.0%(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이 25.0%(1명) 순이었다.

〈표 3-5-3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n	%
일정한 주소지 확보	3	75.0
직업교육	0	0.0
건강회복	0	0.0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1	25.0
취업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	0	0.0
주민등록 복원	0	0.0
전체	4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가 58.6%(1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나와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각각 10.3%(3명),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6.9%(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3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	3	10.3
나이가 많아서	3	10.3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17	58.6
나와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3	10.3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서	0	0.0
신분증이 없어서	0	0.0
일하고 싶지 않아서	2	6.9
기타	1	3.4
전체	29	100.0

3) 소득

(1) 근로소득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48.4%(30명)가 하계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1.6%(32명)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계 역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응답은 48.4%(30명)였으며, 소득이 없다는 응답은 51.6%(32명)로 나타났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시설 내 재활 작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하계와 동계의 근로소득 유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5-3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소득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하계	30 (48.4)	32 (51.6)
동계	30 (48.4)	32 (51.6)

근로활동을 하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은 39만 원이며,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1만 원~40만 원이 73.3%(2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만 원 이하가 10.0%(3명), 41만 원~60만 원이 6.7%(2명), 81만 원~100만 원, 121만 원~140만 원, 141만 원~160만 원이 각각 3.3%(1명) 순이었다.

근로활동을 하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동계 월평균 근로소득 역시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39만 원이며,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으로 나타났다. 동계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1만 원~40만 원이 73.3%(2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만 원 이하가 10.0%(3명), 41만 원~60만 원이 6.7%(2명), 81만 원~100만 원, 121만 원~140만 원, 141만 원~160만 원이 각각 3.3%(1명) 순으로 하계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직업 유형과 고용 형태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 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거주자가 많아 하계와 동계의 근로소득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3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하계		동계	
	n	%	n	%
20만 원 이하	3	10.0	3	10.0
21만 원 ~ 40만 원	22	73.3	22	73.3
41만 원 ~ 60만 원	2	6.7	2	6.7
61만 원 ~ 80만 원	0	0.0	0	0.0
81만 원 ~ 100만 원	1	3.3	1	3.3
101만 원 ~ 120만 원	0	0.0	0	0.0
121만 원 ~ 140만 원	1	3.3	1	3.3
141만 원 ~ 160만 원	1	3.3	1	3.3
161만 원 ~ 180만 원	0	0.0	0	0.0
181만 원 이상	0	0.0	0	0.0
전체	30	100.0	30	100.0

〈표 3-5-4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

구분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하계	30	394,050원(324,099)	150,000원	1,550,000원
동계	30	394,050원(324,099)	150,000원	1,550,000원

(2) 기타소득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기타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69.4%(43명)가 기타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19명)에 불과하였다.

〈표 3-5-4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19	30.6
없다	43	69.4
전체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기타소득은 10만 원이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47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가 63.2%(1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1만 원~20만 원이 31.6%(6명), 41만 원~50만 원이 5.3%(1명) 순이었다.

〈표 3-5-4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12	63.2
11만 원 ~ 20만 원	6	31.6
21만 원 ~ 30만 원	0	0.0
31만 원 ~ 40만 원	0	0.0
41만 원 ~ 50만 원	1	5.3
51만 원 ~ 100만 원	0	0.0
101만 원 이상	0	0.0
전체	19	100.0

〈표 3-5-4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19	104,474원(121,985)	10,000원	470,000원

(3) 주 수입원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 수입원은 자활사업 참여가 57.4%(2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애수당이 21.3%(10명), 근로활동과 기초노령연금이 각각 8.5%(4명), 친구 및 친인척 도움과 국민연금이 각각 2.1%(1명) 순이었다.

〈표 3-5-4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 수입원

단위 : 명, %

구분	n	%
근로활동	4	8.5
자활사업 참여	27	57.4
종교·복지단체 지원	0	0.0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얻음	0	0.0
친구 및 친인척 도움	1	2.1
국민연금	1	2.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0	0.0
기초노령연금	4	8.5
장애수당	10	21.3
공공근로	0	0.0
실업급여	0	0.0
전체	47	100.0

4) 지출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유무를 살펴보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67.7%(42명)가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20명)에 불과하였다.

〈표 3-5-4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42	67.7
없다	20	32.3
전체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지출금액은 16만 원이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가 43.9%(1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만 원~20만 원이 31.7%(13명), 21만 원~30만 원과 31만 원~40만 원이 각각 9.8%(4명), 41만 원~50만 원과 101만 원 이상이 각각 2.4%(1명)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97.6%가 50만 원 이하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4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금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18	43.9
11만 원 ~ 20만 원	13	31.7
21만 원 ~ 30만 원	4	9.8
31만 원 ~ 40만 원	4	9.8
41만 원 ~ 50만 원	1	2.4
51만 원 ~ 60만 원	0	0.0
61만 원 ~ 70만 원	0	0.0
71만 원 ~ 100만 원	0	0.0
101만 원 이상	1	2.4
전체	41	100.0

〈표 3-5-4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41	167,561원(189,684)	10,000원	1,100,000원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로 전체 지출에서 33.3%(25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식비 30.7%(23명), 여가활동비 10.7%(8명), 교통비 6.7%(5명), 저축과 가족송금이 각각 4.0%(3명), 숙박비와 부채상환이 각각 2.7%(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4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항목(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담배	25	33.3
식비	23	30.7
여가활동비	8	10.7
교통비	5	6.7
통신비	1	1.3
피복비	1	1.3
숙박비	2	2.7
보건의료비	1	1.3
음주	0	0.0
주거비	0	0.0
생활용품구입비	0	0.0
저축	3	4.0
가족송금	3	4.0
부채상환	2	2.7
도박/오락	0	0.0
기타	1	1.3
전체	75	100.0

5) 부채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유무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38.7%(24명), 부채가 없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61.3%(38명)로 나타났다.

〈표 3-5-4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24	38.7
없다	38	61.3
모름	0	0.0
전체	62	100.0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출, 보증과 기타(핸드폰 요금 미납, 자동차 할부, 카드빚 등)가 각각 20.8%(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비와 사기가 16.7%(4명), 주민등록 도용이 12.5%(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5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발생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생활비	4	16.7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	1	4.2
의료비	1	4.2
대출, 보증	5	20.8
도박, 유흥, 오락	1	4.2
주민등록 도용	3	12.5
사기	4	16.7
기타	5	20.8
전체	24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40만 원이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1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16.7%(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00만 원 이하와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억 원 이상이 각각 12.5%(3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채 금액을 모른다고 응답한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8.3%(2명)로 조사되었다.

〈표 3-5-5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금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0만 원 이하	3	12.5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4	16.7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2	8.3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3	12.5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2	8.3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1	4.2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4	16.7
1억 원 이상	3	12.5
액수모름	2	8.3
전체	24	100.0

〈표 3-5-5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24	123,433,182원(443,018,864)	30,000원	8,000,000원	2,100,000,000원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를 살펴보면, 27.4%(17명)가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응답하였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는 응답이 71.0%(44명)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 인지 모르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1.6%(1명)로 조사되었다.

〈표 3-5-5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그렇다	17	27.4
아니다	44	71.0
모름	1	1.6
전체	62	100.0

6) 저축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 여부를 살펴보면, 66.1%(41명)가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33.9%(21명)에 불과하였다.

〈표 3-5-5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21	33.9
안 한다	41	66.1
전체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저축액은 41만 원이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가 33.3%(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만 원~20만 원 28.6%(6명), 21만 원~30만 원 19.0%(4명), 101만 원 이상 14.3%(3명), 71만 원~100만 원 4.8%(1명) 순이었다.

〈표 3-5-5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7	33.3
11만 원~ 20만 원	6	28.6
21만 원 ~ 30만 원	4	19.0
31만 원 ~ 50만 원	0	0.0
51만 원 ~ 70만 원	0	0.0
71만 원 ~ 100만 원	1	4.8
101만 원 이상	3	14.3
전체	21	100.0

〈표 3-5-5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21	417,619원(676,802)	20,000원	3,000,000원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저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75.6%(3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채 상환 중이어서가 9.8%(4명),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가 각각 7.3%(3명) 순이었다.

〈표 3-5-5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돈이 없어서	31	75.6
필요성을 못 느껴서	3	7.3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3	7.3
부채 상환 중이어서	4	9.8
기타	0	0.0
전체	41	100.0

7) 노숙 전후 근로활동 비교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과 후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건설이 16.1%(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_제조가 11.3%(7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9.7%(6명),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와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가 각각 8.1%(5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숙 이후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제조가 41.9%(26명)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종사자가 3.2%(2명),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가 1.6%(1명) 순이었다. 또한 노숙 전후와 비교해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22.6%에서 53.2%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5-5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무직	14	22.6	33	53.2
단순노무직_건설	10	16.1	0	0.0
단순노무직_운송	4	6.5	0	0.0
단순노무직_제조	7	11.3	26	41.9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0	0.0	0	0.0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5	8.1	0	0.0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4	6.5	1	1.6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5	8.1	0	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9.7	0	0.0
판매종사자	0	0.0	0	0.0
서비스종사자	1	1.6	2	3.2
전문가	1	1.6	0	0.0
사무종사자	4	6.5	0	0.0
관리자	1	1.6	0	0.0
기타	0	0.0	0	0.0
전체	62	100.0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일용직이 39.6%(1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상용직) 27.1%(13명), 비정규직(계약직) 22.9%(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숙 후에는 자활/공공근로가 89.7%(2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계약직) 6.9%(2명), 기타 3.4%(1명) 순이었다.

〈표 3-5-5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정규직(상용직)	13	27.1	0	0.0
비정규직(계약직)	11	22.9	2	6.9
일용직	19	39.6	0	0.0
자활/공공근로	1	2.1	26	89.7
자영업	4	8.3	0	0.0
무급가족종사자	0	0.0	0	0.0
기타	0	0.0	1	3.4
전체	48	100.0	29	100.0

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건강 및 의료

1) 건강과 질병 대처방법

(1) 건강상태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좋다가 43.5%(2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나쁘다 25.8%(16명), 보통이다 22.6%(14명), 매우 나쁘다 6.5%(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6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n	%
매우 좋다	1	1.6
좋다	27	43.5
보통이다	14	22.6
나쁘다	16	25.8
매우 나쁘다	4	6.5
전체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무는 장애가 없다는 응답이 75.8%(47명),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24.2%(15명)였다.[1] 한편, 장애가 있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5명 중 3명으로 나타났다.

〈표 3-5-6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비장애	47	75.8
장애	15	24.2
전체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유형은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신장애가 66.7%(8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 25.0%(3명), 청각장애 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6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지체장애	3	25.0
시각장애	0	0.0
청각장애	1	8.3
지적장애	0	0.0
정신장애	8	66.7
언어장애	0	0.0
합계	12	100.0

1) 재활시설 (자강의 집) 장애별 현황 (2016년 10월 기준)

구분	전체	등록장애인 (46%)									비장애인 (54%)		
		정신	뇌병변	지적	지체	청각	시각	언어	중복	소계	알코올중독	기타 질병	소계
합계(명)	165	33	6	21	10	3	1	1	2	77	28	60	88

재활시설은 시설특성상 신체장애,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이 대다수이나, 본 조사에서는 응답이 가능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중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을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다.

(2) 질병 및 치료 여부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 유무와 치료 여부를 살펴보면 <표 3-5-63>과 같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은 정신질환이 22.6%(14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내분비계(당뇨, 갑상선 관련 질환 등)가 14.5%(9명), 근골격계 질환이 11.3%(7명), 소화계(위염, 위궤양, 위암, 간염, 간경화 등)와 순환계(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가 각각 9.7%(6명) 등의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 치료 여부를 살펴보면, 질병이 있는 노숙인은 근골격계 질환(42.9%), 알코올중독(50.0%)을 제외하고는 60% 이상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화계(100.0%), 순환계(100.0%), 정신질환(100.0%)은 100.0%의 높은 치료율을 보인다.

<표 3-5-6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과 치료 여부(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질병 유무		치료 여부	
	있다	없다	예	아니오
근골격계 질환	7 (11.3)	57 (88.7)	3 (42.9)	4 (57.1)
소화계(위염, 위궤양, 위암, 간염, 간경화 등)	6 (9.7)	56 (90.3)	6 (100.0)	0 (0.0)
순환계(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6 (9.7)	56 (90.3)	6 (100.0)	0 (0.0)
내분비계(당뇨, 갑상선 관련 질환 등)	9 (14.5)	53 (85.5)	8 (88.9)	1 (11.1)
호흡계(감염성 질환, 기도 관련 질환 등)	3 (4.8)	59 (95.2)	2 (66.7)	1 (33.3)
피부질환	0 (0.0)	62 (100.0)	0 (0.0)	0 (0.0)
신경계(간질, 치매, 척수질환 등)	0 (0.0)	62 (100.0)	0 (0.0)	0 (0.0)
안/치과/귀 질환	3 (4.8)	59 (95.2)	2 (66.7)	1 (33.3)
정신질환	14 (22.6)	48 (77.4)	14 (100.0)	0 (0.0)
알코올중독	3 (4.8)	59 (95.2)	1 (50.0)	1 (50.0)
뇌질환	0 (0.0)	62 (100.0)	0 (0.0)	0 (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주로 대처하는 방법은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가 93.4%(5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가 3.3%(2명),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와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가 각각 1.6%(1명) 순이었다.

〈표 3-5-6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 대처방법

단위 : 명, %

구분	n	%
개인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음	2	3.3
무료진료소 이용	1	1.6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음	57	93.4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음	1	1.6
전체	61	100.0

(3) 치료 경험

최근 1년간 아픈 곳이 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98.4%(61명)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로 응답하였다.

〈표 3-5-6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1	1.6
없다	61	98.4
전체	62	100.0

〈표 3-5-6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병원비가 부담돼서	0	0.0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0	0.0
건강보험이 체납돼서	0	0.0
기타	1	100.0
전체	1	100.0

2) 우울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 <표 3-5-67>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을 최대 6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평균은 12.8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64.4%(38명)가 정상(16점 미만)에 해당하며, 경도(16점~24점) 27.1%(16명), 우울(25점 이상) 8.5%(5명) 순이었다.

〈표 3-5-6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우울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6점 미만 (정상)	38	64.4	12.8점 (8.6)
16점 ~ 24점 (경도)	16	27.1	
25점 이상 (우울)	5	8.5	
전체	59	100.0	

3) 음주

(1) 음주 경험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경험을 살펴본 결과, 37.1%(23명)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가 33.9%(21명),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가 29.0%(18명) 순이었다.

〈표 3-5-6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23	37.1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	21	33.9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18	29.0
전체	62	100.0

(2) 음주 성향

음주 경험이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44명의 음주 성향을 조사한 결과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3.5%(23명)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7.9%(12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술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9.5%(17명)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술 마신 다음 날 숙취증상을 없애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7.2%(16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3-5-6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성향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23 (53.5)	20 (46.5)	43 (100.0)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12 (27.9)	31 (72.1)	43 (100.0)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7 (39.5)	26 (60.5)	43 (100.0)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숙취증상을 없애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16 (37.2)	27 (62.8)	43 (100.0)

총 4개의 문항에 대해 2개 이상이 해당할 경우(2점 이상) 문제성 음주군으로 분류한다. '예'로 응답한 문항이 2개 이상이면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으로, 3개 이상이면 음주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알코올 의존'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음주 경험이 있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중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이 20.9%(9명), 음주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의존이 28.0%(12명)로, 조사대상자 중 48.9%가 문제성 음주군에 해당하였다.

〈표 3-5-7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 정도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0점	14	32.6	1.58점 (1.43)
1점	8	18.6	
2점	9	20.9	
3점	6	14.0	
4점	6	14.0	
전체	43	100.0	

4)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61.3%가 건강이 좋다고 응답했지만 노숙 후에는 45.1%가 좋다고 하였다. 노숙 전과 후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때, 좋다는 응답이 16.2%p 감소하여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표 3-5-7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매우 좋음	4	6.5	1	1.6
좋음	34	54.8	27	43.5
보통	11	17.7	14	22.6
나쁨	12	19.4	16	25.8
매우 나쁨	1	1.6	4	6.5
전체	62	100.0	62	100.0

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1) 자립시도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를 살펴본 결과, 43.5%(27명)가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6.5%(35명)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3-5-7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27	43.5
안 한다	35	56.5
전체	62	100.0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일을 하고 있다'가 23.1%(1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15.4%(8명), '병을 치료하고 있다'와 '자활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여 중 또는 예정이다'가 각각 13.5%(7명), '신용회복 및 저축을 하고 있다' 11.5%(6명), '노숙인시설이나 노숙인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 7.7%(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2명)로 나타났다.

〈표 3-5-7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일을 하고 있다	12	23.1
노숙인시설이나 노숙인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	4	7.7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	3	5.8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8	15.4
병을 치료하고 있다(음주 치료 포함)	7	13.5
신용회복 및 저축을 하고 있다	6	11.5
앞으로 생활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	1	1.9
자활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여 중 또는 예정이다	7	13.5
기타	2	3.8
구체적인 활동 없음	2	3.8
전체	52	100.0

2) 근로활동능력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력, 만성적 증상, 자신감, 집중력, 자기통제 5개 항목을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활동능력 중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인 체력을 살펴보면,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가 38.7%(2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와 '육체노동은 어렵다'가 각각 19.4%(12명),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17.7%(11명), '육체노동은 불가능하다' 4.8%(3명)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체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5점으로 나타났다.

〈표 3-5-7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체력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12	19.4	2.5점 (1.2)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24	38.7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11	17.7	
육체노동은 어렵다	12	19.4	
육체노동은 불가능하다	3	4.8	
전체	62	100.0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 된 상태인 만성적 증상은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61.3%(38명)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17.7%(11명),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2.9%(8명),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4.8%(3명),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3.2%(2명)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만성적 증상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0점으로 나타났다.

〈표 3-5-7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38	61.3	3.0점 (1.5)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3	4.8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11	17.7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2	3.2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8	12.9	
전체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신감은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가 56.5%(3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한다' 22.6%(14명),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12.9%(8명), '작심삼일이다' 4.8%(3명), '자포자기한다' 3.2%(2명)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신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2점으로 나타났다.

〈표 3-5-7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	35	56.5	3.2점 (1.1)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한다	14	22.6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8	12.9	
작심삼일이다	3	4.8	
자포자기한다	2	3.2	
전체	62	100.0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집중력은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8.4%(30명)가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가 37.1%(23명),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9.7%(6명),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본 것이 거의 없다' 3.2%(2명),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1.6%(1명)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집중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3점으로 나타났다.

〈표 3-5-7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	30	48.4	3.3점 (0.9)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	23	37.1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6	9.7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1	1.6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본 것이 거의 없다	2	3.2	
전체	62	100.0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통제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51.6%(32명)가 자기통제가 '잘 되는 편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잘 된다' 22.6%(14명), '보통이다' 12.9%(8명), '안 되는 편이다 '11.3%(7명), 안 된다 1.6%(1명)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74.2%가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12.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기통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8점으로 나타났다.

〈표 3-5-7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잘 된다	14	22.6	2.8점 (1.0)
잘 되는 편이다	32	51.6	
보통이다	8	12.9	
안 되는 편이다	7	11.3	
안 된다	1	1.6	
전체	62	100.0	

3) 자립준비

재활시설 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3-5-79>와 같다. 조사대상자가 시설을 퇴소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를 측정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와 '현재 이용(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리정돈을 잘 했다'가 각각 91.9%(5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했다'가 90.3%(56명), '지난 한 달 동안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했다'와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가 각각 88.7%(55명),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다'가 72.6%(45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난 6개월 사이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3.2%), '지난 6개월 사이 한 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19.4%), '저축을 하고 있다'(32.3%)는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5-7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

단위 : 명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경제적 자립준비 수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29 (46.8)	33 (53.2)	62 (100.0)
	저축을 하고 있다	20 (32.3)	42 (67.7)	62 (100.0)
	현재 내 통장이 있다	44 (71.0)	18 (29.0)	62 (100.0)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꾸준히 일했다	27 (43.5)	35 (56.5)	62 (100.0)
일상생활 유지능력	지난 한 달 동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잘 참았다	42 (67.7)	20 (32.3)	62 (100.0)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	57 (91.9)	5 (8.1)	62 (100.0)
	지난 한달 동안 현재 이용(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리정돈을 잘 했다	57 (91.9)	5 (8.1)	62 (100.0)
	지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 했다	56 (90.3)	6 (9.7)	62 (100.0)
관계유지 능력	지난 한 달 동안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했다	55 (88.7)	7 (11.3)	62 (100.0)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다	45 (72.6)	17 (27.4)	62 (100.0)
	지난 한 달 동안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	55 (88.7)	7 (11.3)	62 (100.0)
자립경험	지난 6개월 사이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	2 (3.2)	60 (96.8)	62 (100.0)
	지난 6개월 사이 한 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	12 (19.4)	50 (80.6)	62 (100.0)

조사대상자의 자립준비도를 13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자립준비도 평균은 8.1점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도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 일상생활유지능력 평균이 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관계유지능력 2.5점, 경제적 자립준비수준 1.9점, 자립경험 0.2점 순이었다. 자립준비도 하위요인 중에서 자립경험 차원의 수준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도

단위 :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자립준비수준	1.9	1.39
일상생활유지능력	3.4	1.02
관계유지능력	2.5	0.78
자립경험	0.2	0.46
자립준비도 (전체)	8.1	2.41

4) 자립을 위한 지원 욕구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주택을 구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64.5%(40명)가 초기 정착 지원과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 54.8%(34명),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53.2%(3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5-8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제도, 시장 상황, 지원 서비스 등)	34 (54.8)	28 (45.2)	62 (100.0)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거처 찾기, 계약 등에 대한 지원)	33 (53.2)	29 (46.8)	62 (100.0)
초기 정착 지원(가구/집기 구비, 지원 서비스 연결)	40 (64.5)	22 (35.5)	62 (100.0)
주거 유지를 위해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 (알코올중독, 정신건강 등)	31 (50.0)	31 (50.0)	62 (100.0)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정기적 연락)	40 (64.5)	22 (35.5)	62 (10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표 3-5-82>와 같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 및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가 21.5%(40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주거지원이 20.4%(38점), 의료지원이 13.4%(25점), 고용지원이 12.9%(24점), 노숙인시설 내 독립공간 마련 9.1%(17점) 등의 순이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으로 나타났다.

〈표 3-5-8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총점[2)]	순위
	n	%	n	%		
소득보조	15	24.2	10	16.1	40(21.5)	1
의료지원	10	16.1	5	8.1	25(13.4)	3
고용지원	8	12.9	8	12.9	24(12.9)	4
주거지원	13	21.0	12	19.4	38(20.4)	2
심리지원	0	0.0	2	3.2	2(1.1)	10
채무상담지원	2	3.2	0	0.0	4(2.2)	9
문화활동지원	1	1.6	6	9.7	8(4.3)	8
교육	3	4.8	5	8.1	11(5.9)	7
노숙인시설 내 독립공간 마련	6	9.7	5	8.1	17(9.1)	5
필요한 지원 없음	4	6.5	9	14.5	17(9.1)	5
전체	62	100.0	62	100.0	186(100.0)	-

2) 총점 = (1순위 빈도 × 2점) + (2순위 빈도 × 1점)

제6절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상황

1) 노숙생활 시작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원인을 살펴보면 <표 3-6-1>과 같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노숙생활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실직 및 사업실패가 32.5%(5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채 및 신용불량이 17.5%(28명), 질환 및 장애 10.6%(17명), 이혼 및 가족해체 10.0%(16명), 주거지 상실 8.1%(13명), 가족관계의 어려움 7.5%(1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원인(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실직 및 사업실패	52	32.5
이혼 및 가족해체	16	10.0
부채 및 신용불량	28	17.5
게임 및 도박중독	6	3.8
질환 및 장애	17	10.6
주거지 상실	13	8.1
수급중지	2	1.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10	6.3
가족관계의 어려움	12	7.5
기타	4	2.5
전체	160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노숙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에 노숙을 시작한 노숙인이 31.6%(3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6년~2010년이 29.5%(28명), 1996년~2000년 20.0%(19명), 2001년~2005년 12.6%(1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시기

단위 : 명, %

구분	n	%
1969년 ~ 1980년	1	1.1
1981년 ~ 1990년	2	2.1
1991년 ~ 1995년	1	1.1
1996년 ~ 2000년	19	20.0
2001년 ~ 2005년	12	12.6
2006년 ~ 2010년	28	29.5
2011년 ~ 2015년	30	31.6
2016년 ~	2	2.1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기간은 6년~10년이 29.8%(2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6년~20년 20.2%(19명), 3년~5년 19.1%(18명), 1년~2년과 11년~15년이 각각 12.8%(1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기간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년 미만	2	2.1	9.8년(7.5)
1년 ~ 2년	12	12.8	
3년 ~ 5년	18	19.1	
6년 ~ 10년	28	29.8	
11년 ~ 15년	12	12.8	
16년 ~ 20년	19	20.2	
21년 ~ 25년	1	1.1	
26년 ~ 30년	2	2.1	
전체	94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노숙을 시작한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26.3%(2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4.2%(23명), 20대가 14.7%(14명), 60대가 6.3%(6명) 등의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노숙을 시작하는 평균연령은 43.2세로 나타났다.

〈표 3-6-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연령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0대	1	1.1	
20대	14	14.7	
30대	25	26.3	
40대	25	26.3	43.2세(12.1)
50대	23	24.2	
60대	6	6.3	
70대	1	1.1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노숙을 시작한 지역을 살펴보면 〈표 3-6-5〉와 같다. 노숙인의 49.5%(47명)가 대전에서 처음 노숙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18.9%(18명), 부산 6.3%(6명), 충남과 경기가 각각 5.3%(5명), 대구와 경남이 각각 3.2%(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시작 지역

단위 : 명, %

구분	n	%
대전	47	49.5
서울	18	18.9
충남	5	5.3
경기	5	5.3
충북	2	2.1
대구	3	3.2
부산	6	6.3
전북	1	1.1
경남	3	3.2
경북	1	1.1
인천	0	0.0
전남	1	1.1
울산	2	2.1
강원	1	1.1
광주	0	0.0
제주	0	0.0
해외	0	0.0
전체	95	100.0

2) 노숙 전 경제활동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90.5%(86명)가 근로활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9.5%(9명)에 불과하였다.

〈표 3-6-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근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근로활동을 했다	86	90.5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다	9	9.5
전체	95	100.0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직업 유형은 관리자가 32.6%(2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_건설이 20.9%(18명), 단순노무직_제조가 10.5%(9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직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단순노무직_건설	18	20.9
단순노무직_운송	3	3.5
단순노무직_제조	9	10.5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2	2.3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0	0.0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4	4.7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3	3.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6	7.0
판매종사자	1	1.2
서비스종사자	6	7.0
전문가	1	1.2
사무종사자	5	5.8
관리자	28	32.6
기타	0	0.0
전체	86	100.0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고용 형태는 자영업이 37.2%(3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규직(상용직)이 22.1%(19명), 비정규직(계약직)과 일용직이 각각 19.8%(17명), 자활/공공근로가 1.2%(1명) 순이었다.

〈표 3-6-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정규직(상용직)	19	22.1
비정규직(계약직)	17	19.8
일용직	17	19.8
자활/공공근로	1	1.2
자영업	32	37.2
무급가족종사자	0	0.0
기타	0	0.0
전체	86	100.0

근로활동 경험이 있던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은 54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최소 7만 5천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범위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는 151만 원~200만 원이 25.6%(22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1만 원 이상 17.5%(15명), 101만 원~150만 원 14.0%(12명), 51만 원~100만 원과 301만 원~400만 원이 각각 10.5%(9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50만 원 이하	4	4.7
51만 원 ~ 100만 원	9	10.5
101만 원 ~ 150만 원	12	14.0
151만 원 ~ 200만 원	22	25.6
201만 원 ~ 250만 원	7	8.1
251만 원 ~ 300만 원	4	4.7
301만 원 ~ 400만 원	9	10.5
401만 원 ~ 500만 원	4	4.7
501만 원 ~ 600만 원	0	0.0
601만 원 이상	15	17.5
전체	86	100.0

〈표 3-6-1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중간값(중위소득)	최대값
86	5,428,197원(12,248,080)	75,000원	2,000,000원	100,000,000원

3) 노숙 전 건강상태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좋은 편이었다가 41.1%(3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이었다가 22.1%(21명), 매우 좋았다가 16.8%(16명), 나쁜 편이었다가 12.6%(12명)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는 57.9%가 좋았다고 응답한 반면, 나빴다는 응답은 20.0%에 불과하였다.

〈표 3-6-1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n	%
매우 좋았다	16	16.8
좋은 편이었다	39	41.1
보통이었다	21	22.1
나쁜 편이었다	12	12.6
매우 나빴다	7	7.4
전체	95	100.0

4)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및 이용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2.1%(78명)가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알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를 알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9%(17명)에 불과하였다.

〈표 3-6-1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알아보았다	17	17.9
알아보지 않았다	78	82.1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은 85.3%(81명)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4.7%(14명)에 불과하였다.

〈표 3-6-1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14	14.7
없다	81	85.3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들이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이 43.8%(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긴급지원이 25.0%(4명), 실업급여와 기타가 각각 12.5%(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1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기초생활보장	7	43.8
긴급지원	4	25.0
실업급여	2	12.5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1	6.3
기타	2	12.5
전체	16	100.0

5) 노숙 전 주거형태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는 자가가 40.0%(3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월세 33.7%(32명), 전세 17.9%(17명), 직장 내 숙소 6.3%(6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1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주거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자가	38	40.0
전세	17	17.9
월세	32	33.7
직장 내 숙소	6	6.3
기타	2	2.1
전체	95	100.0

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거생활

1) 거주 경험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취약거처에서의 거주 경험을 살펴보면 <표 3-6-16>과 같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취약거처에서 1개월 이상 거주 경험을 살펴보면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이 33.0%(95명)로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관, 여인숙, 모텔 등이 13.5%(39명), 일시보호시설이 11.8%(34명), 거리노숙이 11.5%(33명), 사우나(찜질방)가 6.3%(18명)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취약거처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고시원이 5.2%(15명), 쪽방이 3.5%(10명), PC방과 교정시설이 각각 3.1%(9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3-6-1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취약 거처에서의 거주 경험(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거리노숙	33	11.5
일시보호시설	34	11.8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	95	33.0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	2	0.7
쪽방	10	3.5
여관, 여인숙, 모텔 등	39	13.5
비닐하우스	1	0.3
빈 집	2	0.7
종교단체(교회, 절 등)	3	1.0
고시원	15	5.2
사우나(찜질방)	18	6.3
만화방	3	1.0
다방	0	0.0
PC방	9	3.1
친인척 집	1	0.3
친구(지인) 집	6	2.1
국공립병원	0	0.0
아동·청소년시설	1	0.3
장애인시설	1	0.3
교정시설	9	3.1
요양원/요양병원	1	0.3
의료시설	4	1.4
기타	1	0.3
전체	288	100.0

2) 시설 입소 시기와 거주 기간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처음 시설에 입소한 시기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이 58.9%(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6년~2010년이 17.9%(17명), 2001년~2005년이 8.4%(8명), 2016년 이후 5.3%(5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1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입소 시기

단위 : 명, %

구분	n	%
1969년 ~ 1980년	1	1.1
1981년 ~ 1990년	0	0.0
1991년 ~ 1995년	1	1.1
1996년 ~ 2000년	7	7.4
2001년 ~ 2005년	8	8.4
2006년 ~ 2010년	17	17.9
2011년 ~ 2015년	56	58.9
2016년 이후	5	5.3
전체	95	100.0

시설 입소 후 거주 기간은 2년~5년이 4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이하가 23.2%(22명), 6년~10년 17.9%(17명), 11년~15년 8.4%(8명)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한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1년이었으며, 평균 시설 거주 기간은 5.9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3-6-1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거주 기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년 이하	22	23.2
2년 ~ 5년	39	41.1
6년 ~ 10년	17	17.9
11년 ~ 15년	8	8.4
16년 ~ 20년	7	7.4
21년 이상	2	2.2
전체	95	100.0

〈표 3-6-1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거주 기간

구분	평균 기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5.9년	6.4년	1개월	41년

조사대상자의 현 자활시설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과 2년 이상~5년 미만이 각각 28.4%(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이상~2년 미만이 20.0%(19명), 5년 이상~10년 미만이 15.8%(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자활시설 거주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5년이었으며, 평균 현 자활시설 거주 기간은 3.3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3-6-2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 자활시설 거주 기간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년 미만	27	28.4
1년 이상 ~ 2년 미만	19	20.0
2년 이상 ~ 5년 미만	27	28.4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5.8
10년 이상 ~ 15년 미만	3	3.2
15년 이상	4	4.2
전체	95	100.0

〈표 3-6-2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 자활시설 거주 기간

구분	평균 기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3.3년	3.9년	1개월	25년

3) 자활시설 입소 경로와 이유

조사대상자의 자활시설 입소 경로를 살펴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가 36.8%(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료 및 지인의 소개가 25.3%(24명), 경찰이나 공공기관 등의 소개가 11.6%(11명), 인터넷 등 직접 정보를 찾아서가 10.5%(10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22〉 자활시설 입소 경로

단위 : 명, %

구분	n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35	36.8
거리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9	9.5
동료 및 지인의 소개로	24	25.3
경찰이나 공공기관 등의 소개로	11	11.6
긴급전화 안내를 통해서	0	0.0
인터넷 등 직접 정보를 찾아서	10	10.5
기타	6	6.3
전체	95	100.0

[그림 3-6-1] 자활시설 입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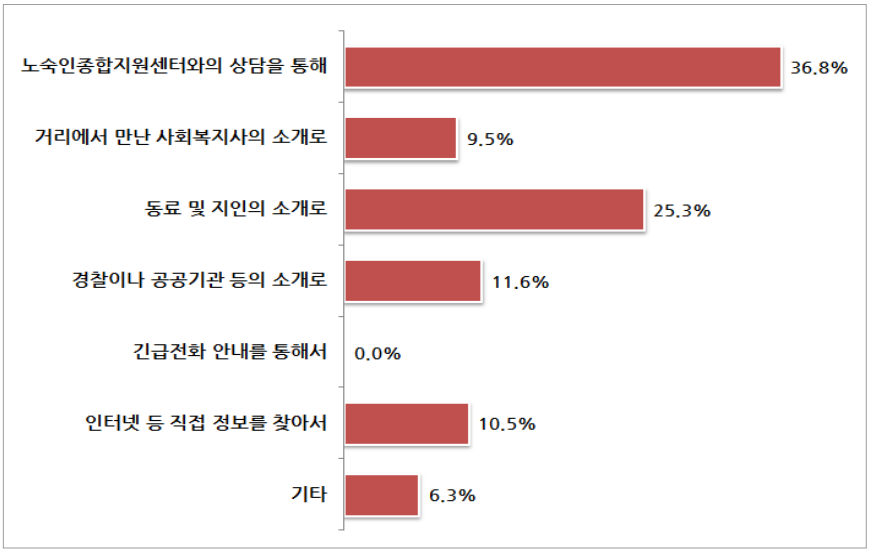

자활시설 입소 이유를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가 56.8%(5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8.9%(18명),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3.7%(13명),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서 5.3%(5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23〉 자활시설 입소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54	56.8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서	5	5.3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8	18.9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3	13.7
기타	5	5.3
전체	95	100.0

[그림 3-6-2] 자활시설 입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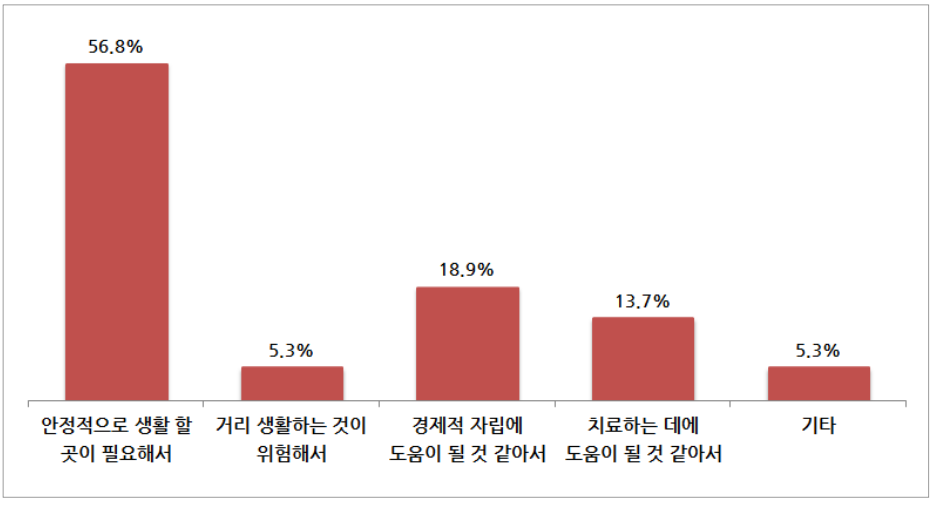

4) 자활시설 퇴소 계획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의 퇴소 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퇴소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2%(41명)로 나타났으며, 56.8%(54명)는 퇴소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3-6-24〉 자활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퇴소할 의향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41	43.2
없다	54	56.8
전체	95	100.0

자활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퇴소할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자활시설 퇴소 후 거처에 대한 계획에서는 지역사회에 집을 구해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78.0%(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의 계획이 없는 경우가 12.2%(5명),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 4.9%(2명), 가족이 아닌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으로 들어갈 예정과 기타가 각각 2.4%(1명) 순이었다.

〈표 3-6-25〉 자활시설 퇴소 후 거처에 대한 계획

단위 : 명, %

구분	n	%
가족에게 돌아갈 예정	2	4.9
가족이 아닌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으로 들어갈 예정	1	2.4
지역사회에 집을 구해서 독립생활	32	78.0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입소 희망	0	0.0
기타	1	2.4
분명한 계획 없음	5	12.2
전체	41	100.0

자활시설 퇴소 후 어느 곳에서 생활하기 원하는지 살펴보면, 43.9%(18명)의 응답자가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 지역 근처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재 시설 근처가 22.0%(9명),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지역 19.5%(8명), 원래 살던 동네가 9.8%(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26〉 자활시설 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

단위 : 명, %

구분	n	%
원래 살던 동네	4	9.8
현재 시설 근처	9	22.0
가족 또는 지인 근처	1	2.4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 지역 근처	18	43.9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지역	8	19.5
기타	1	2.4
전체	41	100.0

[그림 3-6-3] 자활시설 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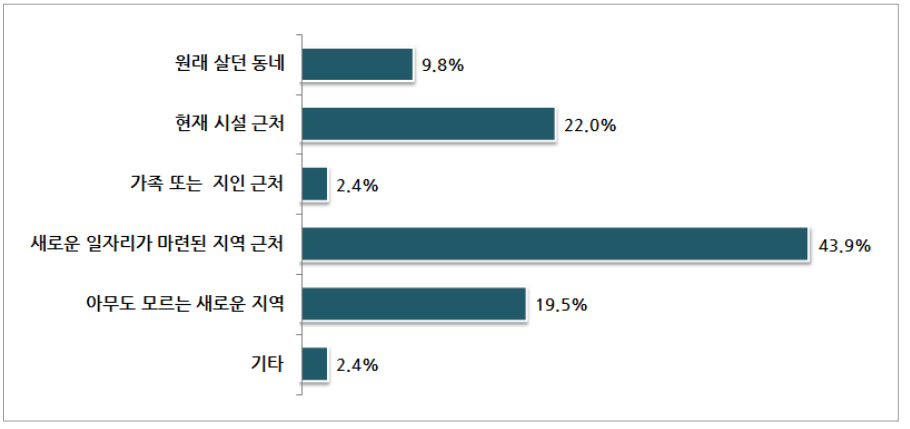

5) 자활시설 만족도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입소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만족도는 25점 만점 중 19.7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 중 '이곳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만족하는 편이다'가 4.1점, '이곳 직원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안다'가 3.8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가 3.8점, '이곳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가 4.0점, '이곳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3.9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3-6-27〉 자활시설 만족도

구분	평균 만족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9.7점	3.2점	11.0점	25.0점

〈표 3-6-28〉 항목별 자활시설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이곳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만족하는 편이다	4.1	0.8
이곳 직원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안다	3.8	1.0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	3.8	1.1
이곳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4.0	0.8
이곳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9	1.0

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경제활동

1) 근로활동 실태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7.4%(45명)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2.6%(50명)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2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재 근로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45	47.4
안 한다	50	52.6
전체	95	100.0

현재 일을 하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는 13.6일이었으며, 최소 2.5일에서 최대 30일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3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

단위 : 일

구분	평균 근로일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3.6	7.4	2.5	30.0

현재 일을 하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_건설이 57.8%(2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가 13.3%(6명),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가 8.9%(4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6.7%(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3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직업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단순노무직_건설	26	57.8
단순노무직_운송	1	2.2
단순노무직_제조	0	0.0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4	8.9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1	2.2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6	13.3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1	2.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	6.7
판매종사자	1	2.2
서비스종사자	1	2.2
전문가	0	0.0
사무종사자	0	0.0
관리자	1	2.2
전체	45	100.0

현재 일을 하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60.0%(2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비정규직(계약직) 13.3%(6명), 공공근로 11.1%(5명), 정규직(상용직) 8.9%(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3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고용 형태

단위 : 명, %

구분	n	%
정규직(상용직)	4	8.9
비정규직(계약직)	6	13.3
일용직	27	60.0
자활근로	2	4.4
공공근로	5	11.1
자영업	0	0.0
기타	1	2.2
전체	45	100.0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 중 어려움을 살펴보면,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가 24.4%(1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 22.2%(10명), 어려운 점이 없다 17.8%(8명), 수입이 적다 13.3%(6명),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11.1%(5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3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의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n	%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5	11.1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11	24.4
수입이 적다	6	13.3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다	1	2.2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	10	22.2
어려운 점이 없다	8	17.8
기타	4	8.9
전체	45	100.0

2) 구직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여부를 살펴보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54.0%(27명)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숙인은 46.0%(23명)로 나타났다.

〈표 3-6-3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23	46.0
안 한다	27	54.0
전체	50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는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이 26.1%(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관과 기타(인터넷 등)가 각각 21.7%(5명), 고용지원센터가 13.0%(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3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명, %

구분	n	%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	6	26.1
동료 및 지인	2	8.7
민간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2	8.7
사회복지기관	5	21.7
고용지원센터	3	13.0
기타	5	21.7
전체	23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은 건강회복과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취업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이 각각 21.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없음이 13.0%(3명), 일정한 주소지 확보와 직업교육이 각각 8.7%(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3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n	%
일정한 주소지 확보	2	8.7
직업교육	2	8.7
건강회복	5	21.7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5	21.7
취업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	5	21.7
주민등록 복원	0	0.0
기타	1	4.3
없음	3	13.0
전체	23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가 48.1%(1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가 33.3%(9명),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가 7.4%(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3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	2	7.4
나이가 많아서	9	33.3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13	48.1
나와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1	3.7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서	0	0.0
신분증이 없어서	0	0.0
알하고 싶지 않아서	1	3.7
기타	1	3.7
전체	27	100.0

3) 소득

(1) 근로소득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59.6%(56명)가 하계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4%(38명)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계에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응답은 39.4%(37명)였으며, 소득이 없다는 응답은 60.6%(57명)로 나타났다.

〈표 3-6-3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소득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하계	56 (59.6)	38 (40.4)
동계	37 (39.4)	57 (60.6)

근로활동을 하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은 93만 원이며, 최소 6만 5천 원에서 최대 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81만 원~100만 원이 17.9%(1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만 원~40만 원이 16.1%(9명), 20만 원 이하가 14.3%(8명), 61만 원~80만 원이 12.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을 하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동계 월평균 근로소득은 84만 원이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동계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81만 원~100만 원이 24.3%(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1만 원~40만 원이 18.9%(7명), 41만 원~60만 원과 61만 원~80만 원이 각각 13.5%(5명), 20만 원 이하가 8.1%(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3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하계		동계	
	n	%	n	%
20만 원 이하	8	14.3	3	8.1
21만 원 ~ 40만 원	9	16.1	7	18.9
41만 원 ~ 60만 원	5	8.9	5	13.5
61만 원 ~ 80만 원	7	12.5	5	13.5
81만 원 ~ 100만 원	10	17.9	9	24.3
101만 원 ~ 120만 원	1	1.8	2	5.4
121만 원 ~ 140만 원	2	3.6	1	2.7
141만 원 ~ 160만 원	4	7.1	1	2.7
161만 원 ~ 180만 원	5	8.9	2	5.4
181만 원 이상	5	9.0	2	5.4
전체	56	100.0	37	100.0

〈표 3-6-4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금액

구분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하계	56	932,410원(681,521)	65,000원	2,800,000원
동계	37	844,594원(583,545)	100,000원	2,800,000원

(2) 기타소득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기타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75.8%(72명)가 기타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2%(23명)에 불과하였다.

〈표 3-6-4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23	24.2
없다	72	75.8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기타소득은 34만 원이며, 최소 3만 5천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11만 원~20만 원이 47.8%(1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0만 원 이하와 101만 원 이상이 각각 13.0%(3명), 21만 원~30만 원과 31만 원~40만 원, 41만 원~50만 원이 각각 8.7%(2명) 순이었다.

〈표 3-6-4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3	13.0
11만 원 ~ 20만 원	11	47.8
21만 원 ~ 30만 원	2	8.7
31만 원 ~ 40만 원	2	8.7
41만 원 ~ 50만 원	2	8.7
51만 원 ~ 100만 원	0	0.0
101만 원 이상	3	13.0
전체	23	100.0

〈표 3-6-4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기타소득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23	347,174원(344,591)	35,000원	1,200,000원

(3) 주 수입원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 수입원은 근로활동이 70.7%(5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이 12.0%(9명), 자활사업 참여와 국민연금이 각각 5.3%(4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실업급여가 각각 2.7%(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4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주 수입원

단위 : 명, %

구분	n	%
근로활동	53	70.7
자활사업 참여	4	5.3
종교·복지단체 지원	0	0.0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얻음	0	0.0
친구 및 친인척 도움	0	0.0
국민연금	4	5.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	2.7
기초노령연금	9	12.0
장애수당	0	0.0
공공근로	1	1.3
실업급여	2	2.7
전체	75	100.0

4) 지출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유무를 살펴보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83.2%(79명)가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8%(16명)에 불과하였다.

〈표 3-6-4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79	83.2
없다	16	16.8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지출금액은 31만 원이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7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가 23.4%(1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만 원~20만 원이 22.1%(17명), 21만 원~30만 원이 18.2%(14명), 31만 원~40만 원과 41만 원~50만 원이 각각 10.4%(8명) 등의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84.5%가 50만 원 이하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4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금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18	23.4
11만 원 ~ 20만 원	17	22.1
21만 원 ~ 30만 원	14	18.2
31만 원 ~ 40만 원	8	10.4
41만 원 ~ 50만 원	8	10.4
51만 원 ~ 60만 원	6	7.8
61만 원 ~ 70만 원	0	0.0
71만 원 ~100만 원	5	6.5
101만 원 이상	1	1.3
전체	77	100.0

〈표 3-6-4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77	315,584원(264,844)	10,000원	1,700,000원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로 전체 지출에서 29.9%(44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식비 16.3%(24명), 여가활동비 8.8%(13명), 통신비 8.2%(12명), 교통비와 피복비가 각각 6.8%(10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4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지출 항목(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담배	44	29.9
식비	24	16.3
여가활동비	13	8.8
교통비	10	6.8
통신비	12	8.2
피복비	10	6.8
숙박비	1	0.7
보건의료비	4	2.7
음주	4	2.7
주거비	1	0.7
생활용품구입비	7	4.8
저축	3	2.0
가족송금	3	2.0
부채상환	4	2.7
도박/오락	2	1.4
기타	5	3.4
전체	147	100.0

5) 부채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유무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64.2%(61명), 부채가 없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35.8%(34명)로 나타났다.

〈표 3-6-4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61	64.2
없다	34	35.8
모름	0	0.0
전체	95	100.0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이 39.3%(2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핸드폰 요금 미납, 자동차 할부, 카드빚 등)가 16.4%(10명), 대출, 보증이 11.5%(7명), 사기가 9.8%(6명), 도박, 유흥, 오락이 6.6%(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5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발생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생활비	3	4.9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	24	39.3
의료비	3	4.9
대출, 보증	7	11.5
도박, 유흥, 오락	4	6.6
주민등록 도용	3	4.9
사기	6	9.8
기타	10	16.4
원인 모름	1	1.6
전체	61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부채액은 3,000만 원이며, 최소 3만 5천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23.0%(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00만 원 이하가 18.0%(11명),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14.8%(9명),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13.1%(8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채금액을 모른다고 응답한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3.3%(2명)로 조사되었다.

〈표 3-6-5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금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0만 원 이하	11	18.0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9	14.8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5	8.2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4	6.6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14	23.0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2	3.3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8	13.1
1억 원 이상	6	9.8
액수모름	2	3.3
전체	61	100.0

〈표 3-6-5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부채 금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61	30,316,356원(49,898,581)	35,000원	10,000,000원	200,000,000원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를 살펴보면, 48.4%(46명)가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응답하였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는 응답이 50.5%(48명)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 인지 모르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1.1%(1명)로 조사되었다.

〈표 3-6-5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그렇다	46	48.4
아니다	48	50.5
모름	1	1.1
전체	95	100.0

6) 저축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 여부를 살펴보면, 74.7%(71명)가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축하고 있다는 응답은 25.3%(24명)에 불과하였다.

〈표 3-6-5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24	25.3
안 한다	71	74.7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평균 저축액은 43만 원이며, 최소 2만 5천 원에서 최대 190만 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와 21만 원~30만 원이 각각 25.0%(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1만 원~100만 원이 20.9%(5명), 11만 원~20만 원이 16.7%(4명), 31만 원~50만 원이 8.3%(2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5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분포

단위 : 명, %

구분	n	%
10만 원 이하	6	25.0
11만 원 ~ 20만 원	4	16.7
21만 원 ~ 30만 원	6	25.0
31만 원 ~ 50만 원	2	8.3
51만 원 ~ 70만 원	0	0.0
71만 원 ~ 100만 원	5	20.9
101만 원 이상	1	4.2
전체	24	100.0

〈표 3-6-5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

빈도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24	431,667원(445,035)	25,000원	1,900,000원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저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74.6%(5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채 상환 중이어서가 12.7%(9명),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5.6%(4명), 기타가 4.2%(3명),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가 2.8%(2명) 순이었다.

〈표 3-6-5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돈이 없어서	53	74.6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5.6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2	2.8
부채 상환 중이어서	9	12.7
기타	3	4.2
전체	71	100.0

7) 노숙 전후 근로활동 비교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과 후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 직업 유형은 관리자가 29.5%(2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_건설이 18.9%(18명), 단순노무직_제조 9.5%(9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가 각각 6.3%(6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숙 이후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건설이 27.4%(2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가 6.3%(6명),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가 4.2%(4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3.2%(3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은 노숙 전후와 비교해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9.5%에서 52.6%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6-5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직업 유형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무직	9	9.5	50	52.6
단순노무직_건설	18	18.9	26	27.4
단순노무직_운송	3	3.2	1	1.1
단순노무직_제조	9	9.5	0	0.0
단순노무직_청소 및 경비	2	2.1	4	4.2
단순노무직_가사음식 및 판매	0	0.0	1	1.1
단순노무직_농림·어업·기타	4	4.2	6	6.3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3	3.2	1	1.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6.3	3	3.2
판매종사자	1	1.1	1	1.1
서비스종사자	6	6.3	1	1.1
전문가	1	1.1	0	0.0
사무종사자	5	5.3	0	0.0
관리자	28	29.5	1	1.1
기타	0	0.0	0	0.0
전체	95	100.0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자영업이 37.2%(3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상용직) 22.1%(19명), 비정규직(계약직)과 일용직이 각각 19.8%(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숙 후에는 일용직이 60.0%(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계약직)이 13.3%(6명), 자영업이 11.1%(5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5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 형태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정규직(상용직)	19	22.1	4	8.9
비정규직(계약직)	17	19.8	6	13.3
일용직	17	19.8	27	60.0
자활/공공근로	1	1.2	2	4.4
자영업	32	37.2	5	11.1
무급가족종사자	0	0.0	0	0.0
기타	0	0.0	1	2.2
전체	86	100.0	45	100.0

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건강 및 의료

1) 건강과 질병 대처방법

(1) 건강상태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35.8%(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29.5%(28명), 좋다 25.3%(24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6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n	%
매우 좋다	1	1.1
좋다	24	25.3
보통이다	28	29.5
나쁘다	34	35.8
매우 나쁘다	8	8.4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무는 장애가 없다는 응답이 85.3%(81명),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14.7%(14명)였다. 한편, 장애가 있지만, 등록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4명 중 5명으로 나타났다.

〈표 3-6-6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
비장애	81	85.3
장애	14	14.7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유형은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66.7%(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 22.2%(2명), 시각장애 1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6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장애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
지체장애	6	66.7
시각장애	1	11.1
청각장애	0	0.0
지적장애	2	22.2
정신장애	0	0.0
언어장애	0	0.0
합계	9	100.0

(2) 질병 및 치료 여부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 유무와 치료 여부를 살펴보면 <표 3-6-63>과 같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27.4%(26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순환계(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가 23.2%(22명), 내분비계(당뇨, 갑상선 관련 질환 등)가 16.8%(16명), 소화계(위염, 위궤양, 위암, 간염, 간경화 등)가 13.7%(13명), 알코올중독이 10.5%(10명) 등의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 치료 여부를 살펴보면, 질병이 있는 노숙인은 근골격계 질환(57.7%)과 알코올중독(40.0%)을 제외하고는 60%이상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순환계(100.0%), 내분비계(100.0%), 신경계(100.0%)는 100.0%의 높은 치료율을 보인다.

〈표 3-6-6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과 치료 여부(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질병 유무		치료 여부	
	있다	없다	예	아니오
근골격계 질환	26 (27.4)	69 (72.6)	15 (57.7)	11 (42.3)
소화계(위염, 위궤양, 위암, 간염, 간경화 등)	13 (13.7)	82 (86.3)	10 (76.9)	3 (23.1)
순환계(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22 (23.2)	73 (76.8)	22 (100.0)	0(0.0)
내분비계(당뇨, 갑상선 관련 질환 등)	16 (16.8)	79 (83.2)	16 (100.0)	0 (0.0)
호흡계(감염성 질환, 기도 관련 질환 등)	7 (7.4)	88 (92.6)	6(85.7)	1 (14.3)
피부질환	3 (3.2)	92 (96.8)	2 (66.7)	1 (33.3)
신경계(간질, 치매, 척수질환 등)	1 (1.1)	94 (98.9)	1 (100.0)	0 (0.0)
안/치과/귀 질환	10 (10.5)	85 (89.5)	7 (70.0)	3 (30.0)
정신질환	9 (9.5)	86 (90.5)	6 (66.7)	3 (33.3)
알코올중독	10 (10.5)	85 (89.5)	4 (40.0)	6 (60.0)
뇌질환	6 (6.3)	89 (93.7)	5 (83.3)	1 (16.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가 35.8%(34명)로 가장 많았으며,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가 31.6%(30명),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가 16.8%(16명), 개인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가 15.8%(15명) 순이었다.

〈표 3-6-6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 대처방법

단위 : 명, %

구분	n	%
개인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음	15	15.8
무료진료소 이용	34	35.8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음	30	31.6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음	16	16.8
전체	95	100.0

(3) 치료 경험

최근 1년간 아픈 곳이 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4.2%(23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병원비 부담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82.6%(19명)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가 13.0%(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6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
있다	23	24.2
없다	72	75.8
전체	95	100.0

<표 3-6-6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
병원비가 부담돼서	19	82.6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3	13.0
건강보험이 체납돼서	0	0.0
기타	1	4.3
전체	23	100.0

2) 우울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우울을 조사한 결과 <표 3-6-67>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을 최대 6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평균은 17.4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48.9%(45명)가 정상(16점 미만)에 해당하며, 우울(25점 이상) 27.2%(25명), 경도(16점~24점) 23.9%(22명) 순이었다.

<표 3-6-6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우울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16점 미만 (정상)	45	48.9	17.4점 (11.3)
16점 ~ 24점 (경도)	22	23.9	
25점 이상 (우울)	25	27.2	
전체	92	100.0	

3) 음주

(1) 음주 경험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경험을 살펴본 결과, 40.0%(38명)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가 33.7%(32명),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가 26.3%(25명) 순이었다.

〈표 3-6-6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38	40.0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	25	26.3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32	33.7
전체	95	100.0

(2) 음주 성향

음주 경험이 있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63명의 음주 성향을 조사한 결과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6.0%(29명)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5.4%(16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술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6.5%(23명)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술 마신 다음 날 숙취증상을 없애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3.8%(15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3-6-6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음주 성향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29 (46.0)	34 (54.0)	63 (100.0)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16 (25.4)	47 (74.6)	63 (100.0)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3 (36.5)	40 (63.5)	63 (100.0)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숙취증상을 없애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15 (23.8)	48 (76.2)	63 (100.0)

총 4개의 문항에 대해 2개 이상이 해당할 경우(2점 이상) 문제성 음주군으로 분류한다. '예'로 응답한 문항이 2개 이상이면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으로, 3개 이상이면 음주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알코올 의존'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음주 경험이 있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중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이 15.9%(10명), 음주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의존이 20.6%(13명)로, 조사대상자 중 36.5%가 문제성 음주군에 해당하였다.

〈표 3-6-7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 정도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0점	22	34.9	1.32점 (1.31)
1점	18	28.6	
2점	10	15.9	
3점	7	11.1	
4점	6	9.5	
전체	63	100.0	

4)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57.9%가 건강이 좋다고 응답했지만 노숙 후에는 26.4%가 좋다고 하였다. 노숙 전과 후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때, 좋다는 응답이 31.5%p 감소하여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표 3-6-7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단위 : 명, %

구분	노숙 전		노숙 후	
	n	%	n	%
매우 좋음	16	16.8	1	1.1
좋음	39	41.1	24	25.3
보통	21	22.1	28	29.5
나쁨	12	12.6	34	35.8
매우 나쁨	7	7.4	8	8.4
전체	95	100.0	95	100.0

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1) 자립시도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69.5%(66명)가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5%(29명)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3-6-7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시도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
한다	66	69.5
안 한다	29	30.5
전체	95	100.0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가 22.1%(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 20.0%(29명), '자활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여 중 또는 예정이다'가 13.1%(19명), '신용회복 및 저축을 하고 있다'가 11.7%(17명),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와 '병을 치료하고 있다'가 각각 7.6%(11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6명)로 나타났다.

〈표 3-6-7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구체적인 자립시도 방법(다중응답)

단위 : 명, %

구분	n	%
일을 하고 있다	29	20.0
노숙인시설이나 노숙인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	9	6.2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	11	7.6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32	22.1
병을 치료하고 있다(음주 치료 포함)	11	7.6
신용회복 및 저축을 하고 있다	17	11.7
앞으로 생활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	9	6.2
자활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여 중 또는 예정이다	19	13.1
기타	2	1.4
구체적인 활동 없음	6	4.1
전체	145	100.0

2) 근로활동능력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력, 만성적 증상, 자신감, 집중력, 자기통제 5개 항목을 살펴보았다.

먼저 근로활동능력 중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인 체력을 살펴보면,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가 29.5%(2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와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가 각각 27.4%(26명), '육체노동은 어렵다'가 11.6%(11명), '육체노동은 불가능하다'가 4.2%(4명)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체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점으로 나타났다.

〈표 3-6-7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체력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26	27.4	2.6점 (1.1)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28	29.5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26	27.4	
육체노동은 어렵다	11	11.6	
육체노동은 불가능하다	4	4.2	
전체	95	100.0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인 만성적 증상은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5.8%(34명)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28.4%(27명),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4.7%(14명),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13.7%(13명),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7.4%(7명)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만성적 증상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5점으로 나타났다.

〈표 3-6-7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34	35.8	2.5점 (1.4)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13	13.7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27	28.4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7	7.4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4	14.7	
전체	95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신감은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가 42.1%(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한다' 34.7%(33명),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13.7%(13명), '작심삼일이다' 6.3%(6명), '자포자기한다' 3.2%(3명)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신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1점으로 나타났다.

〈표 3-6-7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신감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	40	42.1	3.1점 (1.0)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한다	33	34.7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13	13.7	
작심삼일이다	6	6.3	
자포자기한다	3	3.2	
전체	95	100.0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집중력은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5.3%(43명)가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가 33.7%(32명),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9.5%(9명),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6.3%(6명),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본 것이 거의 없다' 5.3%(5명)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집중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0점으로 나타났다.

〈표 3-6-7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집중력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	43	45.3	3.0점 (1.2)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	32	33.7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6	6.3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9	9.5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본 것이 거의 없다	5	5.3	
전체	95	100.0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통제는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7.9%(36명)가 자기통제가 '잘 되는 편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30.5%(29명), '안 되는 편이다' 16.8%(16명), '잘 된다' 14.7%(14명)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52.6%가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16.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기통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5점으로 나타났다.

〈표 3-6-7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 - 자기통제

단위 : 명, %

구분	n	%	평균(S.D.)
잘 된다	14	14.7	2.5점 (0.9)
잘 되는 편이다	36	37.9	
보통이다	29	30.5	
안 되는 편이다	16	16.8	
안 된다	0	0.0	
전체	95	100.0	

3) 자립준비

자활시설 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3-6-77>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시설을 퇴소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를 측정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가 88.4%(8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난 한 달 동안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가 87.4%(83명),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다'가 85.3%(81명), '지난 한 달 동안 현재 이용(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리정돈을 잘 했다'가 80.0%(76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난 6개월 사이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5.3%), '지난 한 달 동안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했다'(15.8%), '저축을 하고 있다'(29.5%)는 다른 항목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6-7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 여부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경제적 자립준비 수준	현재 일을 하고 있다	45 (47.4)	50 (52.6)	95 (100.0)
	저축을 하고 있다	28 (29.5)	67 (70.5)	95 (100.0)
	현재 내 통장이 있다	68 (71.6)	27 (28.4)	95 (100.0)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꾸준히 일했다	55 (57.9)	40 (42.1)	95 (100.0)
일상생활 유지능력	지난 한 달 동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잘 참았다	80 (57.2)	15 (15.8)	95 (100.0)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	84 (88.4)	11 (11.6)	95 (100.0)
	지난 한달 동안 현재 이용(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리정돈을 잘 했다	76 (80.0)	19 (20.0)	95 (100.0)
	지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 했다	75 (78.9)	20 (21.1)	95 (100.0)
관계유지 능력	지난 한 달 동안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했다	72 (15.8)	23 (24.2)	95 (100.0)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다	81 (85.3)	14 (14.7)	95 (100.0)
	지난 한 달 동안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	83 (87.4)	12 (12.6)	95 (100.0)
자립경험	지난 6개월 사이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	5 (5.3)	90 (94.7)	95 (100.0)
	지난 6개월 사이 한 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	26 (27.4)	69 (72.6)	95 (100.0)

조사대상자의 자립준비도를 13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자립준비도 평균은 8.2점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도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 일상생활유지능력 평균이 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관계유지능력 2.5점, 경제적 자립준비수준 2.1점, 자립경험 0.3점 순이었다. 자립준비도 하위요인 중에서 자립경험 차원의 수준이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도

단위 :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자립준비수준	2.1	1.25
일상생활유지능력	3.3	1.03
관계유지능력	2.5	0.71
자립경험	0.3	0.51
자립준비도 (전체)	8.2	2.22

4) 자립을 위한 지원 욕구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이 주택을 구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78.7%(74명)가 초기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 72.3%(68명),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 69.1%(65명),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67.0%(63명) 등의 순이었다.

〈표 3-6-8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예	아니오	전체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제도, 시장 상황, 지원 서비스 등)	65 (69.1)	29 (30.9)	94 (100.0)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거처 찾기, 계약 등에 대한 지원)	63 (67.0)	31 (33.0)	94 (100.0)
초기 정착 지원(가구/집기 구비, 지원 서비스 연결)	74 (78.7)	20 (21.3)	94 (100.0)
주거 유지를 위해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 (알코올중독, 정신건강 등)	54 (57.4)	40 (42.6)	94 (100.0)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정기적 연락)	68 (72.3)	26 (27.7)	94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표 3-6-82>와 같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 및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가 26.0%(74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지원 19.6%(56점), 주거지원 17.9%(51점), 고용지원 13.0%(37점), 채무상담지원 6.3%(18점) 등의 순이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 의료지원, 주거지원으로 나타났다.

〈표 3-6-8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총점[1)]	순위
	n	%	n	%		
소득보조	28	29.5	18	18.9	74(26.0)	1
의료지원	21	22.1	14	14.7	56(19.6)	2
고용지원	13	13.7	11	11.6	37(13.0)	4
주거지원	13	13.7	25	26.3	51(17.9)	3
심리지원	2	2.1	2	2.1	6(2.1)	7
채무상담지원	6	6.3	6	6.3	18(6.3)	6
문화활동지원	1	1.1	2	2.1	4(1.4)	10
교육	3	3.2	0	0.0	6(2.1)	7
노숙인시설 내 독립공간 마련	2	2.1	1	1.1	5(1.8)	9
필요한 지원 없음	6	6.3	16	16.8	28(9.8)	5
전체	95	100.0	95	100.0	285(100.0)	-

1) 총점 = (1순위 빈도 × 2점) + (2순위 빈도 × 1점)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분석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211명의 성별은 남성이 93.4%, 여성이 6.6%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거리노숙인의 98.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79.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100.0%가 남성이다. 노숙인의 평균 연령은 52.9세이며, 연령대는 50대 37.0%, 40대 21.3%, 60대 19.4%, 30대 11.8%, 70대 이상 7.5%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30대 이하의 청년 노숙인도 20.2%를 차지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유형별로 거리,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모두 5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거리노숙인은 20~30대, 시설 거주 노숙인은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44.0%,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6%, 중학교 졸업 20.0%, 대학교 졸업 10.4%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노숙 문제가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이 다른 노숙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았으며,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노숙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관계는 49.3%가 미혼이며, 동거 27.5%, 기혼 9.0%, 별거, 이혼, 사별이 각각 4.7%의 순이었다. 모든 유형에서 미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숙인의 사회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다른 노숙인 유형보다 결혼하거나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숙인의 97.6%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말소는 2.4%에 불과하였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92.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100.0%,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98.9%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등록 상태는 현재 입소한 시설에 등록이 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전 지역에 등록 31.8%, 다른 지역에 등록 15.2%, 말소 2.4%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48.1%가 대전지역에 등록하고 있으며, 시설 거주 노숙인은 현재 생활하는 시설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비수급자 59.2%, 시설수급자 29.9%, 일반수급자 6.2%, 차상위계층 4.3%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83.0% 이상이 비수급자이며,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시설 수급자로 책정되기 때문에 100.0% 시설수급자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4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서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가 각각 13.2% 등의 순이었다. 모든 유형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거리노숙인은 불안정한 거처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2. 가구 특성

1) 노숙 전 가족 동거 여부

노숙 전 가족 동거 여부는 노숙인의 56.9%가 노숙 생활 전에 가족이나 친인척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37.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53.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0.0%가 가족 혹은 친지와 같이 살았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숙 전 같이 살았던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23.0%, 자녀 21.5%, 어머니 20.3%, 아버지 15.3%, 형제·자매 11.5%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노숙 전에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비율이 높았으며,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배우자가 높게 나타났다.

2) 가족 및 친지와의 관계망

노숙인의 64.0%가 가족 및 친지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많은 노숙인이 가족 및 친인척과 연락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81.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54.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60.0%가 가족 및 친인척과 연락이 단절되었다.

가족이나 친지와 연락 정도는 노숙인의 26.5%가 가족/친지가 있지만 연락처가 없거나 잊어버렸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친지가 없다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지내는 경우가 각각 19.0%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연락 단절이 가장 심각하였으며, 시설 거주 노숙인은 상대적으로 관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가족 관계가 전체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고립이 상당히 심각하였다. 노숙인이 가족 및 친지와 연락하는 방법은 직접 만남

75.0%, 전화 22.4%, 이메일 또는 우편 2.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73.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78.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73.7%가 가족이나 친지와 직접 만난다고 답하였다.

3. 노숙 전 상황

1) 노숙생활 시작

노숙 원인은 실직 및 사업실패, 부채 및 신용불량, 주거지 상실 등 경제적 요인이 5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28.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2.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2.5%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노숙생활에 진입하게 되었다.

노숙인이 처음으로 노숙을 시작한 시기는 2011년~2015년에 노숙을 시작한 노숙인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점으로 기점으로 실직, 사업실패와 같은 사건으로 가족해체, 주거지 상실 등의 빈곤화 과정을 거쳐 2000년대 중반부터 노숙으로 이르게 된 노숙인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은 2011년~2015년이 42.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2001년~2005년이 31.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2011~2015년이 31.6%로 가장 많았다.

노숙을 경험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노숙인이 68.0%로 많은 노숙인이 장기적으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25.9%가 6년~10년,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1.1%가 11년~15년,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9.8%가 6년~10년 동안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을 시작한 연령은 40대가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시작 연령이 30대 이하도 40.9%로 나타나 노숙인들이 이른 나이에 노숙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숙인의 45.0%가 대전에서 처음 노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이 중간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입되는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대전에서 노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27.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53.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9.5%가 대전지역에서 노숙을 시작하였다.

2) 노숙 전 경제활동

노숙인 대다수가 노숙 이전에 근로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85.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77.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90.5%가 근로경험이 있었다.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노숙인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_건설 25.0%, 관리자 18.3%, 단순노무직_제조 11.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8.3%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단순노무직_건설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관리자의 비율이 높았다.

노숙 전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노숙인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 32.2%, 자영업 23.9%, 정규직(상용직) 22.2%, 비정규직(계약직) 19.4%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일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자영업의 비율이 높았다.

근로활동 경험이 있던 노숙인의 노숙 전 월평균 소득은 342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범위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소득분포는 51만 원~100만 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151만 원~200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숙 전 건강상태

노숙 전 건강상태는 58.8%가 좋았다고 응답한 반면, 20.4%는 건강이 나빴다고 답하였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47.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61.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57.9%가 노숙 전 건강이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4)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 탐색 및 이용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알아본 노숙인은 19.0%(40명)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15.2%(32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22.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82.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17.4%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알아본 적이 있으며, 그 중 거리노숙인의 16.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14.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14.7%만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5) 노숙 전 주거형태

노숙 전 주거형태는 월세 37.4%, 자가 34.1%, 전세 14.2%, 직장 내 숙소 7.6%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월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자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4. 주거생활

1) 거주 경험 및 범죄 피해 경험

노숙인이 취약 거처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곳은 노숙인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이 16.9%로 이용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관, 여인숙, 모텔 등 14.0%, 거리노숙 13.3%, 일시보호시설 10.8%,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 9.9%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19.3%)은 여관, 여인숙, 모텔 등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34.8%)은 노숙인재활/요양시설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33.0%)은 자활시설(구 노숙인쉼터)의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숙생활 동안 범죄 피해 경험은 언어폭력 및 모욕이 13.7%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 및 사기 10.4%, 구타 6.6%, 금품갈취 4.3%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은 노숙생활 동안 여러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거리노숙인의 노숙기간 및 특성

(1) 노숙 시작 시기와 기간

거리노숙인이 거리노숙을 시작한 시기는 2011~2015년이 41.7%로 가장 많았고, 2006년~2010년 27.1%, 2001년~2005년 10.4%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8년이었으며, 평균 거리노숙 기간은 7.4년이었다.

(2) 시설 이용 시작 시기와 기간

거리노숙인이 처음으로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 시기는 2011년~2015년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 이후 18.4%, 2006년~2010년 13.2% 등의 순이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2년이었으며, 평균 일시보호시설 이용 기간은 3.8년이었다.

(3) 거주지 선택

거리노숙인이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가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용하기 때문에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가 각각 9.4%, 주변에 동료 및 지인들이 있어서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가 각각 7.5% 등의 순이었다. 현재 거주지와 관련한 어려움은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이 41.3%, 경제적인 어려움 30.4%,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15.2% 등의 순이었다.

(4) 노숙인·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거리노숙인이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몰라서 34.9%,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20.6%,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때문에 7.9% 등의 순이었다.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거리노숙인의 시설의 존재, 즉 시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기 보다는 시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설 입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해도 시설을 경험하지 않아 시설 입소나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제공해도 노숙인 동료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듣고 오해하여 시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5)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거리노숙인이 이용한 복지서비스는 무료급식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시설 이용 19.7%, 생필품 지원 17.6%, 의료서비스(무료진료) 15.5%, 임시주거지원 11.9% 등의 순이었다.

3) 시설노숙인의 입소기간 및 특성

(1) 시설 입소 시기 및 거주기간

시설 거주 노숙인의 시설 입소 시기를 살펴보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모두 2011년~2015년에 입소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대다수가 2000년 이후에 시설에 입소하였다. 시설 평균 거주 기간은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평균 8.4년,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평균 5.9년으로 조사되었다.

현 시설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64.4%가 현 시설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7.8년을 거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76.8%가 5년 미만으로 현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3.3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시설 입소 경로와 이유

시설 입소 경로는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경찰이나 공공 기관 등의 소개(58.1%)가 가장 많았으며,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36.8%)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소 이유는 두 시설 거주 노숙인 모두 안정적으로 생활할 곳이 필요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소 이유는 각 시설의 기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활시설은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시설은 노숙인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시설 퇴소 계획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의 퇴소 의향을 살펴본 결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경우 퇴소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5.8%에 불과한 반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43.2%가 퇴소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시설 퇴소 후 거처에 대한 계획은 두 시설 거주 노숙인 모두 지역사회에 집을 구해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다. 시설 퇴소 후 생활하고 싶은 곳은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원래 살던 동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 지역 근처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4) 시설 만족도

시설 거주 노숙인의 입소시설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5점 만점 중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평균 20.4점,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평균 19.7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에 대한 항목은 낮게 나타났다.

5. 경제활동

1) 근로활동 실태

노숙인의 근로활동은 43.6%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33.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6.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7.4%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일을 하는 노숙인의 월평균 근로일 수는 16일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 14.6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20.7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 13.6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는 노숙인의 직업 유형은 88.0%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일용직이 가장 많았으며,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자활근로가 많았다. 직업 유형에서 단순노무직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 고용형태에서도 대다수가 일용직과 자활 및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숙인의 근로활동의 어려움은 어려운 점이 없다 30.4%,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18.5%,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 17.4%, 수입이 적다 16.3%,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7.6% 등의 순이었다.

2) 구직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노숙인의 71.4%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19.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12.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6.0%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구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일정한 주소지 확보 23.5%, 건강회복 20.6%, 채무해소 17.6%, 취업알선, 구직정보 제공 17.6%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일정한 주소지 확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건강회복과 채무해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 노숙인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가 59.5%로 가장 많고 나이가 많아서(16.7%),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6.0%), 나와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6%)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와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조사대상자가 많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71.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58.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8.1%가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3) 소득

(1) 근로소득

노숙인의 근로소득은 하계에 근로소득이 있는 노숙인은 53.1%, 동계에 근로소득이 있는 노숙인은 42.1%로, 노숙인의 근로소득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하계와 동계의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었으며,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시설 내 재활 작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하계와 동계의 근로소득에 차이가 없었다.

근로활동을 하는 노숙인의 근로소득은 동계, 하계 모두 20만 원~10만 원의 소득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하계 소득은 101만 원 이상의 소득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계소득은 40만 원이하의 소득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활동을 하는 노숙인의 하계 월평균 근로소득은 79만 원, 동계 월평균 근로소득은 67만 원으로 나타났다.

(2) 기타소득

노숙인의 25.6%(54명)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기타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22.2%,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0.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4.2%가 기타소득이 있었다. 노숙인의 평균 기타소득은 30만 원이며, 기타소득 분포는 11만 원~20만 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주 수입원

노숙인의 주 수입원은 근로활동(52.2%)이 가장 많았고 자활사업 참여 19.3%, 기초노령연금 8.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6.8%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의 수입원은 대부분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여와 같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소득 이외의 항목 중에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적연금이다. 이외에 재산소득은 전혀 없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근로활동이, 재활시설 거주노숙인원 자활사업 참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 지출

노숙인의 77.3%가 지출이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77.8%,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67.7%, 자활시설 거주노숙인의 83.2%가 지출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지출금액은 30만 원이며, 지출금액 분포는 10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노숙인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로 전체 지출의 27.0%였으며 식비 23.0%, 여가활동비 7.0%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은 식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시설 거주 노숙인은 담배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부채

노숙인의 53.6%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노숙인이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51.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8.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64.2%가 부채가 있었다.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이 25.7%로 가장 많았고, 기타(핸드폰 요금 미납, 자동차 할부, 카드빚 등) 17.7%, 사기 15.9%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은 사기(28.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대출, 보증(20.8%),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39.9%)로 부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평균 부채액은 4,5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23.9%)의 부채액 규모가 가장 높았다. 비교적 고액인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도 8.9%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재활시설 거주노숙인은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의 금액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노숙인의 40.3%가 금융채무불이행자이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40.7%,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7.4%,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8.4%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조사되었다.

6) 저축

노숙인의 24.2%(51명)가 저축을 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11.1%,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3.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5.3%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노숙인이 거리노숙인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저축 금액은 41만 원이며, 대다수 노숙인이 3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76.1%로 가장 많았고, 부채 상환 중이어서 10.1%, 필요성을 못 느껴서 7.5% 등의 순이었다.

7) 노숙 전후 근로활동 비교

노숙인의 노숙 전과 후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노숙 전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이 46.1%로 가장 많지만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던 경향이 있다. 반면, 노숙 이후의 직업 유형은 38.4%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대다수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전반적으로 다른 직업군에서 일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노숙 전후와 비교해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14.7%에서 56.4%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숙인의 노숙 전후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일용직(32.4%)이 가장 많지만 다양한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반면, 노숙 후에는 대다수가 일용직(44.6%)과 자활/공공근로(30.4%)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건강 및 의료

1) 건강과 질병 대처방법

노숙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40.3%가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42.6%,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2.3%,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4.2%가 현재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무는 장애가 없다는 응답이 83.9%,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16.1%였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9.3%,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4.2%,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14.7%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거주하는 재활시설의 특성상 장애인이 많이 때문으로 보인다.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32.0%, 지체장애 44.0%, 지적장애 12.0%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은 지체장애인(50.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정신장애인(66.7%),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지체장애인(66.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 20.3%, 순환계(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 16.1%, 내분비계(당뇨, 갑상선 관련 질환 등) 14.7%, 소화계(위염, 위궤양, 위암, 간염, 간경화 등) 12.8%, 정신질환 12.8%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과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근골격계 질환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치료 여부를 살펴보면, 질병이 있는 노숙인은 근골격계 질환과 알코올중독을 제외하고는 60% 이상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주로 대처하는 방법은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가 42.9%,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23.3%,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20.5%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59.3%가 일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93.4%가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5.8%가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최근 1년간 아픈 곳이 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노숙인의 22.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44.4%,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1.6%,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24.2%가 경험이 있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병원비가 부담돼서 83.3%,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6.3%, 건강보험이 체납돼서 4.2%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노숙인이 병원비가 부담돼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우울

노숙인의 우울 수준은 최대 6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평균이 17.4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정도는 47.8%가 정상(16점 미만)에 해당하며, 경도(16점~24점) 26.8%, 우울(25점 이상) 25.4% 순으로, 과반수가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우울 수준은 평균 22.3점,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우울 수준은 평균 12.8점,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우울 수준은 평균 17.4점이었다. 노숙인 중 상대적으로 거리노숙인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주

노숙인의 음주 경험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45.0%,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 28.4%,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 26.5% 순이었다. 노숙인은 알코올중독이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는 편견이 있지만, 현재 술을 마시지 않는 노숙인의 비율이 54.9%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63.0%,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7.1%,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0.0%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노숙인이 다른 유형보다 술을 마시는 비율이 높았다.

음주 경험이 있는 노숙인 151명 중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이 19.3%, 음주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의존이 23.3%로, 조사대상자 중 42.6%가 문제성 음주군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45.5%,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8.9%,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36.5%가 문제성 음주군에 해당한다.

4) 노숙 전후 건강상태 비교

노숙인의 노숙 전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노숙 전에는 58.5%가 건강이 좋다고 응답했지만, 노숙 후에는 32.2%가 좋다고 답하였다. 노숙 전과 후의 건강상태를 비교했을 때, 좋다는 응답이 26.6%p감소하여 노숙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7. 자립 및 근로활동능력

1) 자립시도

노숙인의 63.5%가 노숙 또는 시설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을 하고 있다 21.5%,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20.1%, 자활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여 중 또는 예정이다 11.7%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75.9%,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43.5%,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69.5%가 자립시도를 하고 있었다.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시설 특성상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유형의 노숙인보다 자립 시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2) 근로활동능력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력, 만성적 증상, 자신감, 집중력, 자기통제 5개 항목을 살펴보았다. 근로활동능력 중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체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점,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인 만성적 증상 평균 점수는 2.6점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평균 점수는 3.1점,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집중력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나타났다.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통제 평균 점수는 2.7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근로활동능력은 체력과 만성적 증상이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자립준비

노숙인이 노숙을 탈피하거나 시설을 퇴소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자립과 자립경험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도는 13점 만점 중 7.9점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도의 정도를 분류한 결과, 일상생활유지능력 평균이 3.3점, 관계유지능력 2.4점, 경제적 자립준비수준 1.9점, 자립경험 0.4점 순이었으며, 자립경험 차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자립준비도 평균은 7.2점,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도 평균은 8.1점,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의 자립준비도 평균은 8.2점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는 거리노숙인보다 시설 거주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자립을 위한 지원 욕구

노숙인이 주택을 구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은 76.7%가 초기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 71.0%,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 70.5%,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69.5%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은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과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초기 정착 지원과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이,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초기 정착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노숙인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가 23.4%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원 21.3%, 의료지원 19.6%, 고용지원 12.8%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은 주거지원, 시설 거주 노숙인은 소득보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거리노숙인은 심리지원, 재활시설 거주노숙인은 노숙인 시설 내 독립공간 마련, 자활시설 거주 노숙인은 채무상담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아 거주 유형에 따라 자립을 위한 지원 욕구에 차이가 나타났다.

제2절 제언

1. 노숙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노숙인정책은 주로 이미 발생한 노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숙인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노숙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노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숙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핵심은 정보제공과 상담이다. 노숙에 이를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하여 문제를 완화하거나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예방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과 주거상담이 필요하다. 노숙예방을 위해서는 노숙 원인을 찾아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노숙에 이르는 경로에서 적절한 개입 지점을 찾고 효과적인 개입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노숙인이 노숙생활에 진입하게 된 이유 중 실직 및 사업실패, 부채 및 신용불량, 주거지 상실 등 경제적 요인이 5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노숙 전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숙인은 15.2%(32명)에 불과하였으며, 노숙 전 이용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이 48.6%(18명), 긴급지원이 24.3%(9명)로 나타났다. 노숙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이 상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주거상담, 의료서비스, 신용불량 및 채무문제 상담, 고용알선 등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노숙의 위험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낮고 예방기능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숙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담과 정보인데,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담이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대전시는 현재 인력 및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서울시의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같은 또 다른 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설치하는 것은 대전시에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 보다 기존 시설의 실무 담당 인력의 충원과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주거, 고용, 보건, 복지 등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쪽방상담소가 쪽방 주민, 여관·여인숙 및 고시원 거주자, 사우나·만화방·다방·PC방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자 등 노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주거상담 및 다각적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숙예방을 위해서는 노숙위기 대상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노숙인 시설, 관련 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노숙인 당사자들이 그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숙 당사자가 서비스에 근접해 있지 않는 한 노숙인이 제도적 지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노숙인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이나 매입임대주택사업,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안내와 알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아웃리치 상담원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거주하거나 노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노숙인은 지원 사업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노숙인의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웃리치 강화와 대전시 노숙인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관·여인숙 및 고시원 거주자, PC방이나 사우나 등의 다중이용시설 거주자와 같이 노숙인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보편적인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노숙인이 실직 및 사업실패, 사기, 질환 및 장애, 주거지 상실 등으로 노숙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노숙인이 노숙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도를 모르거나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입 시기를 놓치고 있다.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상담을 비롯하여 긴급복지, 기초생활, 일자리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을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사회서비스 체계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주거 지원

1) 자립 전 중간단계의 시설 필요

주거지원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즉 주거지원은 노숙 진입부터 탈노숙 과정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노숙인이 자활·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숙인이 주거와 일자리를 획득하더라도 다시 노숙생활로 돌아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활의지의 부족, 고립감·고독감 등 개인적인 문제도 작용하지만, 사회적 관계망 및 지지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탈시설을 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자립만으로는 사회로부터 단절을 경험한 노숙인에게 사회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노숙인은 노숙화 과정에서 가정, 이웃,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역할이 상실된다. 이런 노숙화 과정에서 많은 노숙인이 소외감, 심리적 열등감, 분포,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주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곤란함을 느낀다. 이것은 노숙 생활을 벗어나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혹은 직장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결국 사회복귀를 막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숙인이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하기 전에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는 노숙인시설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중간단계의 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약 4~15명 내외의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책임을 분담하고 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직업을 갖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이 가지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략 1~2년 동안 식사 준비 및 영양관리, 청소, 위생관리, 건강관리, 저축 등 일상생활기술을 습득하여 점진적인 사회적응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중간단계의 시설에서 사회복귀 후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자립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해결책이나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립생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귀의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며 적절한 재활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립생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매입임대주택, 월세보조와 같은 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지체계들(동 주민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는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노숙인이 탈노숙과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노숙인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지원 확대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적인 것만이 아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즉 주거의 안정성, 적절성,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노숙인의 자립 및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지원을 꼽았으며,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로 초기 정착 지원, 가능한 주거대안에 대한 상담,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노숙인 또한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노숙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대전시의 주거지원은 임시주거지원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 사업이 있다. 대전시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시주거 지원사업은 지원받는 월세방이 대부분 쪽방이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청대기 기간, 선정과정, 임대주택 위치, 임대주택 수 등으로 인해 입주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노숙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유지하고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능력이 있고 자립의지가 강한 노숙인은 시설퇴소 후 생활하고 싶은 곳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곳이나 일자리를 찾기 쉬운 곳에 생활하고 싶어 한다. 반면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시설퇴소 후 현재 시설 근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거주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노숙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주택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노숙인 수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현재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주택유형, 주택위치, 예산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주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의료지원 접근성 강화

노숙인의 건강문제는 노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노숙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 건강 악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생계 및 주거를 유지하지 못해 노숙화가 진행되기도 하고, 노숙생활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자립 및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취약 집단에서의 건강과 질병 문제는 생활의 질 이전에 삶과 직결된다. 이미 부족한 사회경제적 자원 속에서 건강과 질병 문제는 어떠한 완충도 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노숙에 진입하게 된 원인 중 질환 및 장애가 13.8%로 조사되었으며, 노숙인의 59.5%가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은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노숙인의 의료지원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중 의료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고 경제적 능력이 낮은 노숙인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숙인 의료급여가 까다로운 자격 조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이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노숙인시설 등에서 노숙생활을 3개월 이상 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질병·부상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숙인은 결국 건강보험 또는 무료진료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주민등록말소 또는 장기간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만약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를 중단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하여 대전시는 자체사업으로 상설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시설별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 수급자는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달리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하므로 시간적, 지리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 1종 노숙인 수급자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제1차,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차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발부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노숙인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고,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제1차,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2)]대전시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각 구 보건소와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신생정신병원과 선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제2차 병원 중 한 기관이 정신병원이어서 실질적으로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기능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노숙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몸이 아픈 노숙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더욱이 노숙인은 적절한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로부터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은 비노숙인보다 크게 낮다. 결국,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접근성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이용 감소나 치료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노숙인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적다는 것은 진료과별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제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보건소이고, 제2차 의료기관은 민간 준종합병원 혹은 유사한 규모의 공공병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의료기관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흉부외과, 안과, 피부과 등의 전문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제1차, 제2차 의료기관을 거쳐 제3차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한다.

노숙인 진료시설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용자와 병원의 거리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정시설이 아니면 보건소와 공공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지정 시설에 요양병원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은 노숙인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숙인 제1차, 제2차 의료기관의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노숙인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기준을

2)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 기관은 2012년 7월 기준으로 248개소로 종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공립병원 18개소에 불과하다(검색 2016년 11월 8일). ; http://www.hira.or.kr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설 출입이 잦은 노숙인의 특성상 3개월 이상 이라는 입소 조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시설 중심으로 노숙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받는 절차도 수급자 선정의 장벽이 된다.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숙인시설(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고 급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노숙인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은 의료급여 수급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다. 노숙인복지시설 입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노숙인 1종 의료급여는 신청창구가 제한되어 있다. 즉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머물지 않는 노숙인의 특성과 주변에 노숙인시설이 없는 지역적 여건, 거리노숙으로 인해 접근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를 넘어서 제도 자체의 접근성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시설 중심 선정이 아닌 현실적인 선정 기준으로 바꿔야 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6개월 미만 체납하였더라도 수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노숙인 수급자 본인부담금과 간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진료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제도에서 노숙인은 타 의료급여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액의 비급여 진료비라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정 의료기관이 노숙인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노숙인은 사회적 지지망이 약하다. 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노숙인인 미혼인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을 하지 않거나 가족을 구성한 경험이 전혀 없는 노숙인도 있었다. 많은 노숙인이 가족 및 친인척과 연락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 사회관계망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노숙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을 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노숙인이 입원한 경우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간병을 하여 담당 노숙인복지시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숙인이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노숙인이 병원에서 퇴원할 시 사후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노숙인이 입원 후 퇴원하게 되면 상당 기간 안정적인 주거, 식사지원과 더불어 질병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퇴원

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하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에서 퇴원한 노숙인이 재노숙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의뢰, 매입임대주택 지원, 임대료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상담·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4. 고용지원

1)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필요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노숙으로 이르는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실직, 사업실패, 부채 및 신용불량 등 경제적 문제는 소득과 연결되는 문제로 이는 노숙생활 진입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노숙생활에 진입하게 된 이유로 실직 및 사업실패, 부채 및 신용불량 등 경제적 요인이 39.1%로 나타났으며, 부채가 있는 노숙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40.3%가 신용불량자로 조사되었으며, 최대 21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의 부채문제는 자활·자립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든다. 부채는 일을 해도 신용불량이라는 것 때문에 노숙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사라지게 한다.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가 확보되어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노숙에 재진입하는 비율이 높고 채무에 대한 비관적 생각으로 자립의지를 상실하기 때문에(현시웅·최희경, 2008; 박은철 외, 2015), 먼저 신용회복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립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성공적인 탈노숙을 위해서는 부채를 해소하여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센터에 연계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에 대해 법률구조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노숙인이 무료 법률구조상담을 알지 못하여 이용을 못하거나 신용회복 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노숙인이 명의도용 및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와 과중체납으로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잡한 법적 절차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노숙인들이 자립 및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채무해소를 꼽고 있다. 부채 해결 또는 신용 회복은 노숙을 예방하고 재노숙을 방지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이다. 또한 신용회복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재무설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숙인을 위해 저축 및 재무설계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시, 노숙인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종합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 및 파산신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인파산·면책신청, 개인워크아웃과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 대행, 소송비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재기를 노리는 노숙인들을 위하여 체납세금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 분납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여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통장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실직은 노숙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고용은 곧 임금과 연결되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은 노숙의 발생 원인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노숙인 중 43.6%만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77.0%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단순노무직_건설에 종사하는 노숙인이 많아 근로소득이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노숙인의 대다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채무해소, 취업알선 및 구직정보 제공, 직업교육을 꼽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노숙인의 취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취업교육과 고용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노숙인시설에서 지원되는 고용지원 업무는 자치구나 고용센터 등 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과 알선업무가 중심이 되어 있다. 더불어 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초취업교육, 자활사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 대한 노숙인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현재 노숙인의 고용지원 서비스는 이들의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아니며 고용기간도 한시적이다. 따라서 노숙인이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급여의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별 근로능력에 따라 일자리 내용과 기간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당장 생활비가 없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이 있어, 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활사업 급여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활근로 사업의 급여는 월 80만 원 수준으로 노숙인이 자립을 준비하기엔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단순노무직_

건설에 종사하는 노숙인은 건설 일용직을 통한 수입보다 자활사업의 급여가 훨씬 적어 자활사업 참여에 저조하다. 따라서 실제 자활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급여 수준을 최저 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자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노숙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자활사업은 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이 참여할 수 있어 조건이 되지 않으면 노숙인들이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노숙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별 능력에 따라 일자리 내용과 기간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나, 다양한 일자리 지원은 부족하다. 근로 활동을 하는 대다수 노숙인이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용직에 길들여져 있다.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의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물론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성도 낮은 편이다. 특히 만성적인 노숙인이나 불규칙적인 생활을 오래 지속해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이나 관계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지속적인고 안정적인 고용 기간의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3개월, 6개월, 9개월 등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월급이 아닌 주급, 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이 된 이후에도 근로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자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상담, 일에 대한 동기부여, 직업 관련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계 기간에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노숙인은 단순노무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실제 고용 형태에서도 대다수가 일용직과 정부와 노숙인시설에서 제공하는 자활 및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울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으며 자활사업도 12월이면 사업이 끝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계에 근로소득이 있는 노숙인은 53.1%(111명), 동계에 근로소득이 있는 노숙인은 42.1%(88명)이며, 동계의 월평균 근로소득 또한 하계보다 소득이 낮았다. 겨울철은 원래 일자리가 없는 기간으로 공공일자리 조차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겨울 동안 노숙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곧바로 일반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가볍고 쉬운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체험이나 훈련을 받도록 하는 중간적 취업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근로활동을 하는 노숙인이 자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5.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강화

1) 노숙인시설의 전문성 향상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이 활동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의 배치가 중요하다. 현재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의 노숙인시설 형태에 따른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의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최소 인원을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노숙인자활시설 중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은 시설장 1명, 상담요원 1명,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이상, 조리원 1명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자활시설은 시설관리 및 입·퇴소 관리, 노숙인의 생활지도, 자활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를 위해 최소 2명의 상담요원 및 생활복지사가 1일 2교대 형태의 근무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설장이나 조리원이 야간 및 휴일근무를 지원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의 근무 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은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설규모에 따라 인력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채용을 위한 경력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다르면,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종별 자격 기준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포함되어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직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숙인재활시설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명 혹은 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보건관련기관의 근무경력의 인정범위가 노숙인·부랑인시설의 경우 80%만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c). 더욱이 정신보건전문요원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전문 경력에서 노숙인시설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노숙인시설을 기피하고 있다.

더불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인력기준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종사자는 현장보호 활동 중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발굴하고 상담할 기회가 많아 정신보건전문요원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직종별 자격 기준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노숙인시설에서의 근무를 정신건강 업무로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2) 노숙인시설 체계의 재검토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노숙인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되나 실제로는 이용자가 혼재되어 있어 시설유형에 따른 차별화가 부족하다. 실제로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53세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9.4%로 자활·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노숙인재활시설 역시 노숙인의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주자 대다수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 진행 시 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먼저, 노숙인시설별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의뢰 및 연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과거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가 입소 노숙인의 특성에 기초하여 기능별로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기존 입소인원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또한 일부 전원배치도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노숙인의 심리사회적인 특성이나 서비스 욕구별로 그에 부합하는 유형의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들이 노숙인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 노숙인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소자의 특성이 유사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인원이 혼합·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설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신규 입소 노숙인부터 각 시설유형별로 노숙인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유형별로 노숙인 특성을 반영한 입소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시설 입소 전 상담 및

입소자 현황, 퇴소자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노숙인시설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설퇴소를 예방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유형의 노숙인시설들은 자진입소자에 대한 노숙인 정보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공유하여 노숙인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숙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조치가 필요하다. 이 상황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노숙인복지체계와 지역사회복지 전문자원의 연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단 '노숙'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복지 체계에서는 기피하고 있다. 공공체계의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이용 및 거주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공병원,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분야, 정신건강 분야, 청소년 복지 분야, 여성복지 분야 등과 연계 및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여성노숙인 전용 공간 마련

우리나라 노숙인 중 여성의 수는 전체 노숙인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러나 여성노숙인은 소수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다시서기센터 통계에 의하여 여성노숙인의 수가 2000년 106명에서 2008년 166명으로 60%가 증가하였다. 또한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신규 여성노숙인의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신원우 외, 2009). 2012년 전국노숙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중 여성이 2,960명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이정규, 2013).

이러한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 특성이나 실태, 서비스 욕구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흔히 남성 노숙문제의 주요 원인은 빈곤, 실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여성노숙인은 경제적 원인 이외에 가족해체,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신원우 외, 2009; 구인회 외, 2013). 여성 거리노숙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이다. 이것은 노숙의 원인이기도 하고, 노숙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립의 기회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노동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도 높아 자립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여성노숙인들은 노숙 이전에 전업주부이거나 비정규직 종사자로 취업의 미경험이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취업과 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많은 여성노숙인이 겪고 있는 정신

질환이나 노숙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자립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여성노숙인은 남성 노숙인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노숙인정책은 여성의 특수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즉 여성노숙인의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게 되며, 기초적인 보호대책조차 부실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은 서비스 욕구를 표현할 기회에서 배제되고, 더욱더 소수가 된다. 무엇보다 그 수가 적어 비중 있는 정책대상으로 주목받기 힘들다. 대전시의 여성노숙인 수는 발견된 거리노숙인 1명, 재활시설 거주 노숙인 43명으로 전체 노숙인 350명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자강의집 내부자료, 2016). 하지만 여성노숙인의 수가 적다는 사실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노숙인의 특성상 폭력 위험 등으로 인해 거리노숙 현장을 피하는 경향이 높고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발견하기 힘든 장소에 숨어 있거나 여성성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남성적 모습으로 생활하는 이유에 기인한다.

더불어 여성노숙인만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것 또한 하나의 이유이다. 대전시에는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노숙인자활시설 4개소, 노숙인재활시설 1개소가 있다. 이 시설 중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노숙인재활시설밖에 없다. 노숙인자활시설은 남성노숙인만이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거리노숙인이 발견되면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혹은 여성노숙인쉼터가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여성노숙인은 노숙인시설이나 전용공간이 없어 이들은 안전한 잠자리를 보장받기 힘들고, 서비스에 접근할 통로가 넓지 않으며, 또한 노숙을 벗어날 정보를 얻는 데도 훨씬 불리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숙인시설 내 별도의 여성노숙인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숙이 장기화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설 내에서 빈곤, 정신건강, 가족관계 단절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일자리 연계나 취업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는 여성 전용 노숙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성전용 노숙인시설을 설치하여 노숙이나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과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받으며, 향후 독립적이 주거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6.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강화

1) 심리치료 지원 필요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숙을 벗어나기 위해 노숙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심리상담과 치료이다(구인회 외, 2013; 현명이, 2014; 정원오·김용득, 2014).

정신건강은 노숙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노숙생활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서 우울, 학습된 무기기력, 자존감에 대한 심각한 손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 노숙인의 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숙 생활에 접어든 경우가 21.9%였으며,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있는 노숙인이 52.2%로 분석되었다. 특히 거리노숙인은 59.3%가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숙진입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노숙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다른 노숙 원인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가족과의 단절까지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자아존중감은 낮고 우울감은 높은 경향이 있어서 그 어떠한 서비스보다 심리상담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숙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른 노숙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노숙생활을 탈피하려는 동기가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탈노숙은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 반면, 대부분의 장기노숙인은 변화의 동기 혹은 이유를 갖지 못한 채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숙상태에서 보낸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벗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기노숙인의 심리상태는 흔히 처음의 낯설고 두려운 단계를 지나 점차 익숙해져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구인회 외, 2013). 본 연구결과에서도 조사대상자의 68%가 6년 이상의 만성 노숙인으로 나타나, 대전시 노숙인 또한 만성화, 장기화 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노숙인이 우울, 정신질환 혹은 약물남용 등에서 기인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노숙인 개인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녕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심리적 위축이나 대인시피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가진 노숙인들이 시설 내에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은 신체상으로 건강하게 보여 건강하데 일을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등의 오해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설입소 노숙인 대상 프로그램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특히 거리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미약하다. 거리노숙인은 일자리 관련 서비스 외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욱 낮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노숙인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키워 주어 심리적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 노숙인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우울감과 알코올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숙인이 무력감, 우울 등을 이기고 자신감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노숙인의 특성상 집단 프로그램의 진행은 어려우므로 개별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 필요

중독과 정신건강은 노숙인 집단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노숙의 원인이기도 하고, 노숙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가족관계 또는 일과 관련된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노숙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장기간의 불안정한 생활이 정신적인 건강을 손상시키거나 알코올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낳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음주 경험이 있는 노숙인의 42.6%가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알코올 남용 등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경험이 있는 거리노숙인은 45.5%가 문제성 음주군에 해당되며, 22.8%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숙인의 알코올 문제와 같은 정신건강 역시 이들의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하다. 실직 및 노숙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사회적 문제가 가속화,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숙인 사이에 쉽게 발견되는 음주문제는 이들의 재활을 위해 정신건강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윤명숙, 1999; 남기철, 2013). 음주문제를 가진 노숙인들은 다른 약물남용과 정신질환의 비율이 높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 및 약물중독이 8.1%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다른 노숙의 요인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숙으로 진입하게 되고, 가족과의 단절까지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자아존중감은 낮고 우울감은 높은 경향이 있어서 그 어떠한 서비스보다 알코올중독 치료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전시에서는 알코올 중독 노숙인에게 병원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 이외에는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예방교육 및 상담,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알코올 문제에 관한 전문적 관심이나 개입 노력은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비전트레이닝센터와 같은 노숙인 전용 알코올 회복 재활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알코올 회복 재활센터를 통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시설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의 문제를 도와 이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대전시의 예산 및 인력으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노숙인시설

에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노숙인시설 자격요건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노숙인시설에서의 근무를 정신보건 업무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노숙인시설 종사자에게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이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건강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당 분야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거리 노숙인들에게 현장 활동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활동을 하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알코올 전문병원을 통해 알코올 치료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치료개입 이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술로 인해서 약화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을 강화시켜 자립 및 재활에 성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 거주 노숙인 및 병원에 입원한 노숙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설입소 초기부터 퇴소 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상담 및 알코올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적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중독에서 회복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숙인들이 낯선 곳이나 집단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피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알코올 관련 상담센터와 협약을 맺어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노숙인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7. 재노숙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현재 노숙인시설을 퇴소하거나 입원 치료 후 지역사회에 재정착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노숙인이 노숙인시설을 퇴소하거나 임시주거비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자립한 후에도 다시 거리노숙인으로 전락하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이 탈노숙하거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자원 체계 내에서 노숙인의 자립 및 사후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노숙인이 포함된다는 인식개선을 위해 여러 자원체계 간 연계와 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노숙인지원체계를 넘어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사회 전문적 복지체계와의 서비스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만 한다. 현재 읍면동 동복지허브화가 실시되어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 자원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현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발굴된 복지 대상자는 저소득, 질병, 장애 등 복합적 욕구에 따라 공급 급여 제공부터 민간자원 연계·지원까지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연계하여 노숙인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노숙인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립노숙인 통합사례관리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의 자립 시점에 적합한 사례관리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재노숙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복지효재단에서는 희망티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동구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통합사례관리 체계 내에 현재 지구대, 파출소 등 전문 기관과 연계가 되어있으며, 고정적으로 분기 또는 원 단위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체계 안에 노숙인 분야를 포함한다면, 사전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숙위험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가 노숙인시설로 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지역의 기관이나 주민자원을 통해 자립 및 적응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숙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제도권 내 보호대상이 아닌 잠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지원체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속적, 통합적,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구인회·김소영(2012). 노숙 진입의 원인과 과정. 한국사회학. 46(4). pp. 264-293.

구인회·정근식·신명호(편)(2013). 한국의 노숙인 :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구인회·정근식(편)(2014). 노숙 문제의 현실과 대응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남기철(2009). 노숙인 복지론 : Homeless의 사회적 통합. 서울: 집문당.

남기철(2011). 한국의 노숙인복지와 주거지원. 비판사회정책. 31. pp. 121.159.

남기철(2013).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성격: 규제와 단주우선접근권의 극단성. 비판사회정책. 39. pp. 7-43.

남기철·신원우·민소영·김선미·김준희·이지혜(2013).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건복지부·동덕여자대학교.

박은철·이자은·김준희(2015). 노숙 진입에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변경희·이선우·배한석·원경림·전동일(2009). 근로능력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2016). 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안).

보건복지부(2016a).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보건복지부(2016b). 2016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6c). 2016 정신건강사업안내.

신원우·황운성·김유경(2009). 여성노숙인의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지역 노숙인 쉼터 이용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0(1). pp. 223-246.

윤명숙(1999). 노숙자들의 음주문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7. pp. 101-122.

이성은·고은정(2010). 2010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성별영향평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정규(2013). 노숙인은 몇 명인가? -2012년 전국노숙인실태조사 결과. 월간 복지동향. 171. pp. 31-38.

정원오·김용득(2014). 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복지체계 연계방안. 보건복지부·성공회대학교.

조맹제·김계희(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pp. 381-399.

홍선미(2002). 노숙인 대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상황과 복지. 12. pp. 109-140.

황선영(2004). 노숙인 정책의 전개과정과 제도개선 방향. 사회복지정책. 18. pp. 179-198.

현명이(2014).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현시웅·최희경(2008). 노숙인의 발생원인별 유형화와 정책대안. 한국행정논집. 20. pp. 1153-1178.

FEANTSA(2010). *Ending Homelessness: A Handbook for Policy Makers*. Brussels: FEANTSA.

Mayfield, Demmie, Gail McLeod, & Patricia Hall(1974). The CAGE Questionnaire: Validation of a New Alcoholism Screening Instru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1(10). pp. 1121-11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부 록

설 문 지

○ 부록 : 설문지

자료입력ID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개발 연구

안녕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은 대전광역시 출연기관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대전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전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에서는 노숙인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대전광역시 노숙인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노숙인의 복지정책 제언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김태연 사무국장 ☎ 070-7841-8243

■ 연구수행기관 :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 연구지원기관 :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 조사수행기관 : 희망발걸음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조 사 일	2016년 월 일 시	조사원 성명	(인)
응 답 자	□ 본인응답 □ 대리응답( )		
거 주 장 소	□ 거리 □ 일시보호센터	□ 재활시설	□ 자활시설
지도원 확인	□ 완료 □ 미완	지도원 성명	(인)

Ⅰ. 응답자 일반적 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table>
<tr><td>1</td><td>성별</td><td colspan="4">① 남성 ② 여성</td></tr>
<tr><td>2</td><td>출생년도</td><td colspan="4">( )년</td></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최종학력</td><td colspan="4">① 무학 ② 초등학교 중퇴 ③ 초등학교 졸업 ④ 중학교 중퇴</td></tr>
<tr><td colspan="4">⑤ 중학교 졸업 ⑥ 고등학교 중퇴 ⑦ 고등학교 졸업 ⑧ 대학교 중퇴</td></tr>
<tr><td colspan="4">⑨ 대학교 졸업 ⑩ 대학원 수료 ⑪ 대학원 졸업</td></tr>
<tr><td rowspan="2">4</td><td rowspan="2">혼인관계</td><td colspan="4">① 미혼 ② 기혼 ③ 동거 ④ 별거</td></tr>
<tr><td colspan="4">⑤ 이혼 ⑥ 사별 ⑦ 기타( )</td></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장애 여부</td><td colspan="4">⓪ 장애 없음</td></tr>
<tr><td rowspan="2">① 장애 있음</td><td>① 미등록</td><td colspan="2"></td></tr>
<tr><td>② 등록</td><td colspan="2">(장애유형 : / 급)</td></tr>
</table>

6. 귀하의 주민등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현재 입소한 시설에 등록 ② 대전 지역에 등록 ③ 다른 지역에 등록
④ 말소 ⑤ 호적없음 ⑥ 기타( )

7. 귀하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습니까?

① 비수급자(7-1번 문항으로) ② 일반 수급자 ③ 특례수급자 ④ 시설수급자 ⑤ 차상위계층

7-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②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서
④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⑥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
⑦ 명의도용된 재산 때문에(대포차, 주택, 통장 등)
⑧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⑨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
⑩ 기타( )

8. 노숙 또는 시설 입소 전, '집'이 있었을 때 같이 살았던 사람(가족)은 누구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부 ② 모 ③ 배우자 ④ 동거인(애인)
⑤ 자녀 ⑥ 형제/자매 ⑦ 친인척 ⑧ 지인/친구
⑨ 혼자 ⑩ 기타( )

9. 귀하는 최근 1년간 가족/친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① 가족/친지가 없다
② 가족/친지의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을 끊고 산다
③ 가족/친지의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
④ 가족/친지가 있지만 연락처가 없거나 잊어버렸다
⑤ 가족/친지와 만나지는 않지만,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⑥ 가족/친지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지낸다
⑦ 가족/친지와 자주 만나고 연락한다
⑧ 기타( )

9-1. (연락하고 지내는 경우: ⑤~⑧까지 답한 경우) 지난 1년간 연락을 하셨다면 해당하는 곳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방법	① 직접 만남	② 전화	③ 이메일 또는 우편
횟수	주 ( )회	주 ( )회	주 ( )회
	월 ( )회	월 ( )회	월 ( )회
	년 ( )회	년 ( )회	년 ( )회

II. 노숙 전 상황

1. 삶이 어려워져 노숙 또는 시설입소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실직 및 사업실패 ② 이혼 및 가족해체
③ 부채 및 신용 불량 ④ 게임 및 도박중독
⑤ 질환 및 장애 ⑥ 주거지 상실
⑦ 수급중지 ⑧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
⑨ 가족관계의 어려움(다툼, 폭력 등) ⑩ 기타( )

2. 귀하가 처음으로 '삶이 어려워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도

3.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셨습니까? ( ) 예) 경북 포항, 서울 용산

4.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일을 하셨습니까?

① 일한 적 있음(4-1번 문항으로) ② 일한 적 없음(5번 문항으로)

4-1.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귀하의 주된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 예) 장사, 막노동, 경비

4-2.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정규직(상용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일용직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⑤ 자영업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

4-3.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만원

5.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① 매우 나빴다 ② 나쁜 편이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좋은 편이었다 ⑤ 매우 좋았다

6.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알아보았다 ② 알아보지 않았다

7.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이용한 적이 있다(7-1번 문항으로) ② 이용한 적이 없다(8번 문항으로)

7-1. (이용한 적이 있다면)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까?

서비스 유형	이용여부	
	예	아니오
1) 기초생활보장 수급 - 주민센터	①	②
2) 긴급지원(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 구청	①	②
3) 실업급여 수급 - 근로복지공단	①	②
4) 기초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	①	②
5) 기타( )	①	②

8. '삶이 어려워지기 전'의 주된 주거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u>한 가지만</u> 체크해 주십시오.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직장 내 숙소 ⑤ 기타( )

Ⅲ. 주거생활

1. 다음 유형 중에서 '삶이 어려워진 후(노숙생활 동안)' 1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곳에 <u>모두</u>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1개월	구분	1개월	구분	1개월
거리노숙		고시원		기원	
일시보호시설		사우나(찜질방)		국공립병원	
노숙인자활시설(쉼터)		만화방		아동·청소년시설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시설)		다방		장애인시설	
쪽방		창고		여성시설	
여관, 여인숙, 모텔 등		움막/컨테이너		교정시설	
비닐하우스		PC방		요양원/요양병원	
빈집		친인척 집		의료시설	
종교단체(교회, 절 등)		친구(지인) 집		기타( )	

2. 귀하는 노숙 또는 시설입소 기간에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피해 여부	
	있다	없다
1) 구타	①	②
2) 언어폭력, 모욕	①	②
3) 성폭력 및 성희롱	①	②
4) 금품갈취	①	②
5) 명의도용, 사기	①	②
6) 기타 범죄피해( )	①	②

Ⅳ. 경제활동

1. 귀하는 현재 일하고 계십니까?

① 하고 있다(1-1번 문항으로) ② 하고 있지 않다(2번 문항으로)

1-1. 귀하는 지난 한 달간 몇 회 정도 일했습니까? 월(~)회

1-2.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예) 장사, 막노동, 경비

1-3. 귀하의 직업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상용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③ 일용직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⑤ 자영업 ⑥ 기타(　　)

1-4. 귀하가 근로활동을 하는데 <u>가장</u>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②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③ 수입이 적다 ④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다
⑤ 임시 일자리라서 불안정하다 ⑥ 일하는 곳에서 무시한다
⑦ 어려운 점이 없다 ⑧ 기타(　　)

2. (일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① 구하고 있다(2-1번 문항으로) ② 구하지 않는다(2-3번 문항으로)

2-1. (구하고 있다면) 귀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습니까? <u>한 가지만</u> 체크해 주십시오.

① 생활정보지, 신문, 방송 ② 동료 및 지인
③ 민간직업소개소나 인력사무소 ④ 사회복지기관
⑤ 고용지원센터 ⑥ 기타(　　)

2-2. (구하고 있다면) 일자리를 얻는 데 <u>가장</u>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정한 주소지 확보 ② 직업교육
③ 건강회복 ④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⑤ 취업알선 혹은 구직정보 제공 ⑥ 주민등록 복원
⑦ 기타(　　)

2-3. (구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u>가장</u>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자리를 알아봐도 일거리가 없어서 ② 나이가 많아서
③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④ 나와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⑤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서 ⑥ 신분증이 없어서
⑦ 일하고 싶지 않아서 ⑧ 기타(　　)

3. 귀하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소득의 종류		소득 유무		소득 금액
근로소득	하계	① 있다	② 없다	~ 만원
	동계	① 있다	② 없다	~ 만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수급급여, 연금, 수당 등)		① 있다	② 없다	~ 만원

3-1. (소득이 있는 경우) 귀하가 주로 수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금액이 큰 것으로 <u>한 가지</u>만 체크해 주십시오.

① 근로활동 ② 자활사업 참여 ③ 종교·복지단체 지원 ④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얻음
⑤ 친구 및 친인척 도움 ⑥ 국민연금 ⑦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⑧ 기초노령연금
⑨ 장애수당 ⑩ 기타(　　)

4. 귀하는 지난 한 달간 지출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　　만원) (4-1번 문항으로)　② 없다(5번 문항으로)

4-1. 귀하는 다음 중 주로 어떤 용도로 지출하십니까? 많이 지출하는 항목 2개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주거비　② 식비(주식, 간식 등)　③ 보건의료비　④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⑤ 숙박비　⑥ 여가활동비　⑦ 생활용품 구입비　⑧ 교통비
⑨ 통신비　⑩ 저축　⑪ 가족송금　⑫ 음주
⑬ 담배 구입　⑭ 도박(오락비)　⑮ 부채상환(과태료, 벌금 등)　⑯ 기타(　　)

5. 귀하는 부채(휴대폰 요금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　　만원) (5-1번 문항으로)　② 없다(6번 문항으로)　③ 모름(6번 문항으로)

5-1.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활비　② 사업실패, 사업비 충당　③ 의료비　④ 대출, 보증
⑤ 도박, 유흥, 오락 등　⑥ 주민등록 도용　⑦ 사기　⑧ 기타(　　)

5-2. 귀하는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이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

6.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만원)　② 아니오(6-1번 문항으로)

6-1. (현재 지축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돈이 없어서　②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③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④ 부채 상황 중이어서　⑤ 기타(　　)

V. 건강 및 의료

1.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 귀하는 최근 1년간, 아픈 곳이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2-1번 문항으로)　② 없다(3번 문항으로)

2-1.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병원비가 부담돼서　② 간병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서
③ 병원이 멀리 있어서　④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⑤ 건강보험이 체납되어서　⑥ 기타(　　)

3. 귀하는 몸이 아플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① 개인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　②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③ 노숙인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④ 일단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 본다.
⑤ 기타(　　)

4. 귀하는 현재 질병이 있으십니까? 의사에게 진단받은 경우에 한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 포함)

질 환	현재 치료중입니까?	
	예	아니오
	①	②
	①	②
	①	②

5. 다음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해당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극히 드물었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4) 무슨 일을 하든지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5)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6)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12) 두려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①	②	③	④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①	②	③	④
18)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20) 도무지(앞으로)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6. 귀하의 음주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6-1번 문항으로)
② 지난 1년 동안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 그 전에는 있었다(6-1번 문항으로)
③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Ⅵ. 자립 및 근로능력으로)

6-1. 다음은 음주 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예	아니오
1) 귀하께서는 술을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2) 귀하께서는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3) 귀하께서는 자신의 음주에 대하여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4) 귀하께서는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숙취증상(구토나 멀미, 어지러움, 두통 등)을 없애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Ⅵ. 자립 및 근로능력

1. 귀하는 현재 노숙 또는 시설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계십니까?

① 한다(1-1번 문항으로) ② 안 한다(2번 문항으로)

1-1. (노숙 탈피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십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일을 하고 있다
② 노숙인시설이나 노숙인을 위한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
③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
④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⑤ 병을 치료하고 있다(음주 치료 포함)
⑥ 신용회복 및 저축을 하고 있다
⑦ 앞으로 생활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
⑧ 자활 프로그램 또는 교육에 참여 중 또는 예정이다
⑨ 도박을 끊었다
⑩ 기타( )

2. 주택을 구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 분	예	아니오
1) 가능한 주거 대안에 대한 상담(제도, 시장 상황, 지원 서비스 등)	①	②
2)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거저 찾기, 계약 등에 대한 지원)	①	②
3) 초기 정착 지원(가구/집기 구비, 지원 서비스 연결)	①	②
4) 주거 유지를 위해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서비스(알코올중독, 정신건강 등)	①	②
5) 주거 유지를 위한 보조적 지원(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정기적 연락)	①	②

※ 3~7번 문항은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3. 다음은 체력(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근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들어올림	운반
⓪ 육체노동은 불가능하다.	~4kg	-
① 육체노동은 어렵다.	4~8kg	3kg
② 낮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8~20kg	10kg
③ 중간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20~40kg	20kg
④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이 가능하다.	40kg 이상	20kg 이상

4. 다음은 만성적 증상(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⓪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①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②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③ 증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④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다음은 자신감(일에 대한 긍지와 열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⓪ 자포자기한다
① 작심삼일이다
② 자신감이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③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한다
④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한다

6. 다음은 집중력(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⓪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 해본 것이 거의 없다
①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②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③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향이 없다
④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

7. 다음은 자기통제(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⓪ 안 된다 ① 안 되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잘 되는 편이다 ④ 잘 된다

8. 다음은 자립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비해당
경제적 자립 준비 수준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	①	⓪	
	2) 저축을 하고 있다	①	⓪	
	3) 현재 내 통장이 있다	①	⓪	
	4)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꾸준히 일했다	①	⓪	
일상 생활 유지 능력	5) 지난 한 달 동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잘 참았다	①	⓪	
	6)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다	①	⓪	
	7) 지난 한 달 동안 현재 이용(입소)하고 있는 시설에서 정리정돈을 잘 했다	①	⓪	⑧⑧
	8) 지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잘 했다	①	⓪	
관계 유지 능력	9) 지난 한 달 동안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했다	①	⓪	
	10)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다	①	⓪	
	11) 지난 한 달 동안 화나면 말로 해결했다	①	⓪	
지립 경험	12) 지난 6개월 시이 따로 집을 얻어 살았던 적이 있다	①	⓪	
	13) 지난 6개월 사이 한 달 이상 취직을 했던 적이 있다	①	⓪	

9. 귀하께서 현재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소득보조 ② 의료지원 ③ 고용지원
④ 주거지원 ⑤ 심리지원 ⑥ 채무상담지원
⑦ 문화활동지원 ⑧ 교육 ⑨ 노숙인시설 내 독립공간 마련
⑩ 기타( ) ⑪ 필요한 지원 없음

유형별 추가 문항 : 거리노숙인/일시보호시설 이용자

1. 귀하가 처음 노숙을 시작하거나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거리노숙 시작 시기 ( )년도 / 일시보호시설 이용 시기 ( )년도

2. 귀하가 지금까지 거리에서 노숙 또는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년 ( )개월

3. 귀하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변에 동료 및 지인들이 있어서
②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③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④ 조용하기 때문에
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
⑥ 시설에 대한 거부감때문에
⑦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⑧ 기타( )

4. 현재 거리나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u>가장</u>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
② 폭력(언어적, 신체적, 성적)으로부터의 위험
③ 구직 활동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⑥ 기타( )

5. 귀하가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하지 않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u>모두</u> 체크해 주십시오.

① 잘 몰라서
②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③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때문에
④ 시설환경이 나빠서
⑤ 지원서비스가 부족해서
⑥ 시설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⑦ 재미가 없어서
⑧ 입소불가 또는 이용정지로
⑨ 종교행사를 지나치게 강요해서
⑩ 주변의 시선이 싫어서
⑪ 기타( )

6. 귀하는 다음의 각 노숙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u>모두</u> 체크해 주십시오.

① 임시주거 지원서비스
② 일자리 지원 서비스
③ 무료급식 서비스
④ 의료 서비스(무료진료)
⑤ 편의시설 이용(휴게실, 샤워실 등)
⑥ 재활/자활프로그램 참여
⑦ 생필품 지원 서비스
⑧ 기타(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형별 추가 문항 : 시설노숙인

1. 귀하가 처음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 년도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개월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서　② 거리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③ 동료 및 지인의 소개로　④ 경찰이나 공공기관 등의 소개로
⑤ 긴급전화(120, 1366 등) 안내를 통해서　⑥ 인터넷 등 직접 정보를 찾아서
⑦ 기타(　　)

4. 시설에 입소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②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서(안전한 곳 필요)
③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⑤ 기타(　　)

5. 귀하는 현 시설을 퇴소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5-1번 문항으로)　② 없다(6번 문항으로)

5-1.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어디로 가서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① 가족에게 돌아갈 예정　② 가족이 아닌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으로 들어갈 예정
③ 지역사회에 집을 구해서 독립생활　④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입소 희망
⑤ 기타(　　)　⑥ 분명한 계획 없음

5-2. 시설퇴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① 원래 살던 동네　② 현재 시설 근처
③ 가족 또는 지인 근처　④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 지역 근처
⑤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지역　⑥ 기타(　　)

6. 다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이곳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만족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이곳 직원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이곳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이곳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6-3]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발 행 일 : 2016년 11월
발 행 인 : 이 상 용
발 행 처 : 대전복지재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우: 34917)
전　　화 : 042-331-8909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wf.kr

ISBN 978-89-98568-34-4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에 있습니다.

Daejeon Welfare Foundation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34917)
TEL : (042)331-8909 FAX : (042)331-8924 **http://dwf.kr**

비매품
93330
9 788998 568344
ISBN 978-89-98568-34-4